

국외 범죄피해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피해를 중심으로 -

Improving Crime Victim Assistance Programs to
Support Citizens Victimized Abroad
- Focusing on Victims of Violent Crimes Causing Serious Physical Injuries -

전현욱 · Aline Vlasceanu · 장진환



KICJ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이 연구는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국외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정도의 중상을 입는 범죄피해를 당한 직후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막막하였고, 의료나 형사절차 등에 관한 절차 진행도 결코 쉽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상처의 회복을 위해 급히 귀국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어 범죄피해를 회복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글로벌은 다 답을 수 없는 과정을 겪어내면서, 현지 공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으며, 외국인으로서 현지의 외국인에 대한 피해자 지원제도를 이용하기도 했고, 국내 피해자지원단체로부터도 공식/비공식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도움을 주시려는 마음은 충분하였으나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법제도적 뒷받침이 준비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외에서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은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와 다를 수밖에 없으며, 특히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의 경우 후견적 관점에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통하여 국외에서 생명·신체에 중대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지, 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려면 어떠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구자로서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지식이 부족함을 깊이 느꼈습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조사해 보았습시다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작성된 이 보고서에 피해자학 전문가분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실제 경험한 연구자의 관점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관적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였다는 점은 이 연구의 내재적 한계이면서도, 동시에 차별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연구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시행과 함께,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에 대한 지원 제도가

더 나아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제도를 정리해주신 CRCVC(Canadian Resource Centre for Victims of Crime) Executive Director Aline Vlasceanu, 독일의 제도를 연구해주신 장진환 박사, 그리고 국제공동연구 원고를 번역하고 목차를 재구성하고 추가적인 자료까지 보완해주신 이자영 대법원 조사위원, 그리고 다양한 자료와 자문으로 연구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주신 범죄피해자지원제도 관련 실무와 학계의 전문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연구위원 전 현 옥



목 차

국문요약	1
------------	---

제1장 전현욱

서 론	5
-----------	---

제1절 연구의 목적	7
1. 국외 범죄피해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필요	7
2. 국외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방안 모색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전현욱

국외 범죄피해자 지원의 특수성	15
------------------------	----

제1절 국외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17
1. 수요자 중심의 피해자 지원	17
가. 피해자의 관점	17
나. 구조금 지급의 실효성	18
다. 국외 범죄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 필요	19
2. 범죄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	20
가. 긴급 신고의 어려움	21
나. 언어 소통 문제	22
다. 의료비용의 부담	23
라. 기초적인 생존 배려	25
마. 현지의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	26

바. 형사절차 참여	29
사. 귀국 후의 지원	31
자. 소결	32
제2절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확대 방안	34
1. 기본권의 경합	34
2. 재외국민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불인정	35
가.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	35
나. 재외국민의 생존권적 청구권	36
다. 속인주의	38
3. 국외 테러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38
가. 입법적 결단을 통한 지원 범위의 확대	38
나. 좁은 지원범위	39
4.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확대 관련 쟁점	40
가. 현실적 한계	40
나. 실무적 가능성 검토	40
다. 금전적 지원 절차의 지연 문제	42
제3절 금전 이외의 피해자 지원제도의 적용 확대 가능성	43
1. 신변보호 조치	43
2.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와 손해배상 절차 지원	44
3.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회복	45

제3장 전현옥 · Aline Vlasceanu · 장진환

주요국의 국외 범죄피해 지원제도 47

제1절 캐나다	49
1.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 일반	49
가. 개관	49
나. 범죄피해자기금	51
2.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55
3. 국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55
가. 국외 범죄피해자 기금 설립	55

나.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자국민 지원	56
다. 재외공관의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	62
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CRCVC)의 국외 범죄피해자 지원	65
마. 국외범죄피해자 지원의 규범적 근거	66
바.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과의 비교	68
사. 재외공관과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간 협력	69
4.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국외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	70
가. 사례 1: NC	70
나. 사례 2: EZ	72
다. 사례 3: AS	72
라. 사례 4: MR	73
마. 사례 5: SB	74
바. 사례 6: DW	75
제2절 미국	75
1.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 일반	75
가. 개관	75
나. 미국의 범죄피해자기금	78
2. 국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78
가. 국외 범죄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78
나. 정부기관의 국외 범죄피해자 지원	80
다. 지원 근거 - 헌법	83
제3절 독일	83
1.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일반	83
가. 근거법률	83
나. 주요 내용	84
다. 실무상 지원 기관 및 관련체계	98
라. 재원조달 방법 및 연방정부의 피해자 보상액 통계	102
2.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104
가. 근거법령	104
나. 독일인과의 동등대우 문제	104
다. 구체적 지원내용	105
3. 국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107
가. 근거법령	107

나. 구체적 지원내용	108
다. 실무상 지원기관	109
라. 국내범죄피해지원과의 비교	111
마. 차등지원의 이유	112
제4절 소결	114

제4장 전현욱

국외 범죄피해 지원체계 개선방안 117

제1절 영사콜센터를 통한 지원 확대	119
1. 영사콜센터를 통한 긴급신고 및 통역지원	119
2. 영사콜센터의 전문성 강화	120
제2절 영사 지원 역량 강화	122
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상의 지원	122
가. 영사조력의 국제 기준	122
나. 영사조력범위의 최저기준으로서 법	123
다. 범죄피해사실의 인지와 정보 제공	124
라.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요청	124
2. 추가 지원	125
가. 후견적 개입을 포함한 신속한 현장지원	125
나. 비용 부담	126
3. 지원 역량 강화	128
가. 재외공관 근무자의 범죄피해자 지원 역량 강화	128
나. 범죄피해자 지원 역량을 갖춘 영사협력원 위촉	128
다. 각 공관별 자문변호사제도 운영	129
라. 책임 제한 규정 마련	130
4. 해외공관파견 경찰주재관 증원	130
제3절 국내의 범죄피해 지원체계의 유기적 연계	131
1. 외교부와 법무부간 협업행정체계 구축	131
가.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과 자동연계	131
나. 귀국 후 문제해결 지원	132

2.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국제 네트워크 활용	133
제4절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확대	134

제5장 전현욱

요약 및 정책제언	137
-----------------	-----

참고문헌	143
------------	-----

Abstract	153
----------------	-----



표 차례

[표 1-1] 출국자 및 재외동포 현황	8
[표 1-2] 국민의 국외 범죄유형별 피해 현황	8
[표 3-1] 독일 피해자보상법에 따른 최근 5년간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현황	103



그림 차례

[그림 2-1] 국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종류	43
--------------------------------------	----

해외출국자수 증가 등으로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하는 국민의 수가 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전히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의 수준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정하고 있는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 내용은 대부분 "안내"나 "요청", "정보"나 "명단 제공" 등에 그치고 있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법제의 발전을 위한 착안점을 모색해 보기 위하여 관련 분야 선진국인 캐나다, 미국, 독일의 제도를 살펴보았다. 캐나다의 경우 2007년부터 범죄피해자기금을 통하여 국외에서 생명·신체에 대하여 중대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이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긴급 제정지원을 제공한다. 재판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여비, 귀국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병원비 등 의료비용, 장례비 등이 지원된다. 이 외에도 '영사서비스현장'에 근거하여 캐나다의 재외공관은 범죄피해를 당한 자국민에게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국내 지인에 대한 연락, 사망시 유해의 본국 송환, 변호사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재국의 당국과 협력하여 형사절차의 진행을 돕는다. 이 외에도 캐나다의 범죄피해지원단체인 CRCVC는 범죄피해자 지원단체간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가 귀국한 이후에도 자국의 범죄피해 지원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외교공관이 아니므로 그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도 캐나다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외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은 주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각 주의 사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재외공관도 국내 지인에 대한 연락,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귀국 지원, 법률 및 사법절차와 변호사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미국 법무부는 '국제테러피해자비용보상프

2 국외 범죄피해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로그랩'에 근거하여 연방 정부 차원에서 테러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비용 지원, 재산손실에 대한 보상, 장례비, 교통비 등의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독일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독일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독일 이외의 영역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독일인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지원해준다. 이 외에도 독일인은 유럽연합지침(EU-Richtlinie 2004/80/EG)에 의하여 유럽연합 내부에서 피해가 발생한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독일은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와 동등하게 신체와 심리에 대한 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그러나 독일 내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와는 달리 사회보장적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다만 피해의 등급에 따라 1회성 위로보상금만 지급된다. 국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국내 범죄피해자의 경우와 달리 차등 지원 하는 이유는 국가의 범죄예방책무에 대한 이행실패 책임은 인정되지 않고, 다만 사회국가원칙에 의한 지원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범죄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당연히 그 피해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범죄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가 지원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재외국민은 현지에서 외국인으로 긴급 신고가 어려울 수도 있고, 응급의료 및 초동수사 단계에서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피해로 인한 두려움 등으로 생필품 구입에 장애가 있는 등 기초적인 생존배려가 필요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아울러 현지에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가 있어도 이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으며, 피해자로서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치료 등을 목적으로 귀국한 이후에는 현지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의료나 법률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는 물론 귀국 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실효적인 조력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언한다.

1. 영사콜센터 등을 통한 긴급신고 및 통역지원이 강화 되어야 한다. 국민이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영사콜센터에 신고하면 영사콜센터에서 현지 응급구조기관 및 수사기관과 직접 소통하여 실효적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응급의료 및 초동수사 과정에서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2조의 내용은 범죄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이 받을 수 있는 영사조력의 상한이 아니라 하한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법률에 해당 지원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있지 않다는 점이 그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결정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범죄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리고 현지의 법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외공관은 범죄피해로 인하여 중대한 상해를 입은 재외국민에 대하여 후견적 개입을 포함하여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우선 재외공관은 현지의 수사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 범죄피해사실의 신속한 인지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며, 재외국민의 범죄피해사건 발생시 피해의 경중에 따라 이에 관한 형사사법절차를 모니터링 하여 필요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현장 통역 지원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생필품 조달 지원, 귀국을 위한 항공권 확보 및 귀국 여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지원을 위한 비용은 우선 재외공관이 부담하고 차후 가해자로부터 구상하거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보전 받아야 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충당하거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4. 재외공관 근무자의 범죄피해자 지원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인력이 확충되어야 하며, 범죄피해자의 특성 및 구체적인 지원 방법에 대한 상세한 직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범죄피해자 지원 역량을 갖춘 영사협력원의 위촉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민형사상 사법절차와 관련하여 또는 현지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이용과 관련하여 실효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 공관별로 현지 자문번호사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적 책임이나

4 국외 범죄피해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민원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원업무 담당자의 면책 또는 책임제한 규정을 입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5. 경찰 해외 주재관이 확대되어야 한다. 경찰 해외 주재관은 현지 경찰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다. 모든 국가 모든 지역에 경찰 해외 주재관의 역할이 미칠 수 있도록 파견 경찰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야 한다.

6. 귀국 후에도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외교부와 법무부간 협업행정 체계를 구축하여 귀국시 국내 범죄피해 지원 업무와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귀국 후에도 현지의 형사절차 및 범죄피해지원 절차 등과 관련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필요시 형사절차 참여를 위한 여비 지원 가능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범죄피해자 지원단체간의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7.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이 국외 범죄피해자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적 청구권적 측면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차등 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재원은 범죄피해보호기금으로 하거나 필요시 재외 국민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 1 장

국외 범죄피해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 론

전 현 욱

제1절 | 연구의 목적

1. 국외 범죄피해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필요

2021년 1월 16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¹⁾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우리 헌법 제2조 제2항²⁾이 선언하고 있는 국가의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 제12조 제1항은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당 재외국민에게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주재국 관계 기관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요청,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 제공 등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비로소 재외국민의 범죄피해에 대한 국가의 조력 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법률에 명문화되었다.

정부의 관련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약 75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출국자수는 약 2천9백만 명에 달한다.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출국자수는 2015년 1,930만 명에서 2019년 2,871만 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³⁾

- 1) 법률 제정을 위한 논의의 전개 과정 및 2004년부터 제안되었던 재외국민보호 관련 법안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비교 등에 관하여는 홍영오 외,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지원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8, 93-103쪽 참조.
- 2) 헌법 제2조 제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3) 아래 표의 내용의 출처는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 자료이며, 신범식 외,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2021년-2025년) 연구용역 보고서, 외교부 연구용역과제, 2021, 30쪽에서 재인용함.

8 국외 범죄피해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표 1-1] 출국자 및 재외동포 현황

(단위 : 만 명)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해외출국자수	1,930	2,200	2,649	2,869만	2,871
재외동포	718	-	743	-	749

거주목적으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의 경우와는 달리 여행이나 업무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외국을 방문하는 국민의 경우 방문국가의 치안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절도, 강도, 폭행, 상해 등의 범죄피해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해외출국자수의 급격한 증가에 비례하여 우리 국민의 국외 범죄피해도 2015년 8,298건에서 2019년 16,33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⁴⁾

» [표 1-2] 국민의 국외 범죄유형별 피해 현황

(단위 : 명)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8,298	9,290	12,529	13,235	16,335
살인	37	19	7	12	31
납치·감금	119	113	106	118	74
절도·강도	5,957	7,090	9,998	10,305	12,061
폭행·상해	255	270	349	374	520
사기	299	347	408	528	562
기타	1,631	1,451	1,661	1,898	3,087

특히 2020년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이후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범죄가 늘어나면서⁵⁾ 우리 교민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 등의 신체적 공격을 수반하는 범죄⁶⁾가 다수

4) 아래 표의 내용의 출처는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통계이며, 법무연수원, 2020범죄백서, 2021, 220쪽에서 재인용함. 이에 반하여 국내 강력범죄의 경우 상해죄는 2010년 대비 2019년에는 무려 42%로 감소하였으며, 폭행죄는 2016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추세로 접어들었다. 같은 책, 86쪽 참조.

5) 이에 관한 연구는 배정환, 코로나 시대, 미국에서의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범죄: 인종주의, 담론과 사회 통제에 관한 논의, 경찰학연구 제21권 제3호, 2021, 183쪽 참조.

6) 뉴스1, 2021.10.5., "[국감브리핑] 코로나19 이후 한국인 대상 증오범죄 49건 발생"(https://www.news1.kr/articles/?4451989 2021.12.5. 최종접속), 연합뉴스, 2021.2.26., "LA한인타운서 '중국 바이러스'라며 한인 무차별 폭행·살해위협(종합)"(https://www.yna.co.kr/view/AKR202102260

발생하였으며, 심지어 살인미수⁷⁾ 등 중범죄 피해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해외출국자수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외국인을 향한 혐오범죄⁸⁾ 및 테러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특히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범죄피해의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⁹⁾하기 위하여 제정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국가의 국외 범죄피해에 대한 조력의무가 명문화됨으로써, 국외 범죄피해에 대하여도 “체계적인 재외국민보호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¹⁰⁾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된 이 법은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국외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방안 모색

그러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내용은 이 법률 제정 이전부터 이미 외교부 훈령¹¹⁾에 근거하여 재외공관이 제공하던 기존의 재외국민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력의 내용과 그 구체적인 범위가 크게 다르지 않다.¹²⁾ 상술한 바와 같이 이 법 제12조는 재외공관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요청”,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 제공” 등의 조력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는 이 법 시행령은 이에 더하여 재외공관에게 “범죄피해 구제를 위한 주재국의 제도 및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시행령 제12

05600075 2021.12.5. 최종접속) 등 참조.

7) 중앙일보, 2020.3.17.,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한국 교민 피습…'코로나 혐오범죄' 촉각”(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32363#home 2021.11.26. 최종접속) 참조. 이 보고서의 연구자가 범죄피해자가 된 사건이다.

8) 중앙일보, 2021.3.7., “美 주요 도시서 아시아계 증오범죄 전년 보다 2.5배 급증”(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06316#home 2021.12.5. 최종접속) 참조.

9)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이유에서 인용.

10) 외교부, 제1차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2021-2025), 2021, 10쪽.

1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제12조 내지 제14조, 제24조. 이 지침의 내용에 관하여 상세한 해설은 홍영오 외,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지원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8, 50-60쪽 참조.

12) 같은 뜻으로 방승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기본권주체, 유럽헌법연구 제19호, 2015, 189쪽; 홍영오 외,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지원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8, 100쪽 등 참조.

조 제1항),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가족 등 연고자에게 그 피해사실을 알리고(제2항) 재외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의 진행 상황을 확인(제4항)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새롭게 제정된 법률과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원 내용은 “안내”나 “요청”, “정보”나 “명단 제공” 등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법률에 조력의 내용과 범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의 업무수행 인력과 예산 등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재외국민이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단순히 “정보제공” 등에 그치고 있는 이러한 조력이 실효적인 지원수단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에게 아무리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거동이 곤란할 정도의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범죄피해 직후 그로 인한 신체적 부상이나 정신적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 법 제10조 제3항은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영사조력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영사조력의 내용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피해로 인하여 발생한 곤란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단지 정보만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영사조력의 본질적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이 법은 “유사 상황 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제4항)고 하여 그 한계를 선언하고 있다. 물론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 것이 선행 과제라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국외에서 당한 범죄피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서 통역이나 해외송금¹³⁾과 같이 국내에 있는 국민에게는 본래부터 제공될 필요가 없는 지원도 제공되어

13) 현재 우리 외교부는 영사콜센터를 통한 전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사콜센터에 전화하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의 통역을 제공한다. 아울러 영사콜센터는 신속한 해외송금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2019년에는 총 867건 약 9억원의 신속 해외송금을 지원하였다. 영사콜센터 홈페이지(https://www.0404.go.kr/callcenter/callcenter_intro.jsp 2021.12.5. 최종방문) 참조.

야 할 경우가 있다.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외국어 소통 능력이나 해당 국가의 사회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주변에 조력을 구할 지인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 이상의 조력이 당사자의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적절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¹⁴⁾ 더 나아가 재외공관은 주재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및 절차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고, 만약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피해자가 이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범죄피해 직후 범죄로 인한 부상의 치료 또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현지 거주 곤란 등을 이유로 급하게 귀국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귀국 후에도 해당국가의 수사당국 또는 피해자 지원기관 등과 범죄피해와 관련된 각종 절차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조력이라는 관점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귀국 후에도 필요한 조력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국외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특히 생명·신체에 대하여 중대한 범죄피해를 당하였거나 조기에 귀국하는 등의 이유로 현지에서 피해자가 직접 지원신청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지 공관이 절차를 대행하는 등의 실효적인 지원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국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와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하여 귀국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국외에서 생명·신체에 (중대한) 범죄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로 논의의 범위를 좁혀 특히 이와 같은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 이러한 지원을 실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4) 김지선 외,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2017~2021년)의 방향과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 364쪽.

제2절 | 연구의 범위와 방법

지금까지 우리 헌법 제2조 제2항이 선언하고 있는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관하여 많은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최근의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의 연구¹⁵⁾는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관하여 상세하게 논증하고 있으며, 특히 발전된 범죄피해구조금 관련 제도를 가지고 있는 영국과 뉴질랜드의 법률과 제도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금 지급범위에 따른 재원의 확보와 비용추계 문제까지 분석하여 구체적인 입법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2020년 발표된 논문¹⁶⁾은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구조금 지급의 법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일본의 제도 및 2018년 발의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실무 전문가의 관점에서 구조금 지원 대상 및 범죄피해사실의 확정 문제, 관련 업무처리 절차, 지원금액의 확정, 구상권 행사 등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실제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할 경우 예상되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은 국내 범죄피해 지원제도가 경제적 지원, 즉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에 무게중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대체로 국외 범죄피해에 대한 국가의 구조금 지급범위 확대 가능성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2018년 출간된 연구보고서¹⁷⁾ 국외 범죄피해 및 관련 법제도, 판례 및 해외 입법례 등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필리핀과 중국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에 대한 지원 사례 및 현실적인 한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무엇을, 누가,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이 지금까지 수행된 다수의 국외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논의된 바를 토대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에게 보

15) 박미숙 외,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에 관한 검토, 법무부 수탁과제, 2017.

16) 윤지원, 해외 범죄피해에 대한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의 실무적 문제점, 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1호, 2020, 151쪽 이하.

17) 홍영오 외,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지원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8.

다 실효적인 조력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현행 법률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즉, 이 연구는 국외 범죄피해의 예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이 연구과제의 한정된 예산과 기간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는, 국외에서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논의의 범위를 좁히고자 한다. 아울러 이 보고서의 논지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기, 절도 등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범죄로 인하여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은 원칙적으로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외 범죄피해 및 피해지원의 특성 및 국내 범죄피해지원과의 차이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 그 특성에 맞는 실효적 지원방법의 기본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연구자가 2020년 캐나다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살인미수 범죄피해와 그 후속 처리과정에서의 경험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음을 밝힌다. 이러한 인연으로 연구자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캐나다의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와의 비교 연구를 위하여 몬트리올 대학교 국제비교범죄학연구센터로부터 캐나다의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인 CRCVC(Canadian Resource Centre for Victims of Crime)¹⁸⁾의 실무 전문가를 소개받아 범죄피해지원 선진국인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의 관련 제도 및 실무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독일 법제 전문가와 함께 유럽의 전통적인 피해자 지원 선진국인 독일의 국외 범죄피해 지원 정책과 실무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실제 국외에서 중대한 범죄피해를 경험한 연구자의 관점에서 국내 법제도 및 실무의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이를 법제화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규범적, 실무적 방안을 도출한다.

18) CRCVC에 관하여는 CRCVC 홈페이지(<https://crcvc.ca/> 2021.12.5. 최종접속) 참조.

제 2 장

국외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외 범죄피해자 지원의 특수성

전 현 욱

제2장

국외 범죄피해자 지원의 특수성

제1절 | 국외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1. 수요자 중심의 피해자 지원

가. 피해자의 관점

범죄피해자에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피해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국가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를 실효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즉 피해자 중심적 관점에서”¹⁹⁾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는 ① 피해자의 신변보호, ②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③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회복 지원, ④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등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²⁰⁾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비이성적인 두려움에서부터 이성적인 분노, 무력감 및 상실감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²¹⁾ 따라서 범죄 피해 직후에는 예컨대 심리 상담 치료나 필요시 신변보호 등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두려움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두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의 보호가 즉시 제공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1차적이고 비이성적인 두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하

19) 임예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 검토: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1호, 2021, 237쪽에서 인용.

20)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안내 홈페이지(<http://www.moj.go.kr/cvs/index.do> 2021.1 2.5. 최종접속)에서 인용.

21) 실제 연구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은 범죄피해를 당한 후 이와 같은 심리상태를 경험하였다.

면, 범죄자에 대한 분노 및 직접적으로 분노를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무력감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적 복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현대 법치국가의 (형사)사법제도는 당연히 그 이념에 따라 작동해야 하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과도하게 소외되지 않도록 사법절차 내에서 피해자의 분노 및 무력감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예컨대, 우선 형사사법 절차에서 범죄자에 대한 형사절차 진행과정을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통지해 주어야 하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이라는 관점에서도 적절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범죄자가 책임에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분노 및 무력감에 대한 지원의 핵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민사적 관점에서 필요시 충분한 범위 내의 경제적 지원을 국가가 즉시 실시하고 다양한 사법적 공공자원을 활용하여 그 비용을 가해자로부터 구상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구상권 행사 과정에 대한 정보도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피해자의 분노 및 무력감 해소라는 관점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면 소송대리까지, 최소한 법률 상담 및 전문 변호사 알선 등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나. 구조금 지급의 실효성

국내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의 경우, 범죄피해자는 대부분 대한민국의 사회 시스템에 익숙하므로 다양한 경로로 자신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이러한 시스템들을 통하여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상기한 지원 사항의 상당부분을 충족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범죄피해자에게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료 및 법률 등 사적 서비스는 물론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마련된 국민에 대한 일반적 사회보장 체계 등 다양한 공적 수단을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게다가 국민은 국내에서 사회문화적 체계에 대한 이해 및 언어 소통 문제로 인한

장애를 겪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 즉 정보 제공만으로 효과를 거두기도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예컨대 심리치료 등과 같은 피해지원 서비스를 피해자에게 직접 연결해주고 그 이용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정도로도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구조를 제공한 것이 되어 지원을 종결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은 공권력이 직접 개입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 예컨대 신변보호나 임시안전숙소 제공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결국 범죄피해자 구조를 위한 서비스의 비용²²⁾을 누가 부담하는가 또는 범죄피해자의 손실을 얼마나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등의 문제로 정리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주로 구조금 지급의 확대에 무게중심을 두고 발전해 온 것으로 보인다.

다. 국외 범죄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 필요

이러한 맥락에서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현재까지의 논의들 역시 주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범위의 확대에 그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 금전적 지원이 가장 실효적인 지원이라는 기본적인 판단과, 다른 방법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결국 비용의 지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 그리고 국가공권력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한 조치, 예컨대 형사절차 참여 보장(‘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같은 법 제9조)과 같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개별적인 보호조치가 국가 주권의 범위 등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국외의 국민에게는 제공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범죄피해자로서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의 목적과 방향은 국내 범죄피해자와 큰 틀에서 보면 그리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쟁점으로 가까이 접근하여 살펴보면,

22) 국내 범죄피해의 경우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 즉 치료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은 송귀재, 범죄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제한 원인과 판단근거에 관한 연구 - 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1호, 2021, 93쪽 이하 참조.

국외 범죄피해자는 기초적인 사회시스템에 대한 접근가능성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외국민이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겪게 되는 어려움의 내용이나 정도가 국내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와는 전혀 다를 수도 있으며, 그래서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재외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지원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접근 방향이 달라야 할 경우도 있다. 사회보장적 생존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제도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의 크기가 클수록, 더욱 실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범죄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

이 과제의 연구자는 2020년 3월 경 캐나다에서 혐오범죄로 추정되는 살인미수 범죄의 피해자가 된 바 있다.²³⁾ 이하에서는 범죄피해로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은 후, 그 사후처리과정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국외에서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이 처하게 되는 상황을 실제 경험한 순서에 따라 서술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은 어떠한지 관하여 검토한다.

다만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이므로,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이 보고서에 내재된 한계임을 밝힌다. 국외 범죄피해 사례연구²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용을 보충하고 객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아울러 여기에서는 수요자 관점에 입각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인력이나 예산상의 문제 등 현실적 한계 등은 추후 구체적 실현 방법에서 다시 검토한다.

23) 일요일 오전 11:30 경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몬트리올 시내 소재 식료품 마트로 이동 중 마트 직전 대로변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동기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백인 남성으로부터 약 30센티미터 가량의 사냥용 칼로 가슴적으로 목을 찔리는 살인미수 범죄피해를 당하였다. 직후 마트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구급차로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다. 캐나다 형사법에 따라 가해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형사책임 무능력자로 판정되어 현재 치료감호중이다.

24) 홍영오 외,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지원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8, 139쪽 이하, 255쪽 이하 등을 참조함.

가. 긴급 신고의 어려움

국외에서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피해를 당하여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된 경우 무엇보다도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과 긴급구조당국에 즉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게 적시에 적절한 보호와 응급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범죄자로부터 공격을 받은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의 119와 같은 현지의 긴급구조 신고 번호를 모를 가능성도 있고, 설령 알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피해로 인한 현실적인 장애나 언어소통의 문제로 인하여 신고가 어려울 수도 있다.²⁵⁾

재외 국민이 신고번호를 모르는 등의 경우에는 외교부의 영사콜센터 등을 통한 조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영사콜센터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²⁶⁾의 경우 전화를 이용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영사콜센터의 통역서비스는 “긴급 상황 시 현지 공무원 또는 관계자(경찰, 세관, 출입국 관리관, 의사 등 병원 관계자, 소방관 등)와의 제3자 통역지원에 한”²⁷⁾한다. 재외국민이 영사콜센터에 범죄피해를 신고할 경우 영사콜센터에서 이 신고를 해당국의 경찰 및 긴급출동기관에 직접 전달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확인된 정보를 관할 대사관에 접수하는 것으로 그 직무의 범위가 제한²⁸⁾되어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국내 응급구조신고번호인 119처럼 영사콜센터의 전화번호도 해외로 출국하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재외국민이 해당번호로 신고하면 현지 상황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영사콜센터가 직접 현지의 응급구조기관이나 경찰에 신고를 해줄 수 있도록 한다면, 최소한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이 해당국의 긴급구조 전화

25) 연구자의 경우 칼에 찔리는 범죄피해를 당한 직후 긴급한 상황에서 경황이 없는 중에, 캐나다의 응급신고번호인 911을 떠올릴 수는 있었지만 과다한 출혈로 인하여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결국 직접 전화를 걸지 못하였다. 다행히 인근 마트 직원의 도움을 얻어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받아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26) 상세한 내용은 영사콜센터 홈페이지(https://www.0404.go.kr/callcenter/callcenter_intro.jsp 2021.12.5. 최종접속) 참조.

27) 김예경, 외교부 영사콜센터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입법·정책보고서 제52호, 2020, 12쪽.

28) 김예경, 외교부 영사콜센터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입법·정책보고서 제52호, 2020, 30쪽.

번호를 모르거나 외국어능력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적시에 응급구조를 요청하지 못하여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렇게 신고 된 내용은 당연히 현지 주재 공관과 즉시 공유되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현지의 우리 외교공관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신고 접수 즉시 현지 공관의 재외국민 보호업무 담당자가,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피해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전 과정에서 전문의료용어 등에 대한 통역 등의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사콜센터에 대한 인지도 자체는 66%로 아주 낮지는 않은 편이나, 활용도는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⁹⁾ 영사콜센터의 업무범위 및 이용방법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³⁰⁾와 편의성 제고가 필요하다. 연구자의 경우에도 실제 범죄피해를 당한 직후는 물론 귀국할 때까지 영사콜센터의 존재는 알았지만 긴급상황에서 영사콜센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결국 영사콜센터의 지원서비스는 전혀 이용하지 못하였다.

나. 언어 소통 문제

국외에서 국민이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의 개별적인 외국어능력이나 주변의 조력 가능성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우선 기본적으로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³¹⁾가 많을 것이다. 게다가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피해를 실효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가장 필수적인 의료 및 법률 서비스³²⁾의 영역은 특히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의 수준을 넘는 고도의 언어적 능력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일상생활을 위한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

29) 김예경, 외교부 영사콜센터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입법·정책보고서 제52호, 2020, 1-2쪽.

30) 김예경, 외교부 영사콜센터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입법·정책보고서 제52호, 2020, 55쪽 이하 참조.

31) 홍영오 외,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지원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8, 289쪽. 국내의 외국인의 범죄피해 지원과 언어적 문제에 대한 지적으로 최영신 외,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7, 136쪽, 138쪽 등.

32) 법정통역의 어려움에 관하여는 이유진, 한국 법정통역인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연구, 통역과 번역 18(특별호), 2016, 116쪽 이하 참조.

하더라도, 범죄피해 직후 병원 등의 의료서비스 이용시에 언어적 장벽으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범죄신고 및 초동 수사단계에서 피해 및 범인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외국인이 범죄피해자인 경우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초동 수사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기도 한다.³³⁾ 연구자의 경우에도 범죄피해 직후는 구급차로 이송된 응급실에서는 물론 집중치료실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증상이나 의약품 명칭 등 전문 의료용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다소간 경험하였다.³⁴⁾ 게다가 응급수술 후 병원으로 찾아온 현지 경찰에게 범죄피해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경찰과 영어로 소통하면서 가해자의 특징과 당시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히 연구자의 사례에 있어서는 현지 경찰이 인내심을 가지고 연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조기에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신속한 통역 지원의 문제는 특히 국내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에 대한 지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 물론 우리 외교부는 상술한 바와 같이 영사콜센터를 통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절차나 의료현장에서에서 전화를 이용한 통역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신체에 중대한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연구자의 경우에도 영사콜센터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가장 도움이 필요했던 응급실 및 중환자실 등에서 전화를 이용한 통역서비스의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결국 영사콜센터를 전혀 이용할 수 없었다.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국의 기본적인 사회체제나 더 나아가 형사절차에 대한 또는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개입하여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통역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의료비용의 부담

현지의 의료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응급치료 및 입원비용

33) 최영신 외,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7, 79쪽, 83쪽 참조.

34) 다행히 친절함 현지 의료진들이 연구자가 처한 상황을 배려하여 이해할 수 있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고 큰 도움을 받았다.

등의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지의 건강보험체계 적용가능성 등 의료비용 지원에 대한 현지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정보를 재외공관에서 피해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국외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외국인으로서 스스로 의료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지 관련 정보의 전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관련 절차 진행에도 조력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될 것이다.

예컨대 연구자가 범죄피해를 당한 캐나다 퀘벡주의 경우 범죄피해자의 치료비용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외국인으로서 막상 범죄피해를 당하여 치료를 받는 중에는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국내에서 부담하는 의료비와는 차원이 다른 상당한 액수의 병원비용 및 약제비 등이 우편으로 청구되었다. 추후 확인한 바에 따르면 퇴원 수속과정에서 병원의 사회보장 담당 직원이 의료비에 대한 면제 확인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나, 우선 피해자가 의료비용의 면제를 신청하거나 확인 과정에 참여하여 이를 입증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의료비 면제가 이루어지며,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나 연구자의 경우 범죄신고 후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된 경우임에도 의료비 면제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캐나다에서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범죄피해로 인한 의료비를 전액 지원해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를 전액 납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연구자의 경우 다행히 의료비 청구서를 수령한 후 현지 공관으로부터 범죄피해자의 경우 의료비를 납입할 필요가 없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고, 다행히 지급을 보류하였다. 그러나 지급을 보류하는 중에도 의료비는 여전히 면제되지 않고 청구된 상태였으며, 게다가 중상을 입고 회복중인 상황에서 캐나다 건강보험당국에 범죄피해로 인한 치료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일단 급히 귀국하기 위하여 출국 전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을 청구하여 치료비 등을 지불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도 하였다. 다행히도 현지 공관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퀘벡주 당국에 범죄피해로 인한 치료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주었고, 청구된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었다.

현지 공관의 조력 없이는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리고 조기에

귀국해야 하는 단기체류자가 스스로 범죄피해로 인한 치료이므로 지불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관계기관에 입증할 방법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자의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얻고 캐나다 건강보험 당국에 범죄피해임을 소명하여 실제 납입 의무를 면하게 되는 전체 과정에서 현지 공관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도움을 제공하였기에 결과적으로 수술비, 입원비 및 약재비 전액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았으면 결과적으로는 일단 의료비를 모두 개인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의료비에 대한 해당국의 지원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지원을 받기 위하여 범죄피해임을 소명하는 절차 등의 경우 현지 공관에서 단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소명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는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만약 국가에 따라 의료비용으로 특히 일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이 청구될 수도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조기에 치료를 중단 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만약 피해자가 현지에서 즉시 충분한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외공관에서 우선 피해자의 의학적 치료를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거나 의료기관에 지불보증을 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방법, 또는 불가피할 경우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나 국내에 있는 피해자 가족 등으로부터 보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는 만약 피해자구조금의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면 추후 지급될 구조금에서 의료비용을 차감하거나, 재외국민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라. 기초적인 생존 배려

더 나아가 범죄피해 또는 범죄피해로 인한 두려움 등으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일차적인 생존배려 방법도 체계화되어야 한다. 국내의 경우와는 달리 국외에서 중대한 상해를 입는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특히 현지에 대한 사회문화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식료품 등 생존을 위한 필수품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연구자의 경우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에는 범죄에 대한 비합리적인 극도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외출이 사실

상 불가능하였고, 당시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겹치는 바람에, 대형마트 등의 식료품 등의 배달서비스도 신청 후 배달까지의 대기기간이 약 2주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서 캐나다 퀘벡주 사회보장 당국과 소통하여 긴급 식료품지원 서비스 신청절차까지 안내받았으나, 다행히 현지의 지인과 재외공관의 도움, 국내 지인의 국제 소포 등으로 필요한 식료품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존에 대한 조력이 필수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다소 극단적인 경우일 수는 있지만, 범죄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두려움 등으로 생필품 구입을 위한 외출이 곤란한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각종 음식이나 식료품 배달서비스조차 접근이 쉽지 않다면 당장 생존을 위한 생필품을 수급하는 것부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여행 등 단기체류 목적을 위하여 출국한 경우라면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현지의 주변인으로부터 도움을 구할 방법까지도 극히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국민에게는, 해당국의 상황에 따라 가능한 경우라면 식료품 등 긴급한 생필품의 배달 서비스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이용에 대한 조력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불가능한 경우라면 현지 사회복지 체계와의 연계지원 또는 현지사정에 밝은 재외공관에 의한 긴급 생필품 직접 지원 가능성도 확보되어야 한다.

마. 현지의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

국민은 현지에서 외국인으로서 주재국의 의료보험이나 법률적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설령 해당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또는 우리나라와의 상호주의³⁵⁾ 원칙에 의거하여 피해지원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러한 제도의 존재 자체를 아는 것조차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전달된다

35)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 "이 법은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제11조)의 취지와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고려하면, 외국인이라고 하여 피해자의 법적 지위에 부당한 차별을 가해서는 안 된다." 박상민,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관한 검토 -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를 참고하여 -, 일감법학 제48호, 2021, 506쪽.

해도 예컨대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주변인의 조력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이 현지에서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단기의 체류기간 동안 스스로 본인의 피해를 입증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얻을 것을 기대할 가능성은 매우 낮게 된다.

연구자의 경우 응급실 및 집중치료실 등 병원치료를 받는 중에, 그리고 캐나다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 간호사나 담당 경찰이 수차례 반복해서 피해자지원의 신청과 관련된 기초적인 정보 및 신청을 위한 홈페이지 주소 등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중대한 상해를 입고 큰 수술에서 직후 회복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직접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필요한 서류를 찾아 출력하고 지원서를 작성하여 현지 담당 기관에 제출하는 등 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다행히 현지의 지인이 범죄학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하여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로부터 외국인에게도 해당 혜택이 차별 없이 지원된다는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지인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사실상 신청절차를 대행해주는 방법으로, 귀국 전 겨우 피해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은 물론 실제 구조금 지급이 완료되기 까지 생각보다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결국 범죄피해 약 1개월 후 귀국할 때까지 구조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 돌아온 후에 별도의 입증이 필요 없는 소액의 소지품에 대한 피해 상당금액이 입금되었다. 이는 범죄피해 당시 입고 있던 의복, 신발, 가방, 안경 등 휴대품이 범죄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범죄피해구조금을 통하여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캐나다 퀘벡주의 경우 약 500CAD의 한도 내에서 별다른 입증 없이 소지품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범인에게 구상한다. 연구자의 경우에도 신청서에 기재한 350 CAD의 구조금이 전액 지급되었다.

퀘벡주에서는 일실소득에 대한 구조금도 외국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다만 소득 감소분에 해당하는 구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캐나다 내에서 전년도에 소득세를 납부한 근거자료, 또는 현재 실제로 감소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주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연간 소득금액을 입증해야 하며, 따라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소득액의 입증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범죄피해로 인한 부상 때문에 출근

을 못한 경우라면 그 결근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해고된 경우라면 역시 그 확인서를 제출하여 일실소득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역시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장에서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고 일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된 소득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만약 이러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으면 2020년 기준으로 2인의 미성년 자녀와 부모로 구성된 4인 가족의 경우 약 21,933CAD를 기본 연소득으로 책정하여 실제 근무할 수 없었던 날을 기준으로 구조금을 지급한다. 연구자의 경우 소득금액은 물론 실제 일을 못하여 발생한 손해금액도 입증할 방법이 없어 결국 추정된 소득금액 중 오직 병원에 입원했던 날의 소득분만 일실소득으로 인정받았고 그 중 일부의 소액을 캐나다 현지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구조금으로 지급받았다.

귀국 후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로부터 상담치료 등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되어 심리치료 등 센터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이를 위하여 센터와 소통하던 중, 위 센터가 캐나다 범죄피해자 지원단체(CRCVC; Canadian Resource Center for Victims of Crime)와 연락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필자의 사례를 문의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를 통하여 CRCVC를 통하여 범죄피해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한 경우 발생한 임대료 상당액의 손해에 대하여도 피해구조금 지급이 지원 가능하다는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센터와 CRCVC의 도움으로 필자가 선불로 지불하고 조기 귀국하였음에도 환불받지 못한 현지 아파트 임대료 상당액 중 일부에 대한 구조금 지급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었다. 이후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임대료를 이중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 즉 현지에서 급히 귀국하느라 현지에 지불한 임대료 외에 귀국 후 한국에서 주거하기 위하여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서류로 입증하라는 요청을 받고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와 CRCVC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중계로 각종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약 3개월분의 현지 아파트 임대료 손해액에 대한 구조금을 역시 현지 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었다.

연구자의 경우처럼 해당국에 우리 국민에게도 적용되는 범죄피해지원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이 이러한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재외공관은 해당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

야 하며, 특히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는 등 심각한 범죄피해를 당하였거나 치료 등을 위하여 조기에 귀국하는 등의 이유로 현지에서 피해자가 직접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피해지원 신청 절차의 진행 및 각종 피해입증절차를 대행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다만 상술한 바와 같이 현행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는 단지 “범죄피해 구제를 위한 주재국의 제도 및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아쉬움이 있다. 필요한 경우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외 주재 공관이 신청에서부터 피해금액의 입증은 물론 구조금 수령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절차 진행을 대행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이 경우 국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국외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와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하여 귀국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형사절차 참여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은 외국인으로서 대부분의 경우 주재국의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현실적인 접근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단기체류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는 물론이고 현지에 장기간 거주한 교민이라 하더라도 현지인에 비하여 사회 시스템 및 각종 법적 절차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³⁶⁾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신체에 대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국의 형사절차에 대한 지식이 없는 우리 국민이 피해자이자 증인으로서 형사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³⁷⁾

언어 소통 문제에 관하여 상술한 것처럼, 범죄피해자로서 국외에서 외국어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범죄사실에 대한 가장 밀접한 목격자로서 범죄피해자의 초기 진술은 추후 범죄수사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초동수사와 정에서 현지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범죄피

36) 이러한 특성을 “사회적 장애”로 설명하는 견해로 박동수, 국내 체류 외국인의 특성과 범죄피해의 관계 분석,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7, 2987쪽 이하.

37) 홍영오 외,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지원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8, 283쪽.

해자가 외국인이고 게다가 범죄피해 이후 원활한 치료 및 요양을 위하여 귀국한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해당국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대체로 해당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업무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러한 경우 외국인인 피해자 입장에서는 해당국의 수사기관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외공관이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이 귀국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 등 형사사법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하고 요청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2조 제1항은 “주재국 관계 기관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요청”을 재외공관의 장의 의무로 선언하고 있다.

연구자의 경우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한 직후 병원으로 방문한 경찰에 대한 초기 진술에서 가해자의 외모를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날 경찰이 가져온 여러 명의 용의자의 사진들 중에서 가해자를 지목하여 특정하였고, 현지 경찰이 가해자를 바로 체포하였다. 그러나 연구자가 귀국한 후에도 가해자는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결국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석방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현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에는 더욱 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할 방법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형사사법절차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는 무기력감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웠다. 게다가 현지 경찰에 온라인으로 수사기록을 요청하였으나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청이 기각되었다는 답장만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석방된 가해자의 이후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도 사실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약 8개월이 지난 후에 가해자가 다른 범죄로 인하여 체포되었고, 결국 정신질환에 의한 형사책임무능력자로 분류되어 가해자에 대한 치료감호 절차가 진행되던 중 연구자에 대한 범행을 자백하였다고 한다. 가해자에 대한 치료감호 절차에 피해자의 진술서의 제출이 필수조건이어서, 담당 캐나다의 검사로부터 이메일로 진술서 작성을 요청받으면서 비로소 검사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을 수 있었고, 검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여 일부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처럼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은 현지의 형사절차에 대한 참여권을 적극적

으로 보장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범죄피해의 정도나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재외공관은 현지의 수사기관 및 사법당국에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절차의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을 촉구해야 하며, 국민이 귀국한 이후까지도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통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사. 귀국 후의 지원

1) 국내 지원체계와의 유기적 연계

아울러 국민이 국외에서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 시급히 국내로 귀국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지에 정착하고 생활기반을 마련하여 장기 거주하는 교민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당한 국민의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귀국하여 본인에게 익숙한 국내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하려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이 급히 귀국하게 될 경우 국내의 범죄피해 지원체계와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연구자의 경우 국내에서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를 통하여 본인 및 가족의 심리치료 및 본인의 정형외과 치료 지원 등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귀국 후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당시 기준으로 공식적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심의를 거친 후에야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선 국내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에게 지원되는 수준의 범죄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동시에, 피해사실 자체에 대한 정보가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체계에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해외 국민의 지원을 담당하는 외교부와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간의 신속한 정보교환 등 보다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현지와의 소통 지원

그리고 귀국 후에 범죄피해를 당한 현지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일단 범죄가 발생하면 각종 경제적 문제를 비롯하여 민·형사상 법률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 국민이 귀국한 후에 우리나라에서 현지의 이러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예컨대 현지의 법령에 따라 범죄피해구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 국내에서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신청 및 입증 등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청서 및 입증자료 제출 등의 각종 절차진행에 대하여 현지의 공관 등에 의한 직접적인 개입 또는 대행 등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확산되고 있는 원격재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자가 형사재판의 증인으로서 또는 민사소송의 원고로서 사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해당국의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실제 국내에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을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지의 외교공관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의 유형에 따라서 필요시 비용을 피해국민에게 부담케 하거나, 역시 현지의 공관이 우선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법률상·실무상의 문제로 인하여 외교공관을 통한 직접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 민간단체의 국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또한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연구자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캐나다간 민간지원단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구조금 지급과정에서 입증 서류 제출 등의 절차에서 큰 도움을 받은 바 있다.

자. 소결

이러한 상황에서 범죄피해 회복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실효적으로 지원하려면 우선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고 사후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물론 금전적 지원은 결과적으로는 피해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다른 지원 수단의 비용을 충당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 피해자가 당장 필요한 조력은 사후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는 등 단순한 금전적 지원 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이 실효적으로 구조되려면 “범죄피해자가 피해로부터 조속히 회복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속적인 개입”³⁸⁾이 국내의 경우에 비하여 더욱 더 필요하다.

그러므로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에 대한 지원은 실제 피해 국민이 현지에서 외국인으로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서비스들을 실제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 현실적 이용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특히 어느 국가에 서나 대체로 고비용 서비스로 분류되는 의료 및 법률 서비스의 이용비용 및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예측불가능성, 비용 부담 가능성 등도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지 공관이 의료적·법률적 조언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치료비용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영사관 등이 주재국의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상시 고용하여 피해사례 발생 시 자문변호사가 즉시 법률적 조언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법률적 조력과 관련하여 외교부에서는 이미 2014년 외교부예규로 ‘해외 법률전문가 자문경비 지원 운용지침’을 제정하여 “현지법에 정통한 법률전문가가 우리 공관(사건·사고 담당 영사 등)에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지침 제1조). 법률전문가의 자문은 “우리국민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의 초기대응”에 한정되나 필요시 “재외국민이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지침 제3조). 그러나 사건·사고 발생현황이나 재외국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매년 법률전문가 자문경비를 지원할 공관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지침 제4조), 이러한 지원이 한정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가 범죄피해를 당한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경우 이러한 지원 대상이 아니었는지, 범죄피해 직후는 물론 전체 처리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지원 받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조력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안내조차 받은 바 없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에 의한 지원이 이처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마도 예산상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원칙적으로는 국가예산의 증액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

38) 임예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 검토: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1호, 2021, 240쪽에서 인용.

이 있다면, 최소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법률적 또는 의료적 지원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추후 지급될 피해구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하거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일부 비용을 해당 국민에게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한다면, 공적 보험제도와 유사하게 출국자나 여권 보유자 등으로부터 소액의 부담금을 받아 이를 기금³⁹⁾으로 활용하여 자문변호사 고용 확대 등의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2절 |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확대 방안

1. 기본권의 경합

국외에서 생명·신체에 범죄피해를 당한 자는 재외국민이면서 동시에 범죄피해자가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은 제2조 제2항에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제30조⁴⁰⁾에서 국민의 범죄피해 구조를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선언하고 있다.⁴¹⁾ 이처럼 국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는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기본권의 경합관계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권의 경합이란 특정한 공권력 작용이 동일한 기본권 주체의 여러 기본권을 동시에 침해하거나 동일한 기본권 주체가 국가를 상대로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두 기본권은 서로를 보충하여 보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석되어야 함이 원칙이다.⁴²⁾

39) 영국은 매년 2파운드의 기금을 여권 소지자로부터 받아 예산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신범식 외,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2021년-2025년) 연구용역 보고서, 외교부 연구용역과제, 2021, 171쪽.

40)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41) 헌법상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재정적 구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김혜경, 범죄피해자 구조금지급의 법적 개선방안 - 헌법상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본질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2015, 118쪽.

42) 다만 헌법 제2조와 제30조는 모두 개별적 법률유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형성의 자유가 더 넓게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정해영,

이에 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먼저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한다”⁴³⁾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국외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논의들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주된 기본권으로 보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에게도 이를 인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주로 헌법상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구조를 재정적 구조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범죄피해자학의 범주에서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흐름을 바탕으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에 관하여 검토한다.

2. 재외국민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불인정

가.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

헌법 제30조를 구체화하고 있는 ‘범죄피해자구조법’ 제2조 제1호는 범죄피해를 “대한민국의 영역안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중략)로 인한 사망 또는 중장해를 말한다”고 정의함으로써, 국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를 구조금 지급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 제30조의 문언이 “타인의 범죄”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범죄의 발생장소에 관하여 요건을 두고 있지 않음에 반하여,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를 구조금 지급 대상범죄로 정의함으로써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지급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를 범죄피해자구조청구

기본권 경합에 관한 새로운 판례동향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16권, 2010, 384쪽 이하 참조.

43)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마614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전원재판부 등.

권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시하였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크게 국가의 범죄방지책임 또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국민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그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가 필요하다는 데 있다. 그런데,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국가가 경찰력 등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국가가 범죄를 방지할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해외여행위험지역 등을 고지하고 해외영사 등을 통하여 국민을 보호한다고 하여도 타국의 주권으로 인하여 경찰력 등 직접적인 보호는 곤란하므로, 해외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하여 그 방지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해외에서 발생한 국민의 사망 또는 중장해의 결과가 범죄로 인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해외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울뿐더러,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편, 구 범죄피해자구조법 제10조는 외국인에 대한 구조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호보증에 있는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하여는 국민이 그 외국에서 피해구조를 받을 수 있는 길 또한 열어 두고 있다.

나아가 범죄피해구조금은 국가의 재정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이유들을 고려하면, 구조금청구권의 행사대상을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의 영역 안의 범죄피해에 한정하고, 향후 구조금의 확대에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의 경우에도 구조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 내라고 할 수 있다.⁴⁴⁾

나. 재외국민의 생존권적 청구권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규범적 본질을 국가의 범죄방지책임 또는 국민보호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국가배상적 사회보상청구권으로 보고

44)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마354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본다.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최소한의 구제가 필요한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생존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있다.⁴⁵⁾ 사회보장 및 생존권적 청구권의 관점에서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는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을 산정함에 있어 유족 또는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21조가 구조피해자 등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차감하고(제1항), 국가가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제2항)⁴⁶⁾하도록 하는 것은 보상청구권의 관점에서 구조금 지급 제도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대상범죄를 국내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헌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에 따르더라도, 원칙적으로 국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하여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⁴⁷⁾ 다만 헌법재판소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즉 국외의 경우에는 국가의 범죄방지 의무이행이 불가능하며, 범죄의 원인에 대한 조사가 물리적으로 어렵고,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 외국에서 피해구조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국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를 대상 범죄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입법형성의 재량 범위 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는 사회국가적 측면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범죄에 대하여는 구조청구를 전혀 할 수 없도록 입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이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따라서 이른바 “형성유보”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는 비판⁴⁸⁾이 제기된

45) 김현철, 국가를 상대로 한 형사보상, 국가배상,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비교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9호, 2018, 255쪽 참조. 사회보장설에서 근거를 찾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상세한 논증은 안성훈, 국외범죄피해자의 국가구조에 관한 이론적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1호, 2021, 128-131쪽.

46) 민사적 구제에 의한 피해구조금 지급제한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은 송귀채, 범죄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제한 원인과 판단근거에 관한 연구 - 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1호, 2021, 87쪽 이하 참조.

47) 같은 견해로 박미숙 외,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에 관한 검토, 법무부 수탁과제, 2017, 27쪽 이하 참조.

48) 같은 견해로 안성훈, 국외범죄피해자의 국가구조에 관한 이론적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1호, 2021, 133쪽.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판단에 대한 헌법적 비판은 방승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기본권주체, 유럽헌법연구 제19호, 2015, 183쪽, 판례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188쪽 이하 참조.

다.⁴⁹⁾ 입법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고려한 “현실적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속인주의

이에 더하여 우리 법의 적용범위라는 관점에서도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에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가해자에 대하여는 속인주의를 적용하여 내국인의 국외범은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면서도 피해자 지원에 대하여는 속지주의만을 적용하여 내국인의 국외피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⁵⁰⁾ 특히 내국인의 국외범도 벌금형을 포함한 형벌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벌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⁵¹⁾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에게도 집행되는 것이 일관적이다.⁵²⁾

3. 국외 테러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가. 입법적 결단을 통한 지원 범위의 확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제15조와 제16조에 테러범죄로 인한 피해의 지원 및 특별위로금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사람”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국외에서 발생한 테러범죄피해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됨을 명문화하였다. 즉, 테러범죄에 한하여 재외국민의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이 마련된 것이다.⁵³⁾

49) 이러한 규범적 근거를 이유로 독일에서는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에 대하여 사회국가적 측면의 생존권적 청구권의 성격에 해당하는 구조금만을 지급한다.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제3장 제3절 독일 참조.

50) 최영승,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피해자보호·지원에 대한 평가 및 발전 방향,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2호, 2016, 132-133쪽.

51) 2015년의 경우 기금 수입의 94%가 벌금액으로부터의 일반회계 전입금이었다. 조홍중,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1호, 2016, 154쪽 참조.

52) 윤지원, 해외 범죄피해에 대한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의 실무적 문제점, 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1호, 2020, 167쪽 이하.

53) 테러범죄피해자에 대한 특별위로금의 실제 지급 사례 및 이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하여는 백수용, 테러피해자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테러방지법을 중심으로 -, 원광법학 제36권

그러므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테러범죄피해자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5주 이상의 치료비 및 재산 피해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테러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사회국가적 특성을 반영한 입법적 결단이라고 판단된다.⁵⁴⁾

나. 좁은 지원범위

다만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범죄행위⁵⁵⁾를 말하므로, 이 법의 적용 범위는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에 대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극히 좁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범죄, 즉 살인, 상해 등 신체적 공격이나 협박 행위 등은 분명 “공중을 협박할 목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⁵⁶⁾ 그러나 이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피해자 등이 피해지원금 또는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대책본부는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국외테러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시행령 제14조), 예컨대 아시아인에 대한 우발적인 혐오범죄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처럼 해당 범죄가 “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규모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을 지급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방법이 없다. 이와 같은 범죄로 인한 피해는 사실상 이 법의 지원 대상 범죄피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3호, 57쪽 이하 참조.

54) 이는 일반 국외 범죄피해자에 대하여는 연방 차원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테러 피해자에 대하여만 구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의 법제 유사하다. 상세한 내용은 제3장 제2절 미국 참조.

55) 이 법에 따른 테러의 개념에 대하여는 박웅신, 테러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책적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2020, 398쪽 이하 참조.

56) 여성혐오를 이유로 한 무차별 차량 공격을 테러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로 백수용, 테러피해자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테러방지법을 중심으로 -, 원광법학 제36권 제3호, 2020, 62쪽 이하 참조.

4.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확대 관련 쟁점

가. 현실적 한계

테러범죄 이외의 범죄의 경우에 대하여도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것이, 규범적 관점에서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국가의 범죄예방책무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국가의 조력이 필요한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 헌법이 제2조 제2항에서 재외국민의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선언하고 있다는 점을 기본권의 경합을 통한 강화라는 관점에서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2017년 수행된 법무부 연구용역과제⁵⁷⁾는 이러한 관점에서 해외 발생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관련 법리를 상세하게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가 집행한 벌금의 일부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재원으로 국외에서 당한 범죄피해에 대하여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외국민의 범죄피해로 인한 사망에 대한 유족구조금의 경우 대략 11억 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그러나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범위를 확대함에 있어, 우리 헌법재판소가 구 ‘범죄피해자구조법’이 국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를 구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열거한 근거 중 피해의 원인 조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실무상의 현실적 한계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분명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규범적 정당성이 현실적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 실무적 가능성 검토

그러므로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에게도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실무적 가능성이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 예컨대 외국의 공문서를 상호 인증하는

57) 박미숙 외,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에 관한 검토, 법무부 수탁과제, 2017, 27쪽, 181쪽, 190쪽 참조.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Convention)’⁵⁸⁾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협약 미가입국의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정한 신청기간 내에 이를 입증하여 신청하는 것 자체가 곤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신속한 구조금 지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의 재외공관의 업무범위에 범죄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를 포함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⁵⁹⁾

아울러 어느 범위까지 피해지원을 확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 역시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렵다. 이러한 쟁점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에 의하여 피해보전을 받기 어려운” 여행 등 일시적 체류 등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⁶⁰⁾, 재원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사망의 경우에 대한 유족급여부터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⁶¹⁾, 납세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자는 견해⁶²⁾, 국민감정과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견해⁶³⁾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외에도 해당국의 환율이나 경제상황 등으로 인하여 구조금이 과소하거나 과대할 수 있다는 점,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국가가 지급한 구조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⁶⁴⁾ 등 실무적 관점에서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고려해야 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58)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우리나라도 이에 가입하여 2007년부터 발효되었다. 협약 가입국 간에는 상호 인증절차를 면제하므로 해당국에 제출할 서류에 대하여 해당국의 주한대사관을 통한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며 우리나라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를 해당국에 제출하면 그 나라에서 발급한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은 석광현, 한국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가입 20주년을 기념하며: 회고, 현상과 전망,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Vol.19, 2017, 89쪽 이하 참조.

59) 윤지원, 해외 범죄피해에 대한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의 실무적 문제점, 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1호, 2020, 170쪽 참조.

60) 최영승,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피해자보호·지원에 대한 평가 및 발전 방향,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2호, 2016, 133쪽.

61) 김현철,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245쪽.

6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나온 견해이다. 상세한 내용은 제357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19. 3.25. 36-38쪽 참조.

63) 윤지원, 해외 범죄피해에 대한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의 실무적 문제점, 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1호, 2020, 168쪽.

64)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윤지원, 해외 범죄피해에 대한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의 실무적 문제점, 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1호, 2020, 171-173쪽 참조.

다. 금전적 지원 절차의 지연 문제

그런데 설령 금전적 지원의 범위가 재외국민으로 확대되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상술한 바와 같이 국가가 국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에 상응하는 구조금액을 결정한 후 이를 지급하기까지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⁶⁵⁾ 아울러 범죄피해자 구조는 법무부 소관 업무이므로, 국외에서 외교부의 현지 공관을 통하여 진행해야 하는 한계로 인하여 그 절차는 더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특히 국외 범죄피해의 경우 그 특성상 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조금 지급의 지연은 결국 지원의 실효성을 크게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만약 국내 범죄피해의 경우라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에 근거하여 긴급구조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열려있으며, 필요시 같은 법 제5장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에 의한 비공식적 지원방안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 보호법’상의 긴급구조금은 범죄 발생사실에 대한 확인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여 “장해 또는 중상해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구조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예상되는 구조금액의 2분의 1까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국외에서 범죄피해가 발생하여 범죄사실의 발생 그 자체에 대한 확인이나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원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구조금으로 결정된 금액이 긴급구조금으로 받은 금액보다 적거나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 피해자에게 반환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미 국외로 지급된 돈을 회수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긴급구조금의 집행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65) 절차지연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신청기간 내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다. 윤지원, 해외 범죄 피해에 대한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의 실무적 문제점, 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1호, 2020, 170쪽.

제3절 | 금전 이외의 피해자 지원제도의 적용 확대 가능성

» [그림 2-1] 국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종류⁶⁶⁾



1. 신변보호 조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⁶⁷⁾ 경찰청 훈령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절은

66) 이 그림은 법무부 보도자료, 2021.6.24., “범죄피해자의 인권, 법무부가 보호하겠습니다 - 범죄 피해구조금, 과실범죄 피해까지 지급 확대 추진 -” 6쪽에서 인용함.

67) 이 외에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안전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규칙 제29조).

1.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외출·귀가 시 동행, 수사기관 출석 시 동행 및 신변경호
3. 임시숙소 제공
4. 주거지 순찰강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비상연락망 구축
6. 그 밖에 신변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이 중 외출시 신변경호나 주거지 순찰강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현실적으로 재외공관에 주재국과의 관계, 예산이나 인력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직접 지원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시설 및 임시숙소 등은 현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호텔 등 숙박업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재외공관이나 해당국의 수사기관 담당자와의 비상연락망 확보 등의 조치 또한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신변경호나 순찰강화 등도 해당국의 상황에 따라 현지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이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2.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와 손해배상 절차 지원

국외에서 해당국의 수사기관에 및 형사사법기관에 의하여 진행되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국내의 형사절차에서처럼 법률에 근거한 공권력 작용을 통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형사절차에서의 진술조력은 통역 등을 지원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재공관에 의하여 충분히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동수사단계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경우 피해자가 해당국의 언어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피해자(증인 등)에 대한 신변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은 박광민,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제도의 평가와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1호, 2016, 127쪽 이하 참조.

에 익숙하지 않음에도 현지 수사기관 등이 적절한 통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지 공관에 의한 통역 등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특히 단기체류 목적으로 출국한 국민의 경우 등에는 해당국의 형사절차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인력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현지 공관이 주재국의 수사 및 형사재판절차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피해자인 국민이 해당국의 형사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해외 법률전문가 자문경비 지원 운용 지침’을 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적시에 법률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변호사 선임 비용을 추후 지급될 피해자구조금에서 차감하거나,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 측이 부담하거나,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거나, 국가가 가해자에게 비용을 구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에 준하여 현지 변호사의 조력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선임된 변호사는 해당국의 법적 절차에 따라 배상명령 제도나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조력하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회복

현지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국내로 신속하게 이송되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당국의 의료 서비스의 상황에 맞추어, 피해자가 현지에서 조력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현지 공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필요시 현지 공관이 지급보증을 하거나, 현지 사정에 밝은 현지 공관에서 판단하기에 의료기술이 부족하거나 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면 국내로 이송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 이 외에도 필요시 정신상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내의 정신의학과 전문의나 상담치료 전문가 등과 원격상담 등을 주선하는 방법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의료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상술한 변호사 선임 비용과 같이 추후 지급될 피해

자구조금에서 차감하거나,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 측이 부담하거나,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거나, 국가가 가해자에게 비용을 구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지급성이 변호사 선임의 경우와 다르므로, 의료비용의 경우 특히 적시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용이 지급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 대상의 확대가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다만 피해사실의 확인 및 지급금액 결정 등과 관련하여 현실적 한계가 있음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인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는 생존권적 청구권의 특성이 있으므로, 재외국민이라 하더라도 이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속인주의의 관점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 구조금 지급 범위를 재외국민에게 확대하는 방향의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상술한 바와 같이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구조금의 지급만으로는 실효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현지 공관 등이 통역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 구조금은 이러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제 3 장

국외 범죄피해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주요국의 국외 범죄피해 지원제도

전현욱 · Aline Vlasceanu · 장진환

제3장

주요국의 국외 범죄피해 지원제도

범죄피해지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선행연구들은 주로 해당 제도가 잘 갖추어진 것으로 알려진 영국, 뉴질랜드, 오스트리아나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 등의 법제를 소개하고 있으나, 역시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선진국인 캐나다⁶⁸⁾나 미국⁶⁹⁾의 제도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드물게 이루어진 편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캐나다, 미국, 독일의 피해자 지원제도 일반, 외국인의 자국 내 피해지원, 국민의 국외 피해지원 제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제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착안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1절 | 캐나다⁷⁰⁾

1.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 일반

가. 개관

캐나다의 범죄피해자 지원은 2015년 4월 23일 제정된 ‘캐나다 피해자권리장전’(Canadian Victims Bill of Rights, CVBR(S.C. 2015, c. 13, s. 2)⁷¹⁾에서 규정하고

68) 홍영오 외,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지원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8, 90쪽 참조.

69) 홍영오 외,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지원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8, 88쪽 참조.

70) 이자영 대법원 조사위원이 번역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목차를 재구성하고 각주 등에 표시된 자료를 추가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공동연구 원고의 완성도를 높여주었음을 밝힌다.

71) “범죄피해자는 정보(일반정보, 수사 및 형사절차, 가해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정보), 보호(안전, 사생활, 개인신상 보호, 진술보조), 참여(고려해야 할 피해자의 의견, 피해자영향진술서, 배상명

있다. 피해자 권리장전은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으로, 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범죄행위 또는 범죄로 추정되는 행위의 결과로 신체 또는 정서적 피해, 재산피해 또는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로 정의한다. 이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는 가해자에 대한 일반정보를 포함해, 수사관련 정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사생활 및 개인신상정보를 보호하고,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피해자의 참여 및 진술권을 보장하며, 피해자 영향보고서 제출, 진술보조 지원, 법원의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 집행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받는다.

캐나다의 범죄피해자 지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분담해서 제공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범죄피해자에 관한 업무는 범죄가 발생한 지역 내 지역사무소 또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 사무소가 담당한다.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은 범죄에 관한 조사를 포함해 진술서 작성 지원, 범죄피해자 영향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설명과 안내, 행정지원, 경찰, 검찰, 법원, 교정당국 등과의 연계를 포함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법원은 범죄자 및 가해자에게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 등 금전적 손실을 지불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캐나다는 ‘형법’ s.738에 따라 선고에 추가하는 개별명령 방식, 보호 관찰 조건(s.732.1, 3.1a), 또는 양형의 조건(s. 724.3)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다.⁷²⁾

폭력 또는 대인범죄피해자들을 위한 범죄피해보상제도(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⁷³⁾는 지역별로 자체 규칙 및 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범죄 발생 후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재정지원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다음의 범죄피해보상제도에 대

령, 집행), 배상 청구(배상명령, 집행)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는다.”

캐나다 피해자권리장전 원문과 주석서는 캐나다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캐나다 법무부 홈페이지(<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23.7/page-1.html> 2021.12.5. 최종접속) 참조.

72) 관련 조항에 대한 설명과 원문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연방옴부즈맨사무소 홈페이지(<https://www.victimsfirst.gc.ca/serv/wvr-qdv.html> 2021.12.5. 최종접속) 참조.

73) 아래 서술한 범죄피해보상제도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은 The Canadian Resource Center For Victims of Crime, Restitution, 2009.7. (<https://crcvc.ca/docs/Restitution.pdf> 2021.12.5. 최종접속), 및 범죄피해자를 위한 연방 옴부즈맨사무소(Office of the Federal Ombudsman for Victims of Crime) 홈페이지(<https://www.victimsfirst.gc.ca/serv/fa-af.html> 2021.12.5. 최종접속) 참조.

한 설명은 주정부 차원에서 운영되는 보상제도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포함하며 일부 주에서는 이보다 더 다양한 범죄피해자 보상제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 정부는 주정부의 수익, 추가 세수, 기타 재정수익을 이용해 범죄피해보상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라고 모두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가 발생한 후 피해자는 먼저 경찰에 사건을 신고(통상적으로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 단, 예외 있음)하고,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일부 지역의 경우 2년 이내에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외국인이라도 캐나다 내에서 발생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및 신청 기간은 통상 범죄 발생일로부터 1년 이지만 예외를 인정해 준다.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은 폭력범죄 또는 대인범죄의 피해자, 살인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유가족이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범죄피해자지원 신청절차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범죄가 발생한 지역 내 범죄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연락해 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피해자 지원센터나 담당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약 1~5년 이내에 피해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피해자 지원이 결정되면 약 4주 이내에 범죄피해자 보상이 지급된다.

하지만 범죄피해자 보상 및 지원이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제한이 있다. 범죄피해자 보상금은 5천에서 최대 2만 5천CAD가 제공된다.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포함한 치료비, 범죄피해로 인한 장애 또는 정상적 활동이 불가능해 발생한 소득의 손실, 피해자 부양가족의 부양비용,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 장애를 입은 피해자들의 경우 재활비용, 및 피해자가 범죄발생 이전에 가정에서 했던 일들을 대체하는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위독한 경우에는 긴급보상을 지급하는 긴급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나. 범죄피해자기금

범죄피해자기금(Victims Fund)⁷⁴⁾은 피해자지원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개발,

사법접근,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개선, 연계 네트워크의 구축 촉진,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지원 관련 프로그램 및 활동 지원을 위해 보조금과 기부금을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영역에서 부서별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법무부 연방 피해자지원 전략(Justice Federal Victims Strategy)⁷⁵⁾의 핵심은 실무적으로 또는 프로그램운영에 있어 우려가 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을 파악하고,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기타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 등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피해자 지원 및 범죄피해자 개인에 대한 재정 및 보조금 지원과 같은 지원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에 따라 연방 정부가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수의 방법 중 하나이다. 범죄피해자기금은 범죄피해자에게 범죄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범죄 피해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1) 아동센터

아동센터(Child Advocacy Centres)⁷⁶⁾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피해자기금 제공 우선 순위와 피해자지원 목적과 지원내용이 부합하는 소수의 피해자지원 비정부기관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기금 지원은 아동의 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기관이나 단체 설립 또는 증진을 원하는 비정부기관만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센터를 위한 재정은 개인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

2) 프로젝트 펀딩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펀딩 제도를 통하여 비영리단체 및 기관, 교육기관, 지역전문기관, 소사이어티, 협회, 교육기관, 원주민 커뮤니티 내 범죄피해자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정부 원주민 단체, 비정부기관, 비영리 프로젝트를 지원하

74) 캐나다 범죄피해자기금의 설립 목적, 활동 범위,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은 캐나다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justice.gc.ca/eng/fund-fina/index.html> 2021.12.5. 최종접속) 참조.

75) 특히 Justice FVS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은 캐나다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justice.gc.ca/eng/rp-pr/cp-pm/eval/rep-rap/2016/jfvs-sfav/p3.html> 2021.12.5. 최종접속) 참조.

76) Child Advocacy Centres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은 캐나다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justice.gc.ca/eng/fund-fina/cj-jp/fund-fond/cac-cae.html> 2021.12.5. 최종접속) 참조.

는 민간기관은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⁷⁷⁾

3) 가석방위원회 심리 참석

범죄피해자기금의 지원을 이용하여 캐나다 내 범죄피해자는 자신에게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가해자의 가석방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⁷⁸⁾ 심리는 캐나다 가석방위원회(Parole Board of Canada)에서 진행하며 피해자는 방청객으로 심리에 참석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캐나다 가석방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가석방심리에 참석하기 위해 피해자가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또는 그 곳에서 숙박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때 피해자기금은 피해자의 형사사법제도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등록된 범죄피해자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의 가석방 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자녀 또는 피부양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 교정국(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CSC) 또는 캐나다 가석방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범죄피해자가 가석방위원회에 가석방심리 참석을 신청하고 위원회가 방청 또는 피해자 진술서제출을 승인한 경우 심리 참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사람도 피해자와 함께 심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 이들에게도 여행경비와 이들의 피부양자 또는 자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4) 피해자 주간(Victims Week) 행사

이를 위한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피해자 주간 같은 행사가 범죄피해자기금의 목적 및 범죄피해자 및 생존자 주간(Victims and Survivors of Crime Week)⁷⁹⁾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신청기관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범죄피해자 및 생존자 주간 펀딩 가이드(Victims and Survivors

77) 상세한 내용은 캐나다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justice.gc.ca/eng/fund-fina/cj-jp/fund-fond/proj.html> 2021.12.5. 최종접속) 참조.

78) 상세한 내용은 캐나다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justice.gc.ca/eng/fund-fina/cj-jp/fund-fond/attend-audience.html> 2021.12.5. 최종접속) 참조.

79) 범죄피해자 및 생존자주의 운영, 행사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피해자의 주간 홈페이지(<https://www.victimsworld.gc.ca/home-accueil.html#:~:text=Victims%20and%20Survivors%20of%20Crime%20Week%202021%20is,November%2014%20to%2020%2C%202021.> 2021.12.5. 최종접속) 참조.

of Crime Week Funding Guide)와 FAQ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서류미비로 재정지원 신청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펀딩은 일 년 단위로 승인이 이루어지며 자격을 갖추었다고 모든 신청자가 펀딩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5) 실종 또는 살해된 토착 원주민 여성 또는 소녀의 가족들을 위한 펀딩

캐나다 법무부는 실종 또는 살해된 토착 원주민 여성 또는 소녀의 가족들을 위한 가족정보연락유닛(Family Information Liaison Units)을 지원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펀딩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피해자 가족들의 트라우마 치료와 슬픔과 아픔 치료를 위한 지역사회기반 단체에도 펀딩을 제공하고 있다.⁸⁰⁾

6) 성폭력범죄 성인 피해자 및 장애인 피해자들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캐나다 정부는 성인 성범죄피해자 및 생존자들이 직면한 이들과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들의 사법접근을 개선하고 이들이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에 범죄피해자 기금을 통해 펀딩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가 있는 범죄피해자들이 이들을 위한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가 없는 일반인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⁸¹⁾

7) 범죄피해자와 생존자들을 위한 회복적 사법 절차

회복적 사법에 참여하는 범죄피해자와 생존자의 지원요구를 충족하고 지역 또는 지방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캐나다피해자기금(Justice Canada Victims Fund)은 목표를 설정하고 파트너들에게 목표 실현을 위한 기금사용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한다. 법무부 캐나다피해자기금은 합동 교육, 정보공유, 인식제고를 위한 행사와 그 외의 수단을 통하여 회복적 사법 기관과 피해자 지원 기관 간의 파트너십 구축 또는 강화, 회복적 사법을 위한 톨과 자원 개발, 회복적 사법 실무자를 위한 교육 제공, 피해자 및 회복적 사법 절차에 관련된 기타 이해

80) 상세한 내용은 캐나다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justice.gc.ca/eng/fund-fina/cj-jp/fund-fond/mmiw-fada/> 2021.12.5. 최종접속) 참조.

81) 상세한 내용은 캐나다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justice.gc.ca/eng/fund-fina/cj-jp/fund-fond/asa.html> 2021.12.5. 최종접속) 참조.

관계자의 업무 역량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사범을 실현하는데 있어 유용한 모범사례를 찾아서 공유하고, 회복적 사범 절차가 피해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사범 모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⁸²⁾

2.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캐나다와 자국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을 위한 범죄피해자 지원을 조사했다. 캐나다는 자국민이 국외에서 범죄피해자가 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국 내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캐나다는 자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의 경우 피해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지원하므로, 자국민에게 제공되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국내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동안 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제공된다.

캐나다 내 모든 주와 준주가 범죄피해자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캐나다 국민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주, 즉 브리티시 컬럼비아,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온타리오(적법한 체류자에 한하여 지원), 퀘벡,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및 노스웨스트 준주는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즉,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와 준주는 국내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지원은 해당 관할 구역을 여행, 취업 등을 이유로 방문 또는 거주하는 동안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에도 이용할 수 있다.

3. 국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가. 국외 범죄피해자 기금 설립

캐나다의 국내 범죄피해자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자국민과 자국 내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을 살펴본다. 캐나다는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자국민 지원을 목적으로 캐나다 국민의 국외 범죄피해자 기금

82) 상세한 내용은 캐나다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justice.gc.ca/eng/fund-fina/cj-jp/fund-fond/rjp-pjr.html> 2021.12.5. 최종접속) 참조.

(Victims Fund for Canadians Victimized Abroad)⁸³⁾ 프로그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는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자국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등을 별도의 법률 또는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 말한 ‘캐나다 피해자권리장전’에 근거해서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자국민을 지원하고 있다.

국외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국외 범죄피해자에게는 다양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먼저, 해외에서 이들은 언어소통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실제로 통역 없이는 사건의 최초 신고자, 수사기관을 포함해 지역 범죄피해자 서비스 제공기관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없을 수 있다. 범죄가 발생한 후 이들 피해자들은 본국으로 되돌아가길 희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범죄로 인해 여권을 분실하였거나 또는 손상이 된 경우 또는 추가비용 발생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돌아갈 항공편을 찾기 어려운 경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들이 귀국을 해도 문제는 남아 있다. 범죄가 발생한 해당 지역의 기관 및 피해자 지원 담당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야 하지만 거리가 멀어 이 역시 쉽지 않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캐나다는 2007년 4월 1일부터 범죄가 발생한 국외 현지에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어 심각한 상황에 놓인 캐나다 국민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외에서 강력범죄 피해를 입은 캐나다 국민, 또는 국외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피해자의 가족이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아동의 경우 아동의 부모 또는 양육책임이 있는 보호자가 대리해서 신청할 수 있다.⁸⁴⁾

나.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자국민 지원

1) 피해자기금의 지원

피해자기금은 국외의 담당기관 또는 담당자들이 외국인 피해자들에게 무엇을 어떻

83) 캐나다 법무부 홈페이지“Program Guidelines on Financial Assistance to Canadians Victimized Abroad”(https://www.justice.gc.ca/eng/fund-fina/cj-jp/fund-fond/guide_abr-ligne_etr.html 2021.12.5. 최종접속) 참조.

84) 상세한 내용은 캐나다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justice.gc.ca/eng/fund-fina/cj-jp/fund-fond/abroad-etrananger.html 2021.12.5. 최종접속) 참조.

게 해줘야 할지 모르며 외국인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방법을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 지역간, 또는 국가간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의 격차 해소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고 국외여행이 점차 증가하면서 국외 범죄피해자의 지원요청도 증가하고 있다.

과거 연구를 토대로 국외 범죄피해자들이 원하는 요구는 크게 존중과 인정, 보호, 정보를 포함한 지원, 사법접근, 보상과 피해 복구 등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물론 피해발생 시 즉각적인 긴급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범죄피해자가 테러, 전쟁 행위, 대규모 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이들을 위한 지원은 더더욱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정부기관 또는 기타 지원기관이나 담당자가 이들 대규모 폭력피해에 대해 둔감하거나 또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동을 취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캐나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Canadian Resource Centre for Victims of Crime, CRCVC)는 국외에서 테러 등 대규모 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자국민 지원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외 영사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개발하고 연방차원에서 자국민 국외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7년 4월 1일, 범죄피해자기금(Victims Fund)은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었고 현지에서 어떤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자국민들에게 연방차원에서 긴급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2007-2008년 정부간 기구회의에 법무부 담당자들이 참여해 캐나다의 형사사법정책 개발을 위한 역량과 지식 기반을 확장하였고, 캐나다의 지식과 가치를 국제적으로 명확히 했고, 법에 의한 지배를 촉진하고 범죄 예방 및 억제에 대한 캐나다의 세계적 이해 확대에 기여했다.

캐나다 국민이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었을 때 캐나다는 피해자가 다른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치료비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외 범죄피해자 지원은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오갈 때 사용한 여비, 치료비,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 등을 포함한다. 국외 외국 관할지역에서 강력범죄 등 중대한 범죄피해를 입은 캐나다 인은 누구나 연방피해자 지원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외 범죄피해자 지원은 다른 연방 또는 주정부 프로그램에서 충당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2007-2008년, 피해자 기금이 크게 개선되어 연간 약 2백만CAD에서 775만CAD로 재정이 크게 확대되었다. 재정확대를 통해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자국민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렸고, 등록된 피해자가 가석방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했다. 또한 북부지역 사법위원회의 피해자 지원 기금과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과거 지원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제출하기 위해 선고 공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고, 범죄의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도 확대했다.

같은 기간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연방-주정부 실무그룹, 피해자 자문 위원회, 그 외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기존의 피해자 지원문제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들도 파악하고 대응하기 시작했다. 연방과 주정부간 협력과 대응을 통해, 법무부는 ‘형법’ 및 ‘증거법’ 개정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했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 및 그 외 취약한 증인의 증언 및 진술 보조, 배상금, 피해자를 위한 부가금(victim surcharge), 피해자 영향 진술서 등 피해자관련 형사법 조항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들의 지원 실무 개선을 위해 2007-2008년 두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캐나다 3개 지역에서 피해자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북부 프로그램(Northern Program)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4명의 새로운 왕립증인조정관(Crown Witness Coordinators, CWC)⁸⁵⁾ 직책이 신설되었고 CWC 교육행사가 진행되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이 바로 국외 범죄피해자 프로그램(Victims of Crime Abroad Program)이다.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 기금을 통해 영사관과 재외공관 직원들에게 피해자 지원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007-2008년 범죄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센터(Policy Center for Victim Issues, PCVI)⁸⁶⁾는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캐나다 국민들을 위한 재정지원과 관련해 영사관 및 재외공관 직원들에게 4차례 걸쳐 교육을 제공했다. 범죄피해자들을

85) 왕립증인조정관의 자격요건, 업무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캐나다 검찰청 홈페이지(<https://www.ppsc-sppc.gc.ca/eng/wop-oce/02.html>) 2021.12.5. 최종접속) 참조.

86) 캐나다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justice.gc.ca/eng/cj-jp/victims-victim/aboutus-a-proposdenous.html>) 2021.12.5. 최종접속) 참조.

위한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이들 피해자들의 재정부담은 줄고 반면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하려는 의지는 강화되는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경험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2) 재원, 법적근거, 신청요건, 및 지원내용

범죄피해자기금(VJF: Victims Justice Fund)은 '지역위반법'(Provincial Offense Act)에 따라 징수한 벌금(주차위반 벌금은 포함하지 않음) 중 일정 비율을 차지하는 피해자를 위한 분담금(victim fine surcharge)과 캐나다 '연방형법'에 따른 연방 피해자를 위한 분담금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해서 약 연간 약 4400만-5000만CAD가 범죄피해자기금에 모이게 된다. 범죄피해자기금의 가장 중요한 재정은 벌금 중 피해자를 위해 분배한 별도의 분담금으로 이는 범죄피해자기금의 약 90%를 차지한다.

이처럼 범죄피해자 기금은 가해자 및 범죄자가 납부하는 벌금이 주요한 재원이다. 판사는 캐나다 '연방형법'과 '범죄피해자법'(Victims of Crime Act)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한다. 범죄피해자 기금은 범죄피해자지원위원회(Victims Assistance Committee)가 관리하며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주요 업무는 자금사용계획서를 검토하고 법무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한다.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기금 사용에 대한 최종결정 권한을 갖는다.

국외에서 심각한 폭력피해를 입은 캐나다 자국민은 피해자기금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07년 4월 1일부터 피해자기금 이외에 다른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국외 범죄피해자에게도 재정지원이 제공된다. 신청요건은 국외에서 심각한 폭력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범죄로 인해 사망 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이며, 피해자의 가족, 아동의 경우 아동을 양육 또는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범죄는 살인, 가중폭행, 아동폭력을 포함한 중대한 폭력행위이다. 피해자기금은 국외 범죄피해자가 기금 이외의 방법으로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범죄가 발생한 국가에서 진행되는 공판준비절차 및 정식재판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 참여시 발생하는 여비를 지급하는데 여비는 공판준비절차 및 또는 공판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발생하는 경비, 범죄피해자를 돕는

자의 동행여비, 범죄피해자가 자국으로 귀국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이 포함된다.⁸⁷⁾ 이 외에도 범죄피해에 따른 병원비 및 치료비⁸⁸⁾, 도난당한 공문서 재발급 등에 필요한 비용,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장례식장 비 및 매장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등 손님접대비용은 포함하지 않음⁸⁹⁾, 또는 강력범죄로 인해 발생한 본인부담 비용⁹⁰⁾이 지원된다.

하지만 피해자기금은 피해자지원기금 신청인의 의료보험 또는 여행자보험 비용, 범죄피해에 따른 임금상실, 보상비용, 법률비용, 범죄피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⁹¹⁾, 또는 2007년 4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범죄로 인한 비용, 및 기타 연방

87) 해외에서 살해된 캐나다 국민의 시신 송환, 범죄피해자가 본국으로 귀국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항공료/버스운임/기차운임), 국외에서 피해를 입은 캐나다인과 동행하는 지원인 1인의 여비(이코노미 항공료/버스/기차 운임, 숙박, 식사, 캐나다 정부 요율 기준)는 최대 60일까지 지원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예비심리 및/또는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범죄가 발생했던 국가로 이동하기 위한 여비(이코노미 항공료/버스/기차 운임, 숙박, 식사, 캐나다 정부 요율 기준)는 해당국이 비용 전체를 지불할 의사가 없거나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 최대 60일까지 지원된다. 이러한 비용에 대한 상환 신청 시 재판일정 등 공식문서/통지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국외 범죄피해자가 피고인의 예비심리 및/또는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범죄가 발생했던 국가로 이동할 때 이를 지원하는 보조인 1인의 여비(이코노미 항공료/버스/기차 운임, 숙박, 식사, 캐나다 정부 요율 기준)도 최대 60일까지 지원된다. 이러한 비용의 상환 요청시에도 당연히 재판일정 등 공식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88) 범죄의 직접적 결과로서 범죄가 발생한 국가에서 발생한 병원, 의료비(헬기수송, 처방 및 기타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치료 포함) 또는 상담(심리상담사,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치료사) 비용, 전문상담 또는 치료를 위한 재정 지원(등록된 심리상담사 또는 심리치료사, 정신과 의사 또는 그 외 의사가 추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사고 후 5년 내 최대 5,000CAD를 지원한다. 성인 피해자의 미성년 또는 피부양자 자녀를 위한 전문 상담 또는 치료를 위하여는(등록된 심리상담사 또는 심리치료사, 정신과 의사 또는 그 외 의사가 추천하는 경우) 사고 발생 후 1년 내 최대 1,000CAD를 지원한다. 아동이 범죄에 노출된 사건(예: 해외에서 부모 중 한 사람에 대한 가정 폭력 목격 또는 가정폭력을 직접 경험), 범죄피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료 또는 치과 비용으로 민간 또는 공공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의사의 소견서에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예: 부러진 치료, 깨진 안경 교체, 또는 기간 중 파손된 휠체어) 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처방(예: "사후 피입약", 성병예방처방, 항불안제 또는 진통제 처방) 등에 대하여는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89)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장례비는 최대 2,500CAD를 지원한다.

90) 범죄피해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본인 부담금은 경찰서, 캐나다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으로 이동하는 택시비 및 범죄 직후 장거리 전화 통화료 등을 말한다. 이 외에도 여권 등 캐나다 본국으로 귀국하기 위해 필요한 분실 또는 도난 당한 공식문서의 재발급 비용, 영사사증료와 관련된 비용, 경찰 수사보고서, 의료기관 진단서 및/또는 법원 문서를 영어/프랑스어로 번역하기 위한 비용, 피해자가 범죄피해를 경찰서와 영사관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법정확인서(statutory declaration) 발급 비용 등이 지원된다.

91) 피해자기금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피해자/신청자의 고용보험, 의료보험 또는 여행자보험, 기타 자금 출처에서 부담하는 비용, 범죄가 발생한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용, 본국으로 귀국 시 거주 지역 또는 지방에서 부담하는 비용, 임금상실, 보상 비용(예상되는 미래 소득 손실을 보상하거나 범죄 피해로 인한 물질적, 신체적 또는

또는 주정부의 범죄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절차 참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비는 최대 4만CAD(예를 들면, 송환 및 공판 등 절차 참여를 위한 여비)이고 치료 및 상담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상한액은 1만CAD이다. 치료 및 상담 등 의료비의 경우 상담 상한액은 5천CAD이며 기타 마사지 치료 및 범죄피해와 관련한 처방 및 치료비도 최대 5천CAD까지만 지원된다.

3) 피해자기금 신청방법

피해자기금 신청은 3단계로 나뉜다. 먼저,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자는 캐나다 대사관 또는 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범죄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대사관 또는 영사관 직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피해자의 안전이다. 재외공관의 직원은 긴급의료 지원을 포함해 현지 법률 및 관련 규정 등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승인을 받아 피해자의 친인척에게 연락을 취한다. 만약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거나 또는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 수사당국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의 직원들은 피해자기금 관리자에게 피해자가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재외공관에 사건을 신고한 후 해당 지역의 관할경찰서에도 신고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자국민은 현지 경찰에 연락하여 사건을 신고하고 자신의 안전 확보를 위해 즉각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후 지원신청 등을 위해 경찰 보고서 사본을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경찰 보고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 경찰보고서에 기재된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고 이후 보험금 청구, 범죄피해와 관련해 주정부에 보상 청구를 할 때 필요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경우, 피해자 기금의 재정 지원 신청서와 함께 경찰 보고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외 범죄피해자는 법무부에 재정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국외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정지원을 신청

심리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 몸값(감금된 개인의 석방 또는 압류 중인 물품을 반환받기 위해 약속한 금전 또는 기타 물품), 뇌물(공직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약속한 금전 또는 기타 가치 있는 물품), 법률 비용, 이 기금의 명시적 지원대상이 아닌 병원비, 치료비, 치과비용, 척추지압, 마사지 또는 기타 대체적 치료(예: 요가)는 의료 종사자가 처방하고 범죄 피해와 명백하게 연결되지 않는 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기관인 법무부는 첨부자료를 검토한 후 지원자격을 검토한다. 신청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와 지원액 등에 대한 결정은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지며 신청결과를 신청인에게 서신으로 통보된다. 아울러 캐나다 범죄 피해자지원센터(CRCVC)를 통하여 지원금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다. 재외공관의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

재외국민을 위한 긴급대응 방법은 캐나다 ‘영사서비스헌장’(Canadian Consular Services Charter, CCSC)⁹²⁾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헌장은 캐나다의 재외공관 직원들은 국외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서 재외공관의 담당들은 여러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먼저, 재외공관의 직원들은 자국민이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지역 내 의사와 병원 리스트를 제공하고, 지역 경찰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내용과 연락처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실종자가 발생했다면 친인척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연락 한다. 상황이 긴급하고 그 외 모든 지원방법이 소진된 경우 사건을 피해자기금으로 이전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해의 본국송환을 지원하고, 지역의 변호사 리스트를 제공하고 법률 및 형사사법 절차에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만약 대규모의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면 재외공관의 직원은 전문가 팀을 배치하고 비용회수 방식(on a cost-recovery basis)으로 가장 가까운 피난처로 자국민들을 대피시킨다. 또한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긴급상황에 대해 알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준다.

적절한 의료 및 지원 서비스 이용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의 자원과 기반 시설에 따라 달라진다. 국외에서 도움이 필요한 캐나다인은 가장 가까운 총영사관이나 재외공관에 연락할 수 있다. 캐나다 외교 및 국제무역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DFAIT)는 국외에서 피해를 입은 자국민에게 자연재해나 긴급 의료상황 시 대출 지원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영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교 및 국제무역부는 150개국에 소재한 260개 이상의 사무소 네트워크를 통해 연중무휴로 자국민을 지원하고 있다. 자국민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에는 대사관,

92) 헌장 전문은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https://travel.gc.ca/docs/publications/canadian-consular-services-charter.pdf> 2021.12.5. 최종접속) 참조.

총영사관, 고등 판무관 및 기타 정부 기관이 포함된다.

영사 서비스는 국외에 있는 자국민에게 제공된다. 상황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영사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도 달라진다. 해당 지역의 정치적 상황, 해당국의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자국민의 지원 범위 및 내용이 결정된다.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은 필요한 만큼만 관여하며 이들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은 제한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가 필요한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개인이 여행을 가기 전 목적지에서 가장 가까운 재외공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국외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장 가까운 캐나다 재외공관에 연락하거나 비상 감시 및 대응 센터 +1-613-996-8885(가능한 경우 수신자 부담 전화)로 직접 전화할 수 있고 센터는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은 범죄피해자에게 해당 지역 내 지역 경찰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연락처 정보 제공, 범죄 발생 후 정서적 안정과 신체 치료, 형사사법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지원, 친인척 및 가까운 지인에게 연락, 상담서비스 연계, 안전을 위한 기본적 조치, 범죄수사 및 기소 등 형사소송절차와 관련해 해당 지역당국과 협력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피해자기금을 통한 긴급 재정지원 신청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도 범죄피해자에게 알려준다.

캐나다 본국으로 귀국 후 국외 범죄피해자는 지역 내 피해자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연계서비스 및 기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캐나다인은 또한 국외에서의 범죄피해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기금에 연락하여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재외공관은 개인의 안전과 치료 등을 위해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자국민에게 병원 또는 의료진의 연락처 제공,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연락, 피해자가 실종되었거나 아동이 캐나다 본국 밖으로 약취된 경우 필요한 지침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는 없으며, 양육권 분쟁 중에 있는 부모가 아동을 캐나다 국외로 약취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법적책임을 묻지 않는다.

여권, 이민국에 제출할 자료, 영주권, 비자 등 서류를 분실했다면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재외공관의 직원들은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거나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만약 국외 범죄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재외공관의 직원들은 경찰서에 국외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인척에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장례와 관련해 장례식장을 찾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장례절차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거나 유해의 본국송환 비용 등을 지원하지 않으며 번역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다.

범죄사건 수사와 형사사법절차 등에 대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 선임을 원할 경우 변호사 리스트를 제공하고 강도, 성폭력, 그 외 폭력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면 담당경찰서와 치료를 위한 병원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통역사 연락처 제공, 공증업무 등을 처리한다.

캐나다인 국민은 국외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위협을 받은 경우 즉시 현지에서 가장 가까운 캐나다 재외공관에 폭행 등 사건을 신고하거나 긴급대응 센터(Emergency Watch and Response Center)⁹³⁾에 연락해야 한다. 또한 지역을 관할하는 해당국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범죄피해 당사자가 즉시 경찰서에 갈 수 없는 경우 가해자 또는 가해자와 관련해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세부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성폭행 범죄의 경우 가능하면 부상 부위를 사진으로 찍는 것이 중요하고 공격이나 가해행위의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 경찰이나 보건 공무원이 지시할 때까지 신체나 상처부위를 씻거나 닦아서는 안 된다. 일부 국가의 경우 경찰은 범죄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기소되기를 원하는지 물어볼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정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국했다면 캐나다 본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국외 범죄피해자가 의료지원이나 심리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숙박하고 있는 곳의 주인이나 가장 가까운 호텔의 컨시어지에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을 문의할 수 있고 가능한 경우 부상부위를 사진으로 찍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는 범죄발생 후 신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가정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료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는 본국에 있는 가족, 친구, 가까운 지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해 본인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93) 국외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국민들을 위한 긴급지원에 관한 내용은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https://travel.gc.ca/assistance/emergency-assistance>) 2021.12.5. 최종접속) 참조.

트해야 한다. 범죄피해 후 범죄로 인해 정신적 외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족, 친구, 전문가와 사건에 대해 의논하는 것이 좋다. 범죄자가 체포되면 현지 사법체계에 따라 법적절차가 캐나다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 있으며 피해자는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현지 변호사 리스트는 국외 캐나다 재외국민공관에서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CRCVC)의 국외 범죄피해자 지원

캐나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CRCVC)는 테러 및 대규모 폭력을 포함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외공관 및 그 외 사무소나 기관의 위치 정보를 사고 발생 후 1시간 이내에 웹 사이트를 통하여 알려준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어페어캐나다(Global Affairs Canada)⁹⁴⁾와 협력해 범죄피해를 입은 자국민과 소통한다. 범죄피해자는 Twitter, Instagram, Facebook 및 라이브 채팅 서비스를 이용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락할 수 있다. 형사사법절차 참여를 원하거나 이와 관련해 정보를 원하는 이들을 지원한다.

캐나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캐나다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다수의 피해자지원 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피해자가 캐나다로 귀국한 후 지역사회의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폭력범죄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기는 등 범죄피해자의 여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건강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범죄피해자들은 장기적인 지원과 정신과 상담 등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이들과의 더 나은 소통을 위해 라이브 채팅, 텍스트 라인, 화상회의, 원격회의 등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캐나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를 대신하여 정의실현을 위해 국외 관련 기관에 서한을 작성해서 보내기도 한다. 센터는 가해자가 체포되지 않고 사건이 미결로 남았을 때 장기적으로 국외 범죄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사법정의를 추구하도록

94) 글로벌 어페어 캐나다에 관한 내용은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https://www.international.gc.ca/global-affairs-affaires-mondiales/home-accueil.aspx?lang=eng> 2021.12.5. 최종접속) 참조.

지원하고 가족이 공동체 일부라고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범죄피해자가 상담 및 치료비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가 법무부 등 그 외 기관과 연락을 취할 때 중간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캐나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외 범죄피해자들이 법무부의 국외 범죄피해자를 위한 캐나다 긴급지원기금과 같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신청서 작성을 돕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귀국 후 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지역 내에서 전문 상담사들로부터 정신적 외상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원한다. 살인, 성폭행 등 폭력범죄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심리교육자료를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 장기지원의 형태로 소규모 범죄피해자 전담팀이 피해자들을 특별 관리하며 팀원들의 이직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오랜 기간에 걸쳐 신뢰를 구축하고 관계를 유지해 나가며 피해회복을 돕는다.

마. 국외범죄피해자 지원의 규범적 근거

1) 권리자유헌장

캐나다 권리자유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CCRF)는 캐나다인들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믿는 권리와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헌장 제12조는 처우 또는 처벌 조항은 모든 사람은 무자비하고 비정상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법 앞의 평등 및 법률에 따른 평등 그리고 법률의 동등한 보호 및 혜택, 제1항은 모든 개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평등하며 특히 인종 국적 민족 피부색 종교, 성별, 연령,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고 법률상 동등한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장은 캐나다 시민, 영주권자, 이민자 여부에 관계없이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예를 들면, 헌장은 투표권(제3조) 및 “캐나다 입국, 체류 및 출국”권리(제6조)와 같은 일부 권리는 캐나다 시민에게만 부여한다.

2) 캐나다 국민인 국외 범죄피해자의 지원요구 대응 근거

현장 외에 국외 범죄피해자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제도로는 캐나다 국외범죄 피해자기금(Canadians Victimized Abroad Fund) 이외에도 캐나다 영사서비스헌장(CCSC; Canadian Consular Service Charter)⁹⁵⁾가 있다. 캐나다는 국외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의 형태와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캐나다 영사서비스헌장(CCSC)을 따르지만 사실 현장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지원의 상당부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첫째, 긴급의료지원은 범죄 발생 후 피해자의 응급치료를 위해 현지 전문의료인과 의료기관 리스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CCSC는 심리적 외상 및 심리적 불안정, 정신건강 등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CCSC는 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신청서 작성 지원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서비스에서 장기치료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둘째, 국외 범죄피해자들이 본국으로의 귀국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제한되어 있다. CCSC는 자국민이 비용회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건이 발생한 현지에서 가장 가까운 안전한 피난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총영사관 및 재외공관의 직원이 국외범죄피해자의 귀국을 도울 의무가 없으며 피해자가 모든 이동경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CCSC에 명시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항목 중 어느 것도 정부가 지원해야 할 의무는 없다. CCSC는 총영사관 또는 재외공관 직원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과 제공할 수 없는 지원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다.

3) 국제규범

1985년 UN은 ‘거주국의 국민이 아닌 개인의 인권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Who are not Nationals of the Country in which They Live, 이른바 외국인 인권선언)⁹⁶⁾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에 규정된 기본인권이 비시민권자에게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되었다. 규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이를 비준한

95)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https://travel.gc.ca/assistance/emergency-info/consular/canadian-consular-services-charter> 2021.12.5. 최종접속) 참조.

96) 선언의 전문은 UN 홈페이지(https://www.un.org/en/genocideprevention/documents/atrocities-crimes/Doc.26_Declaration%20on%20the%20Human%20Rights%20of%20Individuals%20who%20are%20not%20nationals.pdf 2021.12.5. 최종접속) 참조.

각 국가는 해당 영토 내에서 관할권에 따라 모든 개인의 특정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이 선언문은 국가가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법을 입법하고 해당 법을 시행할 때 지침의 역할을 한다. 이 선언문 제5조 내지 제10조는 비시민권자(선언문에서 "외국인"이라고 규정)의 권리를 명시한다. 이 조항에 따라 외국인은 자의적 체포 또는 구금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여 개인의 생명권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사생활, 가족, 집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 또는 불법적 간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통역사의 무료 지원을 포함한 법정에서 평등할 권리,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하고 가족을 창설할 권리, 사상·의견·양심·종교의 자유, 언어·문화 및 전통을 유지할 권리, 그리고 국외로 송금할 권리와 관련해 자국민들과 동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고 동등하게 처우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국가 안보, 공공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한 외국인에게도 출국할 권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 재산을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소유할 권리, 이동의 자유와 국경 내에서 거주지를 선택할 자유, 배우자와 미성년 또는 부양 자녀가 국내법에 따라 합법적인 외국인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해당 국가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해당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관습과 전통을 존중한다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 공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사회 서비스, 의료, 교육 및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는다.

선언문은 또한 고문이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로부터 보호, 외국인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않는 자유, 거주 국가에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추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국가안보를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권리,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국적국의 영사관 또는 외교공관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바.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과의 비교

피해자의 지원요구는 특정되지 않으며 일관된 일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범죄피해자

의 지원요구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은 개인의 시간표를 따른다. 사건발생 시점부터 최대 9개월까지는 위기대응 단계로 단기적 지원이 필요하다. 단기적 지원은 정서적 지원, 의료 지원, 법률자문이 포함된다. 범죄피해자는 최대 18개월까지 당국의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 신체재활치료, 문화적·정신적 요구에 대한 고려, 미디어 침입으로부터의 보호, 법적 조언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는 중기적 지원이 필요한 단계에 들게 된다. 단기 및 중기적 지원 이외에도 피해자는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정보, 비정부기구의 지원, 전문가의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리, 및 그 외 장기적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범죄피해자가 원하는 지원은 복합적이며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자국민을 위한 캐나다의 지원은 긴급지원이 주를 이루며 단기적 지원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피해자는 이동을 위해 필요한 여비, 치료비, 장례비용 등 범죄피해자 지원 재정을 이용할 수 있고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었다면 지원을 받는 절차나 과정이 더욱 복잡하다. 범죄피해자가 즉각적인 전문 의료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범죄가 발생한 현지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낮거나 부당한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 범죄피해자에게는 장기적으로 지원이 제공된다. 각 지역의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범죄피해자가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범죄피해자지원 기금 프로그램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하거나 위탁하기도 한다.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한 상담서비스, 기초생활필수품 등 생활비 지원, 증상을 입은 경우 의료지원 등을 제공한다.

사. 재외공관과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간 협력

유엔은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 개인에게 부여되는 기본적인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확립하고 장려하고 있지만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개별 국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의 내용과 규모는 국가마다 크게 다르며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유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가 다른 지역 및 국가와

비교해 더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상당수의 국가가 제한적 범위 내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피해자지원 제도나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도 있다. 미국의 위기 개입, 위탁 및 연계, 상담, 법원동행, 재정지원, 피해자의 안전확보 계획, 사례 관리와 같이 자국민 국외 범죄피해자를 위한 기본적인 피해자 지원은 거의 사례가 없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는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 법률 지원, 특별수사관의 해당 범죄수사 및 그 외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원을 외국인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사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단기 지원만을 제공하며 본국으로 귀국 후 피해자가 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국내 피해자지원 기관이 협력하거나 공조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캐나다와 미국의 대부분의 범죄피해자 지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서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4.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국외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

캐나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CRCVC)는 국외 범죄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CRCVC가 영사 서비스 및 수사기관에 연락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캐나다 정부가 제공한 것 지원과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최초 범죄피해가 발생하고 몇 년이 지나서야 깨달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국외 범죄피해자가 정부 지원 없이도 범죄발생 후 귀국할 수 있는 경우처럼 정부의 피해자 지원을 받지 않거나 요청하지 않을 수 있고 실제로도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CRCVC는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이름 대신 이니셜을 이용해 지원사례를 설명했다.

가. 사례 1: NC

NC의 파트너는 9·11 세계무역센터 공격으로 죽거나 다친 캐나다인 24명 중 한 명으로 뉴욕에 출장을 가고 있었다. NC는 테러공격 후 몇 년이 지나도록 미확진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고통 받았다. 캐나다 메이저 항공사 승무원

일했던 그는 9.11테러 공격 이후 일을 그만두었고 이후 상담과 치료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고, 미국과 캐나다 정부가 계속해서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며 책임을 전가했기에 어느 한쪽으로부터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미국인이었다면 프로보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캐나다인이었기에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보상청구 소송 진행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소송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캐나다 정부가 미국으로 받은 보상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값비싼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법률비용을 더 지출해야 했다(미국 시민에게는 2년의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NC는 911테러 공격이 발생하고 3년이 지난 2004년 처음으로 CRCVC를 찾았고 그 후 17년이 지난 2021년까지도 센터를 찾고 있다.

CRCVC가 NC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 NC의 용기와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 덕분에 CRCVC는 국외에서 피해를 입은 캐나다 자국민들을 위한 피해자 기금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기금은 2007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2007년 4월 1일 이후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캐나다인에게만 적용된다.

CRCVC는 공격 당시 세계무역센터 안팎에서 NC의 파트너와 2,763명을 살해한 혐의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NC의 미국 여행 및 숙박비용을 지원했다.

CRCVC는 NC와 다른 피해자들을 염두에 두고 살인 범죄로 사랑하는 이를 잃고 고통 받는 가족과 사람들을 위한 월례행사 “Loss to Violence Support Group” 출범을 위해 법무부의 2018년 범죄피해자 및 생존자 주간을 위한 피해자기금(Victims Fund for Victims and Survivors of Crime Week 2018)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

참가자 증가와 COVID-19 확산으로 인해 CRCVC는 온타리오에서 열린 월례행사 공간을 가상의 온라인 공간으로 옮겼다. 이로써 캐나다 전국에 있는 살인 사건 유족이나 관련자들이 멀리서도 행사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11월 18일, CRCVC는 법무부의 2021년 범죄피해자 및 생존자 주간을 위한 피해자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인 가상 Loss to Violence Support Group을 출범했다.

나. 사례 2: EZ

EZ는 어렸을 때 9.11테러 공격으로 부모를 잃었다. 오늘날 EZ는 심각한 PTSD와 불안뿐만 아니라 약물남용과 중독으로 고통 받고 있다. 약물중독 치료와 극복을 위해 EZ는 자비로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고 있다.

2001년 9.11테러가 발생하고 2007년까지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자국민을 위한 피해자기금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EZ는 이 기금을 이용할 수 없었다. CRCVC는 기금지원을 소급적용해 EZ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Z는 추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더 많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최초 신청 때 정신과 상담과 치료비용으로 5,000 CAD를 받았으나 CRCVC와 피해자기금이 지속적으로 논의한 끝에 예외적으로 추가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CRCVC는 치료비 상환을 위해 EZ의 심리상담 및 치료비 영수증을 피해자기금 사무소로 계속해서 전달받았고 이를 위해 피해자와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

다. 사례 3: AS

2019년, AS는 중동을 방문하는 동안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다. 가해자들은 AS의 차량 매매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AS는 신용사기의 피해자가 되었고 약 4십만CAD의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 대부분은 은행 대출과 가족의 돈이었다. 이 막대한 금전적 손실 외에도 AS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AS가 캐나다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했고 캐나다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은 폭력범죄를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용범죄피해자인 AS는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캐나다 자국민을 위한 피해자기금의 지원을 포함해 재정지원을 신청할 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AS의 연락을 받은 후 CRCVC는 캐나다 법무부의 피해자기금 담당자와 함께 그를 위한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AS는 자신에게 꼭 필요로 하는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비로 5천CAD를 받게 되었다. 이 외에도 CRCVC는 중동 및 터키 영사관 사건 담당자와 함께 캐나다 글로벌 업무부서(Global Affairs Canada)에 연락해 중동의 형사 사건처리와 관련한 정보를 얻고자 노력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이집트에서 발생한 사건의 처리과정에 개입할 수 없으며 어떤 식으로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본국으로 귀국했고 고령자이기에 이집트 정부기관으로부터 직접적인 답변을 얻기가 매우 어려웠다. AS는 중동의 사법제도에도 익숙하지 않아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 AS가 있는 캐나다와 이집트의 9시간의 시차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CRCVC가 연락하는 영사관 사건관리 책임자의 도움으로 그들은 이집트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과 연락하여 가능한 대응조치와 법적절차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다. 피해자와 CRCVC 모두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썼기 때문에 주 이집트 캐나다 영사관은 이집트 외교부를 통해 이집트 수사당국에 사건처리에 관한 최신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외교 공문을 통해 AS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

CRCVC는 AS를 대신해 법원의 사건번호와 판결일 등을 아랍어로 번역해 서한을 작성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성년 자녀는 이집트 대사관을 통해 이집트에 사건처리에 관한 정보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안타깝게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CRCVC는 당시 Deb Schulte 선임장관에게 이 사안에 대해 서신을 보냈다. 서신을 받은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캐나다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인 David Lametti에게도 서신이 전달되었다. 법무부 장관은 CRCVC 서신에 대해 해당 부처 관계자와 공유했고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캐나다인을 위한 지원강화 및 포괄적 재정지원에 대한 CRCVC의 권고에 관심을 갖고 검토했다고 개인적으로 응답했다. CRCVC는 여전히 이 사건의 피해자인 AS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으며 치료비 상환을 위해 그의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 영수증을 피해자기금에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다.

라. 사례 4: MR

MR의 자녀는 대만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했다. 사지는 절단된 채 불태워졌고 사체 일부는 개울에 던져 유기되었다. MR은 원래 자녀가 실종되었다고 말했지만 몇 주 후 개울에서 사체의 일부가 발견되면서 시신을 찾을 수 있었다. MR은 유해 송환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영사관 사건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담당자는

CRCVC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CRCVC에 직접 연락했다.

그 후 CRCVC가 사건을 인계받아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캐나다 자국민을 위한 피해자 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MR은 컴퓨터가 없고 신체 능력이 제한된 고령자였기에 CRCVC에 치료비 영수증을 우편으로 보냈다. CRCVC는 치료비 상환을 위해 영수증을 정리하여 피해자기금에 보냈다. CRCVC는 MR와 피해자기금 직원과 연락하 조율해 치료비 상환을 위한 자동 예금을 개설했다. 그리고 CRCVC는 MR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상담사 리스트를 작성했다. MR은 유해 송환 비용과 장례비로 2,500CAD를 지원받았고 500CAD의 정신과 치료비를 모두 상환 받았다.

마. 사례 5: SB

SB는 2015년 온두라스에서 잔인하고 폭력적인 물리적 공격을 받아 간신히 살아남았다. CRCVC는 SB와 몇 년 동안 협력해 SB가 다양한 국외 범죄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SB는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CRCVC는 피해자기금 신청을 도왔다.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과 국외 범죄피해자 지원의 불균형을 감지한 CRCVC는 더 많은 치료비 지원을 허용하는 광범위한 정책 변경을 요청했다. 현재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 10,000CAD는 온두라스에서 받은 집중치료비와 현재에도 계속되는 치료비를 간신히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피해자의 폭력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SB는 지속적인 치료와 심리 상담이 필요했다. 범죄피해자의 심리치료와 정신과 치료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SB는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피해자는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를 지불했고 여전히 상환 받지 못한 치료비가 상당하다. 지금도 SB의 병은 호전되지 않았고 건강도 점차 악화되고 있다. SB는 최근 추가 질병 진단을 받았고 이는 온두라스에서 겪었던 범죄피해 경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만성 PTSD와 최근 진단받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로 인해 치료비 부담이 더욱 커졌고 범죄발생 후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SB의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질 것이며 불안장애 역시 지속될 것이다. 이는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지금까지 CRCVC는 SB가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CRCVC는 SB가 캐나다 육군 참전용사로서 더 나은 의료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범죄피해와

관련해 치료비뿐만 아니라 특별식 배달과 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우미견을 찾는 등 부차적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바. 사례 6: DW

DW의 형제는 1979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잔인하게 살해되었고 수십 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범인은 2000년대 초 마침내 검거되었고 2010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배심원재판을 받았다. DW와 그의 노쇠한 시각 장애인 부모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피해자기금은 2007년 4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국외범죄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CRCVC는 당시 법무부 장관, 온타리오주 법무장관, 피해자기금 현지 사무소를 포함하여 다양한 정부기관에 2년 넘게 지원을 요청했다. CRCVC는 마침내 DW가 5만CAD의 재정지원을 받아 재판참석을 위한 여비 등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제2절 | 미국⁹⁷⁾

1.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 일반

가. 개관

콜롬비아 특별자치구, 괌, 버진 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등 미국령을 포함해 미국 각주에서 폭력범죄 또는 대인범죄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보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주는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각각의 법률에 따라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연방범죄피해자법’(Victims of Crime Act, VOCA)에 따라 범죄피해자 기금(Crime Victims Fund)을 제공하고 기타 기술적 지원을 각 주에 제공하고 있다.⁹⁸⁾

97) 이자영 대법원 조사위원이 번역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목차를 재구성하고 각주 등에 표시된 자료를 추가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공동연구 원고의 완성도를 높여주었음을 밝힌다.

미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방 법률은 크게 ‘피해자의 권리 및 배상법’(The Victims’ Rights and Restitution Act, VRRRA, (34 U.S.C. § 20141)⁹⁹⁾와 ‘범죄피해자 권리법’(Crime Victims’ Rights Act (CVRA) (18 U.S.C. § 3771)¹⁰⁰⁾이 있다.

‘피해자의 권리 및 배상법’(VRRRA)에는 연방정부가 연방범죄의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할 지원이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은 연방정부가 연방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할 지원에 대해 규정한다. ‘피해자권리 및 배상법’(VRRRA)에 따라 피해자가 제공받는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치료와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정보, (2) 심리상담, 치료, 그 외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 또는 민영 프로그램 공지, (3) 가해자 또는 가해자와 협력하거나 가해자의 명령을 받는 자로부터 합리적 보호, (4) 정보제공이 부적절하지 않고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수사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제공, (5) 증거목적으로 관리 중인 개인재산을 좋은 상태로 보존하고 증거로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즉시 반환 등. 이 법에서 말하는 범죄피해자는 범죄의 결과로 발생한 직접적 신체, 감정, 금전 또는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는 자를 말한다. 범죄피해자가 18세 미만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배우자, 법정후견인, 부모, 자녀, 형제, 기타 가족구성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자의 순으로 피해자의 대리인 중 한명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1인 이상의 법정대리인을 지정해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행위와 관련해 과실 또는 책임이 있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범죄피해자권리법’(CVRA)에는 범죄피해자로서 피해자가 갖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이 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법원으로부터 합리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받을 권리, 법원절차의 진행에서 제외되지 않을 권리(다만, 이 권리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제출되었고 법원이 피해자가 법원절차 중 다른 증인의 증언을 듣고 그로 인해 자신의 증언을 변경할

98) 범죄피해자국(Office for Victims of Crime) 홈페이지 OVC Fact Sheet(https://www.ncjrs.gov/ovc_archives/factsheets/cvfca.htm 2021.12.5. 최종접속) 참조.

99) 34 U.S. Code § 20141 - Services to victims. 전문은 미국 법률정보사이트(<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34/20141> 2021.12.5. 최종접속) 참조.

100) 18 U.S. Code § 3771 - Crime victims' rights. 전문은 미국 법률정보사이트(<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3771> 2021.12.5. 최종접속) 참조.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해자의 석방, 유죄인정, 양형, 판결 또는 가석방과 관련된 법원의 모든 심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 검사와 사건을 상의할 수 있는 권리, 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완전한 피해배상을 받을 권리, 부당한 법적절차의 지연을 겪지 않을 권리, 공정한 대우를 받고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가해자의 유죄인정 또는 기소유예합의에 대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받을 권리, 이러한 권리와 '범죄피해자 권리 및 배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를 고지받고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범죄피해자 옴부즈먼 사무소의 연락정보를 받을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은 1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이 역시 사건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기도 한다. 미국의 범죄피해자 지원 중 가장 특이한 점으로 테러행위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들 수 있다. 연방 반테러긴급준비금(Antiterrorism Emergency Reserve)¹⁰¹⁾을 이용해 미국은 미국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미국정부 관할 지역의 사무소 또는 정부기관 등에서 일하는 자국민을 포함해 외국인, 현지 외국인들에게도 해당 시설에 대한 테러행위로 인해 신체피해를 입었거나 사망했다면 이들에게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연방정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몇몇 주는 주정부 차원에서 테러피해자들에게도 피해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은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포함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가족, 피해자의 친인척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이라도 미국 내에서 범죄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받으려면 범죄가 발생한 지역 내 피해자보상기관에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기관은 피해자가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인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및 실제 경제적 손실 발생 여부와 규모를 심사한다. 신청인이 기관이 내린 보상지원신청 기각 또는 보상금 삭감 결정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가 각 주에서 운영하는 범죄피해자지원 프로그램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

101) 연방 반테러 긴급준비금에 관한 내용은 범죄피해자국 홈페이지(<https://ovc.ojp.gov/program/antiterrorism-and-emergency-assistance-program-aeap/overview> 2021.12.5. 최종접속)을 참조.

금 상한액은 일반적으로 25,000USD이다.

미국 내 모든 주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치료비, 정신과치료 및 심리상담 비용, 범죄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피해자의 임금 및 급여 손실, 피부양자 부양지원, 장례비를 공통으로 제공하고 있다. 일부 주는 이에 더해 치료를 위해 오가는 교통비 등 여비,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에 했던 업무대체 지원, 범죄현장 청소, 이사비용, 보철장치 및 안경 등 꼭 필요한 의료보조기기 지원, 재활치료비용, 변호인 선임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나. 미국의 범죄피해자기금

긴급 재정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또는 비상 피해자보상처리 절차도 두고 있다. 미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요 재정은 범죄피해자기금(Crime Victims Fund, CVF)¹⁰²⁾으로 기금은 벌금, 과태로, 추징금, 몰수한 보석금을 포함해 검찰, 법원, 교정국 등이 징수한 특별과징금 등으로 구성된다. 범죄피해자기금은 또한 시민들의 기부금도 받는다. 범죄피해자기금 중 약 1천만 달러는 아동학대 사건 수사 및 기소에 사용된다. 남은 기금 중 약 48.5%는 미국 법무부 범죄피해자국(Office for Victims of Crime, OVC)를 통해 주차원에서 운영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재정으로 지원되고 있다. 범죄피해자국은 범죄피해자기금(CVF)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받아 자격요건을 갖춘 범죄피해자 보상 프로그램에 제공한다. 각 주에서 회계연도 기간 동안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보상금의 약 75%가 이 기금을 통해 충당된다.

2. 국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가. 국외 범죄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미국은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자국민 피해자들 지원업무는 미국 정부기관인 국외미국시민서비스국(Office of Overseas Citizens Services)¹⁰³⁾, 국제테러피해자비

102) 미 법무부 산하 Office of Justice Programs 홈페이지(<https://ovc.ojp.gov/sites/g/files/xyckuh226/files/pubs/crimevictimsfundfs/index.html>) 2021.12.5. 최종접속) 참조.

103) Office of Overseas Citizens Services는 미 국무부 영사국(Bureau of Consular Affairs)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international-travel/emergencies/emergency-financial-assistance.html#:~:text=The%20U.S.%20Depa>

용보상프로그램(International Terrorism Victim Expense Reimbursement Program, ITVERP)¹⁰⁴⁾, 범죄피해자재결합프로그램(Victim Reunification Travel Program)¹⁰⁵⁾에서 담당하고 있다.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성격과 제공하는 지원의 내용이 상이하다.

먼저, 국외미국시민서비스국은 국외 여행 중 또는 업무나 기타 이유로 국외에 거주하는 동안 범죄피해를 입은 자국민을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국의 직원들은 영사관, 대사관 등에서 비상긴급 지원을 위해 24/7 상주한다. 피해자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긴급재정지원, 여행관련 서류 재발급,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사건처리에 관한 정보 업데이트, 변호사 및 해당국의 법률과 절차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서면 동의를 받아 가족, 지인 또는 고용주에게 피해사실을 전달해주고, 미국으로의 귀국도 지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범죄를 조사하거나, 법적 조언을 제공하거나, 법정에서 귀하를 대리하거나, 공식 통역사 또는 번역가로 일하거나, 귀하를 위해 법률, 의료 또는 기타 비용을 대신 지불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국제테러피해자비용보상프로그램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프로그램은 미국 밖에 있는 동안 국제 테러 행위로 직접적인 범죄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서적 피해를 입은 자격을 갖춘 미국 시민 및 미국 정부기관 직원에게 재정지원 및 배상을 제공한다.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국외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의 피해자,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정부기관 직원, 테러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일반적으로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시 보상을 원하는 비용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영수증 원본이 없는 경우 원본 영수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지출명세서와 신청서에 첨부한 지출명세서와 기재된 내용이 신청인이 아는 한 사실이고 정확함 증명할 수 있는 명세서 항목을 제출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테러피해자들은 치료비,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비, 재산손실 및 복귀비용, 장례비 등을 포함해 다양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다. 의료비(치과 및 재활 비용 포함)는 최대 50,000USD, 정신 건강(특정 가족 구성원/미성년자뿐만 아니라

rtment%20of%20State's, who%20are%20temporarily%20destitute%20abroad. 2021.12.5. 최종 접속) 참조.

104) 미 법무부, "Privacy Impact Assessment for the International Terrorism Victim Expenses Reimbursement Program -Web Application), 2019.4.18. 참조.

105) 범죄피해자국(OVC) 홈페이지(<https://ovc.ojp.gov/funding/awards/2020-v4-gx-k001> 2021.12.5. 최종접속) 참조.

장애판정을 받은 피해자, 사망 피해자의 유가족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 및 미성년자 포함)에 관한 비용은 최대 12개월 동안 최대 5,000USD, 재산 손실, 수리 또는 교체(예: 범죄현장 청소 및 분실이나 파손되었거나 또는 증거로 보관 중인 개인재산 대체)는 최대 10,000USD, 장례비는 최대 25,000USD, 기타 비용(예: 임시 숙박, 지역이동을 위한 교통비, 통신비, 긴급교통비)은 최대 15,000USD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법적 비용, 임금상실 또는 부양비, 위자료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재결합프로그램은 범죄피해자국(OVC)과 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의 지원을 받아 국제아동 탈취 사건의 경우 아이를 잃은 부모들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미국도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자국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등을 별도의 법률 또는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 권리 및 보상법’, ‘범죄피해자 권리법’을 적용해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나. 정부기관의 국외 범죄피해자 지원

미국 내 일부 도시와 지역사회는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자국민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성범죄피해 상담, 폭행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쉼터 및 상담 프로그램, 살인 피해자 가족지원 및 유족 상담, 아동학대피해자 진단 및 치료 프로그램,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내 모든 주가 국내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외에서 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일부 주에서만 제한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각 주의 범죄피해자 보상 프로그램 및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는 미국 범죄피해자보상위원회(National Association of Crime Victim Compensation Board)¹⁰⁶⁾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외 범죄피해자의 경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국가, 범죄 유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지원과 연락기관이 달라진다. 방문하는 국가에서 범죄피해 발생 시 이용할

106) 범죄피해자보상위원회 활동, 지원내용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nacvcb.org/> 2021.12.5. 최종접속) 참조.

수 있는 지원과 자원에 대한 정보는 각국에 대한 국가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장 가까운 미국 대사관, 총영사관 또는 미 국무부 재외국민서비스국으로 연락해야 하고 재외국민을 위한 공관은 연중무휴로 운영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하면 피해자는 낯선 환경에서 현지 언어나 관습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에 대응해 나가는데 있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무부, 법무부, FBI의 범죄피해자서비스국(Victim Services Division), 검찰청이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국무부 산하 영사국

국무부 산하 영사국(Bureau of Consular Affairs)는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자국민을 지원한다. 여권 분실 또는 도난 시 여권 재발급, 동의¹⁰⁷⁾를 받아 가족, 친구 또는 고용주에게 연락,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긴급 상황 해결, 범죄피해자의 귀국 지원, 현지의 법률 및 사법절차 등에 대한 정보 및 담당자 관련 정보 제공, 해당사건의 처리 및 절차 진행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재외공관은 또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변호사 리스트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지만 범죄수사의뢰, 변호사 선임, 통역사 또는 번역사 고용 등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다.

2) 연방수사국의 범죄피해자서비스국

연방수사국의 범죄피해자서비스국(Victim Services Division)¹⁰⁸⁾은 범죄가 발생한 직후 피해자를 면담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필요에 따라 의무후송, 부검, 사망확인서 확인, 위기개입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 범죄피해자서비스국은 범죄피해자가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연방, 주정부 및 지역차원에서 제공하는 피해자 지원을 확인하고, 사건처리 및 피해자지원 처리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107) 이 동의는 '1974년 개인정보 보호법'(the Privacy Act of 1974)에 따라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08) 연방수사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은 FBI 홈페이지(<https://www.fbi.gov/file-repository/fbi-victim-assistance-program.pdf/view> 2021.12.5. 최종접속) 참조.

고, 수사담당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질문에 응대하고 사건이 처리 과정 등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한다.

3) 검찰청

미국 검찰청은 범죄피해자와 관련해 국내에서 소송이 진행될 때에만 지원을 제공한다. 검찰은 재판절차 및 사건진행 경과 정보, 상담·의료·그 외 사회 서비스 연계, 법원 동행, 아동 피해자·고령자·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특별 서비스, 범죄피해자 보상 청구 지원, 피해자 영향 진술 작성 지원, 법원 절차 전반에 걸친 피해자 지원, 배상 문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4) 법무부 국외테러피해자 지원

법무부의 국외테러피해자를 위한 사법국(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for Victims of Overseas Terrorism, DOJ/OVT)¹⁰⁹⁾는 테러피해자가 테러발생 후 처리에 관한 정보를 얻고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한다. DOJ/OVT는 테러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이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암호로 보호된 웹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다. 테러피해자에게 암호화로 보호되는 웹사이트를 이용한 정보 제공이 국제적으로도 유용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각 기관이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는 상세하게는 실질적 지원, 전문의료치료지원, 전문심리치료 및 정보제공으로 나눌 수 있다. 범죄피해자의 이러한 지원 요구는 범죄 발생 즉시 시작되기 때문에 이들 지원 중 상당부분이 자연스럽게 긴급 요구 사항과 겹친다.

미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는 실질적인 지원이나 정보 제공과 관련이 있다. 유일한 의료지원 항목도 직접적인 치료나 상담지원이 아닌 의료 및 후송 등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국한된다. 심리적 지원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연계는 미국 법무부에서만 제공하고 있고 또한 특정 피해자와 관련해 국내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109) 미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자세한 활동, 권한 등 자세한 내용은 브로셔(<https://www.justice.gov/nsd-ovt/page/file/1091736/download> 2021.12.5. 최종접속) 참조.

다. 지원 근거 - 헌법

미국 헌법은 시민과 시민권자가 아닌 자의 권리를 구분한다. 투표에 있어 인종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연방 공직선거에 출마할 권리는 명시적으로 시민에게만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그 외 권리는 시민권자와 시민권자가 아닌 자에 대한 구별 없이 적용된다. 수정헌법 제5조와 제14조 적법 절차 및 평등한 보호는 모든 "사람"에게 된다. 수정헌법 제1조는 연설과 언론을 통해 생각을 표현하고, 시위를 하거나 다른 이유로 함께 모일 수 있는 집회의 자유, 정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권리 등 일부 권리에 있어서는 만인에 평등하게 적용된다. 미국 헌법은 종교적 신념과 관습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지만 정부가 종교를 만들거나 특정 종교를 선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제3절 | 독일

1.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일반

가. 근거법률

독일에서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핵심 법률은 '폭력 범죄피해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OEG, 이하 피해자 보상법)'이다. 이는 2차 세계대전이후 전쟁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적 도움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일 연방부조법(Bundesversorgungsgesetz)을 근거로 제정된 법률이다. 연방 부조법이 전쟁을 통해 직접 부상을 입은 군인, 장애인, 그 가족들에 대한 피해 측정 및 치료 그리고 일상생활을 위한 사회적 도움(일자리 주선, 연금 등)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면, 피해자 보상법은 폭력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폭력범죄피해자도 전쟁피해자처럼 국가가 그 예방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국가의 도움이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연방 부조법과 마찬가지로 각 주의 재량이 아니라,

모든 주에서 효력이 인정되는 연방법률 형태로 1976년 5월 11일 제정되어, 1976년 5월 16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¹¹⁰⁾ 독일연방부조법과 피해자보상법 모두 현재는 각각 독립된 법률형태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사회보장과 관련되므로 독일 사회법 제68조에 따라 사회법전(Sozialgesetzbuch)의 특별한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규정형태가 복잡함을 야기한다는 비판에 따라 2019년 12월 법률 개정을 통해 실제로 2024년 1월1일부터는 사회법전 제14장으로 편입되는 것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2024년 1월1일부터는 폭력 범죄피해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OEG.)은 삭제되고, 그 내용은 사회법전 제14장에서 규정하게 된다.¹¹¹⁾

나. 주요 내용

1) 법률의 목적과 헌법적 근거

독일의 피해자 보상법은, 국가가 사회질서를 위한 공권력의 주체자이기 때문에, 범죄예방과 관련해서도 국민을 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진다는 기본사상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전쟁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폭력범죄로부터 시민을 지키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지고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보상을 한다는 귀결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법률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요구하는 완전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위자료와 동일한 성격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범죄로 인해 피해자, 가족, 피부양자 등의 사회적인 몰락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피해자 보상법은 사회보장의 핵심법률인 연방부조법과 결부되어 운영되며 어디까지나 독일의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기본사상은 1979년 11월 7일 연방 사회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¹¹²⁾ 연방 사회법원은 독일 기본법

110) 이 법률의 입법연혁을 보면 1985년 1월 7일 전면 개정되었고, 최근인 2021년 6월2일 부분 개정되었다. 독일 피해자 보상법률의 변경의 자세한 역사와 내용에 대한 정리는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Hrsg.),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Broschüre), Stand: Februar 2019 4쪽 참조.

111)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는 Art. 58 Nr. 15, Art. 60 Abs. 7 des Gesetzes zur Regelung des Sozialen Entschädigungsrechts vom 12. Dezember 2019, BGBl. 2652쪽 참조.

112) BSG, Urteil vom 7. November 1979, Az. 9 RVg 2/78; BVBl. 6/1980, 1쪽.

제20조 제1항은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 사회적 연방국가임을 규정하고 있고, 이로 부터 국가의 시민에 대한 사회보장의무를 도출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폭력 범죄를 통해 생활영위능력을 상실하고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는 이러한 시민을 보호해야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렇게 독일의 피해자보상법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므로, 이미 다른 사회보장제도법률을 통해 일정 부분 보상을 받고 있다면, 피해자 보상법에 의해 중복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며, 단지 보완적 성격을 가지는 보상만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범죄로 인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치료비용은 이미 의료보험체계에서 전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보상법에서 치료비용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해도 이는 사실상 중복되는 것이다.

2) 개관

피해자보상법은 현재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되어 있고, 제1조는 국가에 대한 급부청구권, 제2조는 거절사유(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을 규정), 제3조는 보상과 관련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a는 외국에서 일어난 범죄피해에 대한 보상규정, 제4조는 비용부담의 주체, 제5조는 법률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제6조 관할권과 절차, 제6조a 연방 노동사회부의 관할권한, 제7조 법적 소송, 제8조, 제9조(삭제되어 현재 존재안함), 제10조 경과규칙(시간적 범위), 제10조a 가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보상에 관한 규정(Härteregelung)¹¹³, 제10조b 삭제됨, 제10c, 제10조d 경과규정, 제11조 효력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3) 청구조건

피해자 보상법 제1조는 청구권의 기본 내용을 담고 있는 조문으로 피해자보상법의 뼈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조문이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보상의 권리가 있는 자는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자인데, 이때 범죄는 모든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113) 이는 범죄피해로 심각한 불이익을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법률 개정이 발생하기 이전의 사건들에게도 최소한의 보상가능성을 제공하는 규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상규정(Härteregelung)을 두어 법률 개정 전에 발생한 사건들도 피해자보상의 대상이 되지만, 그 범위와 액수는 제한된다.

일어나고, 위법하며, 폭력적인 공격으로 행해진 범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범죄로 인한 피해이어야만 피해자 보상법의 대상이 된다.

(1) 고의 범죄

고의범죄라 함은 범죄행위자가 본인의 폭력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거나 의도적으로 행한 것을 의미한다. 이때의 고의의 정도는 미필적 고의(Bedingter Vorsatz)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¹¹⁴⁾ 그리고 고의는 신체의 침해로부터 야기되는 결과까지를 알거나 의도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예를 들어 다리에 총을 쏜 경우, 그 결과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나 의도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고의는 인정된다. 또한 고의는 행위자의 측면에서 위법성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어도 성립한다.¹¹⁵⁾

(2) 위법한 범죄

위법한 범죄라 함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침해적 공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정당방위나 정당화적 긴급피난 등과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공격을 제외한 모든 침해적 공격은 위법성이 있다고 간주된다.

(3) 물리적 폭력행위

물리적 폭력행위는 적대적인 의사를 통해 타인의 신체에 영향을 가하는 모든 작용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격적인 행위가 발생해야 하는데,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전통적인 폭력범, 일반적인 성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침해행위 등이 이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예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반드시 발생해야 폭력적인 공격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보상법 제1조 2항은 고의로 독극물을 첨가하여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당연히 폭력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보상법 제1조 2항은 예외적으로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발생한 것이더라도, 방화나 폭발물 공격 등 공공의 안전에 해를 가할 위험한 수단을 가지고 행해진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한 행위는 폭력적인 공격행위에

114) BSG, 4. Februar 1998, AZ B 9 VG 5/96 R.

115) BSG, 10. September 1997, AZ 9 RVg 9/95.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의 과연 어떠한 경우가 폭력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고, 판례의 해석과 판단에 달려 있다. 대표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판례는 유기죄, 감금죄와 같이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범죄행위도 그러한 범죄가 신체적 폭력을 수반하여 이루어지고,¹¹⁶⁾ 이를 통해 강제상황으로부터 탈출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은 경우(예를 들어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하는 경우) 폭력적인 공격으로 인한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¹¹⁷⁾ 그러나 폭력을 수반한 단순한 협박이나 도로에 있는 하수구 뚜껑을 열어 놓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위험상황의 창설만으로는 폭력적인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¹¹⁸⁾ 또한 판례에 따르면 총탄을 장전하고 안전장치를 푼 총기로 위협을 가한 경우에도 피해자보상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고,¹¹⁹⁾ 스토킹 행위도 그 자체로는 공격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보상법에서 요구하는 실제의 공격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체를 향한 직접적인 폭력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¹²⁰⁾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한 침해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공격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의사의 의료행위가 어떻게 보더라도 전혀 환자의 이익에 상응하지 않고, 의사가 의료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공격적인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¹²¹⁾

(4) 재산범죄가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

독일에서는 재산범죄의 경우는 피해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배경에는 아무리 국가라고 하더라도 시민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임무는 없다는 기본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 물론 독일에서는 자기책임 없이 곤궁에 빠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이 사회적 정의라는 생각이 사회전반에 걸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재산범죄를 입은 피해자가 그로 인해 신체와 정신이 큰 해를 입어 혼자의

116) BSG, 24. September 1992, AZ 9a RVg 5/91.

117) BSG, 30. November 2006, AZ B 9a VG 4/05 R.

118) BSG, 10. Dezember 2003, AZ B 9 VG 3/02 R.

119) BSG, 16. Dezember 2014, Az. B 9 V 1/13 R.

120) BSG, 7. April 2011, Az. B 9 VG 2/10 R.

121) BSG, 29. April 2010, AZ B 9 VG 1/09 R.

힘으로 미래의 삶을 영위하기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가 부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두고 있다.¹²²⁾

4) 청구 주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피해를 직접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될 수 있다. 물론 모든 제3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특정한 조건을 충족한 제3자이어야 한다. 제3자가 청구권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를 인지 혹은 목격하고 이러한 충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생한 범죄행위와 현재 당사자가 겪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겪고 있는 고통이 해당 범죄로 인해 발생된 것이 증명되어야 하며, 이러한 범죄소식을 통해 직접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 혹은 인적위치에 놓여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판례는 범행현장에서 범행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나, 피해자의 배우자는 이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¹²³⁾

5) 청구 거절 사유

피해보상의 요구가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보상법 제2조는 보상거절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나 다른 이유로 보상을 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이 가운데 보상을 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피해자 혹은 신청인이 그들의 고국에서 정치적 갈등, 내전과 무력충돌, 조직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그들이 입은 피해가 그러한 활동으로부터 야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이다(제2조 제1항). 또한 범죄피해자가 사실관계를 밝혀서 범죄 행위자를 기소하는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특히 수사권이 있는 해당관청에 형사소추를 위해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이 거절될 수 있다(제2조 제2항).

이외에 문제가 되는 특수한 상황으로는, 피해자를 돌보고 보상해야 할 의무가 행위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경우와 자동차를 수단으로 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를 들

122)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Hrsg.),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Broschüre), Stand: Februar 2019, 8쪽.

123) BSG, 12. Juni 2003, AZ B 9 VG 1/02 R.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주로 아이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 아동의 피해자 보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한 공격의 경우, 피해자 보상법 제1조 제11항에서는 이러한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의무보험법률(Pflichtversicherungsgesetz)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사고로부터의 피해를 위한 펀드가 마련되어 있고, 이에 따른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6) 피해의 정도 측정

피해자 보상법에서 말하는 피해의 정도는 독일 연방부조법(Bundesversorgungsgesetz - BVG)을 준용한다. 독일 연방부조법 제30조 제1항은 피해의 등급을 10부터 100까지의 총10단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당범죄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온전성의 기능이 어느 정도로 침해가 되었는지를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침해는 범죄로부터의 피해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일반적인 재해나 사고로 인해 정부가 사회적 부조를 행하는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가 측정된다. 중요한 것은 신체의 기능이 얼마나 궁극적으로 훼손되었는지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신체의 기능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피해보상의 고려대상이 아니게 된다. 여기서 일시적이라 함은 최대 6개월까지를 지켜보고 이후 증상이 다른 재발 가능성 없이 완치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러한 궁극적 장애판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보상과는 별도로 이러한 일시적인 피해에 대한 치료비의 요구는 연방부조법 제10조 제1항과 결부된 피해자보상법 제1조에 의해 당연히 인정된다.

7) 지원의 범위 및 내용¹²⁴⁾

(1) 피해자에 대한 지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독일 연방부조법(Bundesversorgungsgesetz)에 의해 결정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4)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Hrsg.),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Broschüre), Stand: Februar 2019, 16쪽 이하.

a. 치료행위에 대한 지원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그리고 일반적인 치료 및 치과치료를 포함한 치료과정에 대한 모든 비용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응급치료 비용, 치료과정에서 제공되는 의약품, 복용해야 하는 약 제품, 보조식품 지원 비용 등도 제공된다. 비용제공은 예를 들어 총 비용의 50%만 제공한다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부분적인 액수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의료비용은 피해자가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보험회사에게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국가에게 해당비용을 청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직접 목돈을 마련해 선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b. 재활 및 특수물품 구비비용지원

피해자가 피해에서 회복하여 퇴원한 후에도 완전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하는 비용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장애를 입어 재활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용 이외에도 관련 생활 및 재활을 위한 특수 물품(의족이나 의수, 틀니, 휠체어, 목발, 재활운동기구)등을 구비하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의 장애상태에 따라 브레이크를 발이 아닌 손으로 하는 방식을 선택하거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조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비용을 보조한다.

c. 수중 재활치료지원

독일에서는 재활치료 방법으로 수영장이나 온천에서 물속에서 하는 재활프로그램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을 모두 지원한다.

d. 가정 도우미 직원과 간병인 비용 지원

피해회복과정에서 가정일 도우미와 간병인이 필요로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비용을 지원한다.

e. 병가 급여(Krankgeld)

범죄로 인해 발생한 질병 등으로 인해 노동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평상시에 받는 세후 소득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 독일에서는 고용주가 대부분 독일 공보험회사들에 가입을 하고 있고, 이러한 비용은 공보험회사에서 제공한다.

f. 최저연금(Grundrente)

최저연금이란 독일 연금수혜자들 가운데 연금액수가 평균보다 적은 사람들에게 대한 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는 연금을 의미한다. 주로 여성과 동독지역의 시민들에게 많이 적용되고 있다. 범죄피해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기초연금은 제공될 여지가 있다. 피해자가 연금이 개시된 경우, 연금액수가 평균보다 적다면 기초연금이 제공되는데, 구체적인 기초연금의 액수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 피해의 정도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독일 연방부조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10부터 100까지의 총10단계로 등급이 나누어진다. 3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달146유로가 지급되고, 100에 해당하는 경우, 760유로가 지급된다.

g. 보상연금(Ausgleichrente)

보상연금은 피해자의 소득이 특정한 정도(2.724유로)에 미치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범죄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입고, 소득이 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자격이 된다. 중한 피해는 연방부조법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최소 5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피해가 50~60인 경우, 482유로가 지급되고, 70~80인 경우 583유로, 90인 경우 700유로, 100인 경우 784유로가 지원된다.

h. 직업보상연금(Berufsschadensausgleich)

직업보상연금은 범죄의 피해에 따라 이전보다 소득이 감소된 경우, 손실의 최대 42.5%까지 보전해준다.

i. 경제적 궁핍자에 대한 생계 지원금(Beihilfe)

생계 지원금은 여러 가지 보조금의 한 형태로 범죄로 인한 질병 등으로, 아예 생계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매일 최대 36유로까지 지원하다.

j. 특별히 중한 신체적 장애에 대한 연금보조금(Schwerstbeschädigtenzulage)

매우 심한 장애로 인해 신체장애정도 최고등급인 100에 해당하고 기본연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이를 보조하기 위한 연금보조금이 지불된다.

k. 장례비용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2) 유족들에 대한 지원¹²⁵⁾

독일에서는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에 대한 피해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범죄피해자가 1976년 5월 15일 이후,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경우, 남겨진 배우자에게는 피해자가 생전에 받았던 소득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금이 지급된다. 또한 반드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더라도, 범죄로 인한 중대한 침해로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완전한 연금은 아니지만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최소한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때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인 동거파트너도 포함된다. 피해자의 미성년자녀의 경우, 법적 성년인 18세가 되기 전까지 교육, 치료, 경제적 부분 등 모든 부분에 관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대학교육이나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27세까지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학업이나 직업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교육비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일정부분 지원이 된다. 피해자의 부모의 경우도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는데, 이때의 조건은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사망하고, 피해자의 부모의 경제적 소득이 특정금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부모가 60세가 넘거나 직업을 가져서 경제활동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부모모두를 대상으로는 618유로의 연금이 제공되고, 부모 가운데 한명만 생존해 있을 경우에는 413유로가 제공된다. 물론 이러한 연금제공과는 별도로 자녀의 죽음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의 참여도 보장된다.

125)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Hrsg.),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Broschüre), Stand: Februar 2019, 19-21쪽.

(3) 지원이 되지 않는 영역¹²⁶⁾

범죄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한 정신적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나 유가족이 청구해야 한다. 또한 범죄로 인한 재산적인 침해에 대한 보상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범죄로 인한 신체의 직접적인 피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재산적인 부분이라도 신체와 연결되어 있어 신체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인정된다. 예를 들어 안경, 렌즈, 의치 등의 파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인정된다.

8)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

피해자 보상법과 독일연방 부조법은 원칙적으로 독일에서 적법하게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임산부의 태아도 포함)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독일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지원범위가 다르다. 우선 다음의 5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독일국민과 완전히 동일한 정도의 피해보상지원을 받는다.¹²⁷⁾

첫째, 유럽연합가입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시민, 둘째,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독일인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을 요구하는 유럽연합의 법규에 해당하는 국가의 시민, 셋째, 피해자의 법적보호와 관련해 동등처우에 대한 독일과 상호협약을 맺은 국가들의 시민, 넷째, 호혜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즉, 독일과 특별한 협약을 맺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국가의 법률이 그 나라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와 관련하여 독일인에 대해 독일에서 보장하는 내용과 같거나 그 이상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 그 국가의 시민, 다섯째, 국적을 불문하고 독일에서 적법하게 최소 3년 이상의 거주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¹²⁸⁾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 범죄피해자라도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독일국민과 동일한 정도의 피해보상 지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일정

126)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독일 연방사회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bmas.de/DE/Soziales/Soziale-Entschaedigung/Opferentschaedigungsrecht/opferentschaedigungsrecht-art.html> 2021.12.5. 최종접속) 참조.

127) 독일 피해자 보상법 제1조 제4항, 제5항.

128) 이는 원래는 인정되지 않았다가 2016년 베를린 테러사건에 의해 야기된 법률개정을 통해 2018년 7월 1일부터 바뀐 규정이다.

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체류기간이 3년이 되지 않은 외국인

독일에서 체류허가증을 받아 적법하게 거주하고는 있지만 그 기간이 3년이 되지 못한 외국인 피해자는 본인의 평소 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원(einkommensunabhängige Leistungen)을 받는다.¹²⁹⁾ 소득과 관련 있는 지원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병가급여, 최저연금, 보상연금, 직업보상연금처럼 기존의 소득을 전제로 평가되어 제공되는 것들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소득과 관련 없는 지원은 이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치료비용, 재활 비용, 간병인 비용, 장례비용, 특별히 중한 신체적 장애에 대한 연금보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소득과 무관한 지원은 3년 이하의 체류자들 가운데, 출장, 기타 개인적인 업무로 평상시에 독일에 지속적으로 체류하고 있지는 않았더라도, 범죄피해 당시에 독일에 살고 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국인 가족이 독일에 와서 체류허가증을 받고 2년째 거주하면서, 개인 업무 때문에 한 달에도 몇 번씩 한국을 방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독일에서의 범행당시 거주하는 주거지가 독일에 있고, 해당 관청에 거주등록을 해 놓은 상황이라면 똑같이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6개월 미만 기간의 단순 방문객이나 여행자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나라에서 출장 등으로 독일을 단순히 방문하게 된 방문객이나 여행자는 원칙적으로 90일까지 체류 허가증(비자)없이 독일에 머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독일에 머물 수 있다. 이들에게는 범죄피해를 통해 중대한 신체적 침해가 존재한 경우에 한하여, 치료비용이 제공된다. 또한 앞으로 일상에서 발생할 경제적 불이익과 관련해서도 약간의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독일 시민 및 특정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과 다른 점은, 단지 1회성 형태의 보상금만이 지원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6개월 미만 기간의 단순 방문객이나 여행자도 예외적으로 독일시민 또는 독일에 적법하게 최소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3촌 이내의 친족 관계, 혹은 법률혼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이 되지 않은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관련 없는 지원은 모두 받을 수 있다.

129) 독일 피해자 보상법 제1조 제5항.

9) 신청 방법과 신청기한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해야만 심사를 통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인터넷으로 다운받을 수 있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담당하는 각주의 사회복지청(Versorgungsamt)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단순 방문객이나 여행자처럼 독일에서 범죄를 당해 피해를 입었지만, 독일 내에 주거지가 없는 경우, 범죄가 발생했던 곳을 관할하는 사회복지청에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 신청서의 양식은 각주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연방차원에서 통일된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당사자가 아닌 유족들의 피해지원과 관련해서는 통일적인 신청서 양식은 존재하지 않고, 자유양식 혹은 경우에 따라 각 담당관청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신청기한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기준이 없다. 즉 특정 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 권한이 소멸된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고,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게 해 놓았다.

10) 피해보상 신청건수 및 기각비율

독일에서 가장 큰 범죄피해자 지원단체인 ‘바이서 링’이라는 곳에서 발간하는 피해자 통계를 보면 과거에 비해 최근 신청의 대상이 되는 폭력범죄 수는 줄어들고 있고, 피해자 지원 신청의 기각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³⁰⁾ 예를 들어 2008년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독일에서 약 210,000건의 폭력범죄가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10.5%만 피해자 보상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신청서가 작성된 사람들 가운데 44%는 기각되었다. 주별로 보면 기각률은 라인란트 팔츠주는 30%, 바이에른주는 33%로 가장 적게 나타났고, 자알란트주 64%, 베를린주가 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2019년의 통계를 보면 2019년에는 181,054건의 폭력범죄가 발생하여서 발생건수는 약간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가운데 약 10% 18,451명이 피해자 보상을 신청하였는데, 7,749명의 신청은 결과적으로 기각되었다. 따라서 기각비율은 2008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30) 바이서 링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는 피해자 보상법과 관련해 매년 발생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10월 30일 확인결과 2008년부터 2019년까지의 통계가 제공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바이서 링 홈페이지(<https://weisser-ring.de/media-news/publikationen/statistiken-zur-staatlichen-opferentschaedigung> 2021.12.5. 최종접속) 참조.

11) 법률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 바뀌는 내용

피해자 보상법과 연방부조법은 최근 변화가 있었다. 2019년 12월 법률개정을 통해 2024년 1월1일부터는 각각의 독립된 법률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법전 제14장으로 편입되는 것이 확정되었고, 이러한 형식의 변화와 더불어 법률 내용과 관련해서도 그 보장이 보다 강화되는 변화가 있었다. 2024년부터 변화되는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³¹⁾

(1) 인적 범위의 확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력범죄의 피해자도 피해지원의 대상이 된다. 이는 특히 성범죄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된 것인데, 성범죄의 경우 반드시 공격적인 폭력행위를 통해 신체적 침해를 입지 않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도 폭력범죄에 해당하여 사회보상법(Soziales Entschädigungsrecht)의 지원대상이 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범죄를 통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간접적 피해자의 범위도 확대하였다. 기존의 법률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3자도 피해보상의 주체가 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었지만, 당사자가 겪고 있는 고통이 해당 범죄로 인해 발생된 것이 증명되어야 하며, 이러한 범죄소식을 통해 직접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 혹은 인적위치에 놓여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바뀐 법률은 제3자가 피해자와 반드시 정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지 않더라도 범행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다면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2) 물적 지원범위의 확대

현재 각각의 지원금 형태에 따라 산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경제적 보상이 매달 한꺼번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고 그 액수도 상승한다. 또한 바뀐 법률은 경제적 보상을 매달 나누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일시불의 지불은 의무규정은 아니어서, 매달 일정액을

131) 이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은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soziales-entschaedigungsrecht-1640562> 2021.12.5. 최종접속), 독일 연방사회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bmas.de/DE/Service/Presse/Meldungen/2020/neue-gesetze-soziales-entschaedigungsrecht.html?jsessionid=DBCDA9307242AECF8CF9120D29625E9C.delivery1-replication> 2021.12.5. 최종접속) 참조.

나누어 지원받을지, 아니면 일시불로 받을지는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또한 현재 존재하고 있는 피해자의 국적과 체류상태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체계도 변화되어 폭력범죄의 피해자라면 국적과 체류상태와 상관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장애인이 된 경우, 보다 더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한다. 현재도 장애인이 사회생활에 참여하기 위한 보조금(Teilhabeleistung)을 지원하는데 이를 더 강화해 기본적으로는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사회생활 참여급부를 제공한다.

(3)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

관련자는 보다 빨라진 절차를 통해 긴급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범죄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로, 이에 대해서는 2021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절차를 통한 지원이 아닌 긴급지원(Soforthilfe)형태로 제공된다. 또한 사례별로 유형화를 시켜 관리하는 방법을 통해 신청절차와 심사절차에서 보다 빠른 지원을 제공한다.

(4)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성범죄피해자에게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과관계의 심사를 대폭 완화하고, 아동 포르노그래피 범죄도 피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단순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침해의 경우,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가 생긴 것인지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어리거나 외부적인 특별한 침해가 없을 경우, 이러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개정 법률에서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범죄에는 피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포르노그래피와 관련된 모든 행위들도 새로운 보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성범죄와 관련된 피해보상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5) 테러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이는 2016년 베를린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축제가 한창이던 12월 19일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타인의 자동차를 훔쳐 타고 시민들을 향해 돌진하며 총을 쏘며 테러를 자행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12명이 사망하고 48명이 부상을 당하였다.¹³²⁾ 이 가운데는 독일 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피해자도 있었다. 피해자 및 남은 유가족에 대한 피해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독일정부는 2019년 피해보상법과 연방부조법을 개정하였고, 이러한 개정 내용은 2018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범죄사고로 생명을 잃었을 경우, 피해자의 남겨진 자녀들에 대한 연금(Waisenrente)과 장례비용(Bestattungsgeld)이 인상되었으며, 유해를 처리하고 옮기는 이송 비용에 대한 급부청구권이 인정되었다. 또한 적법한 체류허가(3년 이상)를 가진 외국인에게는 독일인과 똑같은 피해자 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다. 실무상 지원 기관 및 관련체계

독일에서의 피해자 지원은 기본적으로 연방 정부, 주 정부, 민간단체들 이렇게 크게 3개의 단체들의 상호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1) 연방 정부

여러 가지 정부 부처들 가운데, 피해자 지원 및 보상을 담당하는 부처들은 연방노동사회부(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연방법무부(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Jugend), 연방내무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등이다. 이 가운데 일반적인 폭력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주로 담당하는 곳은 연방노동사회부이다. 연방노동사회부는 독일내부에서 피해자 보상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러한 지원 상황을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알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연방노동사회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떠한 경우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132)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보도는 BBC 2016.12.24., "Berlin lorry attack: What we know"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38377428> 2021.12.5. 최종접속) 참조.

있고, 피해보상이 거부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어디에 어떻게 이를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연방노동사회부는 전국에 존재하는 피해 자지원서비스 조사와 같은 몇몇의 시범사업, 워크숍 또는 연구에 자금을 지원한다.¹³³⁾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주로 (여성)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활동을 한다. 이들을 위해 안내책자를 발행하고, 가정폭력 피해방지와 관련된 여러 연구 프로젝트 등도 지원, 운영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반(反) 인신매매 및 이주여성폭력 협회'(Bundesweiter Koordinierungskreis gegen Frauenhandel und Gewalt an Frauen im Migrationsprozess), '전국 여성상담소 및 여성긴급전화 연합'(Bundesverbandes der Frauenberatungsstellen und Frauennotrufe), '여성보호시설 협회'(Frauenhauskoordinierung)에 자금도 지원하고 있다.¹³⁴⁾

연방법무부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피해자 안내서에 대한 책자들을 발행하고, 베를린대학 및 범죄피해자지원협회(Arbeitskreis der Opferhilfen)로 구성된 '피해자지원 업무담당직원을 위한 1년 연수 과정'과 같은 프로젝트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 협력한다. 또한 극우주의자에 의한 폭력피해자를 위한 긴급구호기금도 지원하고 있다.¹³⁵⁾

연방내무부는 주로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와 경찰활동을 지원한다. 이들을 연계하여 지역 네트워크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들이 민간단체나 경찰의 도움을 통해 피해를 조기에 신고하고, 심리적 상담 등의 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¹³⁶⁾

2) 주 정부

주 정부는 주요 도시에 있는 사회복지청(Versorgungsamt)을 통해 피해자의 구체적

133) FRANET, Victim Support Services in the EU: An overview and assessment of victims's rights in practice. Germany, 2014, 9-10쪽; 박상민, 범죄피해자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독일 실태 분석과 시사점, 법학연구, 20권 1호, 347쪽에서 재인용.

134) FRANET, Victim Support Services in the EU: An overview and assessment of victims's rights in practice. Germany, 2014, 9-10쪽.

135) FRANET, Victim Support Services in the EU: An overview and assessment of victims's rights in practice. Germany, 2014, 9-10쪽.

136) FRANET, Victim Support Services in the EU: An overview and assessment of victims's rights in practice. Germany, 2014, 9-10쪽.

인 지원을 돕는다. 사회복지청은 한 주의 주요 도시에 설치되어 있고, 각 주별로 많게는 30개 이상, 적게는 1개만 설치되어 있는 주도 있다.¹³⁷⁾ 이들 관청에서는 피해자가 피해자보상법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즉, 모든 피해자는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본인이 속한 주의 사회복지청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청은 상담, 직업 안내, 기타 복지제도 안내 등 범죄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범죄피해에서 회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각 주들은 연방정부와는 별개로 각 주정부의 예산에서 이러한 기금 마련을 하고 있다.

3) 민간기관

독일의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민간단체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 민간단체가 전국에 걸쳐 약 1000개 이상의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의 활동과 국가의 각종 지원제도가 상호간에 균형을 이루며 범죄자 피해활동을 돕고 있다. 이들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관련 단체를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지원에 협력한다.

연방 전체에 걸쳐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가장 유명한 단체는 ‘바이서 링’(Weisser Ring e.V.)이다. 바이서링은 1976년 독일에서 만들어진 민간단체로 피해자지원 단체들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현재 18개주의 지부를 가지고 있으며, 곳곳에 400개의 소규모 지소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일하는 인력은 2019년 현재 약 3000명의 자원봉사자와 45,000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¹³⁸⁾ 이들은 전직 경찰, 사회복지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의 업무를 주로 지원하고 있다.

첫째, 심리 상담 및 범죄 이후 정상적인 삶을 위한 대한 조언, 둘째,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의 방문과 형사처리절차에 동반, 셋째, 피해자 보상절차를 위해 관청 및 행정공무원과 연결 및 처리과정에 대한 도움. 넷째, 정부의 보상 이외에도 민간

137) 브레멘주는 그 영역이 좁은 관계로 1개만 설치되어 있다.

138) 이러한 통계 및 바이서 링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바이서 링에서 발간한 소책자인 weisser ring jahresbericht 2018/2019 참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이서 링 홈페이지(https://weisser-ring.de/system/files/domains/weisser_ring_dev/downloads/weisserringjahresbericht20182019.pdf) 2021.12.5. 최종접속) 참조.

독지거나 다른 단체의 지원에 대한 정보 전달 및 주선 다섯째, 변호사비용, 의료비 심리 상담료 등의 지원, 여섯째, 범죄로 인해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하지 못해 경제적 곤궁에 이른 경우의 경제적 지원 등.

또한 바이서 링은 이러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이외에도 범죄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범죄예방활동도 하고 있다. 범죄예방과 관련한 세미나와 강연을 개최하며, 관련 안내책자를 만들고 동영상, 포스터 등도 제작한다. 또한 범죄피해자 지원 및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학술적 연구보고서 작업에도 관여하며, 연방정부 및 주정부와 함께 범죄예방 프로젝트도 이끌고 있다. 예를 들어 콘스탄츠시의 시립인형극장과 더불어 범죄예방 인형극을 하고 진행하였으며,¹³⁹⁾ Juuuport라는 공익단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아동에 대한 성착탈대를 방지하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범죄예방활동을 하였다.¹⁴⁰⁾ 바이서링은 피해자의 완전한 손해보상과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화해를 위한 여러 프로젝트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보상법을 외부에 적극 알리고 피해자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한다. 바이서링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알게 된 피해자가 바이서링의 도움으로 피해자 보상을 신청하는 비율이 전체 신청의 약 10%에 이른다고 한다.¹⁴¹⁾ 의외로 독일에서는 이러한 법률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변호사들조차도 이러한 법률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¹⁴²⁾ 또한 범죄로부터 완전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범위를 훨씬 더 광범위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운동도 벌이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가해자가 소년범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보상과 관련한 권리가 취약하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소년가해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여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이를 통해 나타나는 피해자 권리의 제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해원상회복(Schadenswiedergutmachung)을 강조하고 있다.

139) 콘스탄츠 시립 인형극장 홈페이지(<http://www.konstanzer-puppenbuehne.de/pfoten-weg/> 2021.12.5. 최종접속)참조.

140) JUUUPORT 홈페이지(<https://www.juuuport.de/ueber-juuuport/wir-ueber-uns/kooperation-spartner/> 2021.12.5. 최종접속)참조.

141) 독일어 위키피디아 홈페이지 (https://de.wikipedia.org/wiki/Weißer_Ring 2021.12.5. 최종접속) 참조.

142) 독일어 위키피디아 홈페이지 (https://de.wikipedia.org/wiki/Weißer_Ring 2021.12.5. 최종접속) 참조.

다른 유명한 민간단체로는 ‘독일피해자 지원협회’(Arbeitskreis der Opferhilfen in Deutschland e.V.: ado)가 있다. 이 단체도 기본적으로 바이서 링과 유사한 일을 하며,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인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독일피해자 지원협회는 바이서링과 더불어 ‘피해자지원 유럽 네트워크’라는 단체에 속해 있는데,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독일 이외의 다른 국가에 있는 피해자지원 단체와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독일을 넘어 유럽 전체에서 모든 범죄피해자의 평등한 대우가 보장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¹⁴³⁾

특별히 여성과 아동을 위한 단체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여성의 집’은 폭력피해 여성의 쉼터로, 전국에 약 400여개가 있고 약 6,000명 정도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심리 상담서비스 지원은 물론 자녀를 위한 교육시설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¹⁴⁴⁾ 특히 이주여성의 경우 언어적인 측면에서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독일어와 독일 사회의 이해를 포함한 언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심리지원 등을 위해 같은 국적을 가진 이주민을 상담원으로 양성하는 데도 적극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¹⁴⁵⁾

라. 재원조달 방법 및 연방정부의 피해자 보상액 통계

피해자 보상법 제4조는 피해자보상비용의 40%는 연방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60%는 범행이 발생한 각 주정부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행이 발생한 각 주들이 이렇게 60%를 부담하는 이유는, 범죄예방의 문제는 1차적으로 각 주의 경찰 담당인데, 이들이 완전한 의무를 다하지 못해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범죄피해자가 독일 내에 주소가 없거나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보상비용을 모두 부담한다(피해자보상법 제4조 제2항).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이러한 재정비용을 모두 편성된 국가예산에서 할당받아 사용한다. 구

143) 독일피해자지원협회 홈페이지(<https://www.opferhilfen.de/aufgaben/> 2021.12.5. 최종접속)참조.

144) 독일 여성의 집 홈페이지(<https://www.frauenhauskoordinierung.de/aktuelles/> 2021.12.5. 최종접속) 참조.

145) 독일 여성의 집 홈페이지(<https://www.frauenhauskoordinierung.de/aktuelles/> 2021.12.5. 최종접속) 참조.

제적으로는 벌금 및 질서위반금 등이 주요재원이며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지불해야 하는 범죄피해자기금 같은 것은 없다. 보상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관련해서는 병원비용부담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부담한 후 이를 연방과 주가 나누어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보상법 제5조에 의해 연방이나 주는 범죄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대부분 민간 봉사자들로 인해 운영이 되고, 재정 또한 단체에 속한 회원들, 일반 민간인, 특정 재단(법인)등의 기부금 및 일정 부분의 세제혜택 등으로 운영이 된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정부로부터 매달 지원금을 받는 형태는 아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주정부나 연방정부에 신청을 하면, 재정적인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독일에서는 피해자 보상과 관련하여 그 범위와 내용을 점점 더 강화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원투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방정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연방정부 기관들 가운데 이러한 지원을 담당하는 연방사회노동부가 최근 5년간 피해자 보상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액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¹⁴⁶⁾

▶▶ [표 3-1] 독일 피해자보상법에 따른 최근 5년간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현황

	2015	2016	2017	2018	2019
연금보전 비용과 관련한 복지비용 (Versorgungsbezüge)	31.760.000 €	33.455.000 €	34.100.000 €	34.757.000 €	34.757.000 €
치료 및 재활비용 (Heil- und Krankbehandlung)	26.870.000 €	28.255.000 €	28.720.000 €	29.193.000 €	31.500.000 €
돌봄 복지비용 (Fürsorge Leistung)	11.860.000 €	13.850.000 €	18.000.000 €	21.000.000 €	24.500.000 €

이를 보면 모든 항목에 걸쳐 피해자보상법에 따른 연방정부의 지원액은 증가하고

146) 아래 표의 내용은 독일 연방재무부(Bundesfinanzministerium)가 제공하고 있는 각 연도별 연방재정예산표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독일 연방재무부 홈페이지(<https://www.bundeshaushalt.de/#/2019/soll/ausgaben/einzelplan/110363221.html>) 2021.12.5. 최종접속) 참조.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연금지원 비용은 2015년에 비해 2019년에는 약 삼백만 유로가 증가했고, 치료 및 재활 비용은 사백육십삼만 유로가 증가했다. 또한 각종 보조금을 중심으로 한 생활 돌봄 비용은 무려 천이백육십사만 유로가 증가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피해자 보상법에 따른 총 지출액은 90.757.000유로이고 이는 한화로 계산하면 약 1,236억6,821만 원 정도이다.

2.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가. 근거법령

독일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외국인을 지원하는 근거법령은 피해자보상법과 연방부조법이다. 독일영역에는 독일영토뿐만이 아니라 독일국적의 선박이나 항공기도 당연히 포함된다.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독일에서 고의적이고 위법한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하거나 고의적인 독극물의 첨가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방화나 폭발물 등 공공의 안전에 해를 가할 위험한 수단을 가지고 행해진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행위 또는 그러한 폭력에 대한 적법한 방어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은 자이다(피해자보상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나. 독일인과의 동등대우 문제

이러한 피해 보상에 대한 권리는 점점 더 그 범위를 확장해가고 있다. 원래 외국인의 경우, 1976년 피해자보상법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 대상이 되었다. 이 당시에는 유럽연합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상호적인 보상이 보장되는 국가의 시민들에 대해서만 독일의 법률이 적용되었다.¹⁴⁷⁾ 이 후, 1993년 피해자보상 법률의 2차 개정을 통해 모든 유럽연합의 시민들이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유럽연합의 시민이 아니더라도

147) 피해자보호법 제정초기의 외국인의 지원에 대한 논의와 소개는 Alexander Böhm, Entschädigung für Ausländer als Opfer von Gewalttaten, Zeitschrift für Rechtspolitik, 21. Jahrg., H. 11 November 1988, 421쪽.

3년 이상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적용이 되었다. 다만 지원의 범위는 독일시민과 비교해 차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등적용은 2019년 12월 19일자의 법률개정과 이의 소급적용을 통해 2018년 7월 1일부터는 EU시민, 그리고 독일에서 3년 이상 적법하게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모두 독일인과 동등한 피해보상의 지원을 받고 있다(피해자 보상법 제1조 제4항, 제5항).

또한 3년 미만으로 거주한 외국인에게는 소득과 무관한 보상은 지원하며 방문객이나 여행자처럼 6개월 미만의 임시 체류라고 할지라도 범죄피해에 대한 일정한 보상지원이 이루어진다(피해자 보상법 제1조 제6항).

다. 구체적 지원내용

1) 의료비 및 긴급지원

고의적이고 위법하며 폭력적인 범죄를 당한 모든 외국인에 대한 의료비는 모두 연방이나 주정부가 부담한다. 이는 모든 외국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독일을 잠깐 방문한 방문객이나 여행객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긴급 금전제공, 필요시 생필품 지원 등은 독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보조금 제도나 긴급지원(Soforthilfe)이 이루어진다. 방문객이나 여행객의 경우에도 범죄로 인해 중한 침해를 당한 경우, 1회성의 위로보상금 형태의 현금지원이 이루어진다.¹⁴⁸⁾ 그러나 물질적 손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은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단기 방문객이나 여행자의 경우, 본인들의 고향국가와 독일이 상호적인 보상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한, 여러 가지 연금혜택이나 피해로 인한 직업소득의 손실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¹⁴⁹⁾ 외국인에 대한 이러한 중범죄는 특히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범죄자들의 혐오나 증오 범죄인 경우가 많은데, 독일법무부는 이런 경우를 특별히 대비하여 1회성의 위로보상금을 제공한다. 이러한 액수는 유사한 사례에서 정신적 위자료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액이라고 한다.¹⁵⁰⁾ 신청은 서면으로 작성해 독일 법무부에 하면 되고,

148) 독일 경찰 범죄예방 홈페이지(<https://www.polizei-beratung.de/opferinformationen/opferrechte/recht-auf-entschaedigung/> 2021.12.5. 최종접속)의 Entschädigung von Opfern extremistischer Übergriffe의 설명 부분 참조.

149) 물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럽연합의 회원국 국민이나 3년 이상 독일에서 적법하게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독일인에 상응하는 모든 지원이 이루어진다.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은 피해자나 유족 그리고 그러한 범죄공격을 방어함에 있어 같이 피해를 입은 자이다.

2) 통역지원

통역지원의 경우, 형사절차에서의 통역제공은 이루어지지만,¹⁵¹⁾ 사고 직후 피해자만을 담당하는 통역의 제공은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이서링 등의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자발적인 봉사자를 찾는 경우, 통역이 제공 될 수는 있다.

3) 법률지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제공되지 않고 자비부담이 원칙이다.¹⁵²⁾ 독일인의 경우, 대부분 변호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독일형사소송법 397조a는 성범죄나 강도 등의 중한 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보조기소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도 중한 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의 경우, 지원의 대상이 된다. 한편 이외는 별도로 형사절차 및 수사과정에서의 지원, 민사상 손해배상 지원의 변호사 도움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자원 봉사자들 가운데는 변호사들도 상당수 있으므로 이들의 도움을 받을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¹⁵³⁾

4) 귀국이후 지원

독일에서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자국으로 귀국 후, 해당국과 연계하여 지원을 이어가도록 하는 독립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과 해당국가간의 특별한 협약이

150) Bundesamt für Justiz, Merkblatt zur Härteleistung für Opfer extremistischer Übergriffe, 2019, 1쪽.

151) 독일 법원조직법(Gerichtsverfassungsgesetz)제185조, 제187조.

152) 독일 경찰 범죄예방 홈페이지(<https://www.polizei-beratung.de/opferinformationen/opferrechte/recht-auf-unterstuetzung/> 2021.12.5. 최종접속)참조.

153) 예를 들어 민간 피해자 지원 단체인 바이서링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 제공 서비스의 경우 자원자를 모집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대한 정보는 바이서링 홈페이지(<https://weisser-ring.de/opferanwalt> 2021.12.5. 최종접속) 참조.

존재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 피해자가 독일을 떠나는 경우, 보상에 대한 그들의 권리는 경우는 상실된다. 예를 들어 한국인 피해자가 독일을 떠나 한국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권리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은 지원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연합 국가의 시민인 경우, 보상청구권 및 그에 따른 지원은 독일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유지된다.¹⁵⁴⁾

3. 국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가. 근거법령

독일인이 독일이 아닌 외국에서 폭력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이를 지원하는 근거 법령은 피해자보상법과 연방부조법이다. 2009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피해자 보상법의 개정으로 인해 독일국민이 독일이 아니라 외국에서 고의적이고 위법한 물리적 폭력범죄를 당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¹⁵⁵⁾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독일에서는 독일인이 아니더라도 독일에서 적법하게 3년 이상 적법하게 체류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독일 이외의 영역에서 범죄를 입은 경우 독일인과 마찬가지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독일 내에서의 해당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과 관련해 독일인과 3년 이상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독일 내부의 법률 규정과는 별도로 피해자는 범죄피해를 입은 장소가 유럽이라면, 2004년 4월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지침(EU-Richtlinie 2004/80/EG)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지침은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자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피해자(유럽인)들에게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강제하고 있다.

154) 독일어 위키피디아 홈페이지(<https://de.wikipedia.org/wiki/Opferentschädigungsgesetz> 2021.12.5. 최종접속)의 Anwendbarkeit 부분 참조.

155) 이러한 법률개정에서 외국에서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이를 보상해주는 규정인 3조a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 밖의 2009년 7월 1일자 법률개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독일 법률정보 홈페이지(<https://www.buzer.de/gesetz/8816/a161689.htm> 2021.12.5. 최종접속) 참조.

나. 구체적 지원내용¹⁵⁶⁾

1) 의료비

신체의 치료행위, 심리 상담, 재활치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독일)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의 비용과 응급치료 비용, 치료과정에서 사용되는 의약품비용, 건강보조식품, 재활비용 및 재활에 필요한 특수물품구매비용, 간병인 비용, 병가급여 등 치료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보상의 지원정도와 방법은 독일 국내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시민과 동등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만약 개인이 따로 사고보험이나 사적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이로부터 지원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부분은 중복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고려한 국가의 최종적인 의료비지원이 이루어진다.

2) 1회성 위로보상금

외국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독일인은 1회성 위로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의 액수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피해의 정도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연방부조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에 따르면 피해의 등급은 10부터 100까지의 총10 단계로 분류되어 있다. 피해의 정도가 10부터 20인 경우에는 800유로가 제공되고, 30부터 40은 1.600유로, 50부터 60은 5.800유로, 70부터 90은 10.200유로 100은 16.500유로가 지원된다(독일 피해자보상법 제3조a 제2항 제2문). 심각한 화상이나 뇌의 손상, 그리고 팔 다리의 절단 등 매우 침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28.500유로가 지원된다(독일 피해자보상법 제3조a 제2항 제3문).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피해자와 해당범죄로 피해자가 죽은 경우 그 유족들이다.

3) 연금 및 기타 사회보장적 보조금

독일 시민이 독일에서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연금혜택과 사회보장적 보조금은 외국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독일인에게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지원은 범죄가 발생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156)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Hrsg.),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Broschüre), Stand: Februar 2019, 23쪽 이하.

청구에 대해 대상 국가는 그 나라 국내 법률에 따라 구체적 보상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문제는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독일처럼 광범위하고 폭넓은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독일정부는 각 해당국가의 보상절차나 최종결정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4) 법률지원

독일정부차원에서 특별히 제공되는 직접적인 변호사 제공은 없고, 범죄가 발생한 해당국가의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다만 범죄가 발생한 해당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독일 대사관은 법률지원과 관련한 일반적인 상담은 제공하며, 해당국가의 경찰 및 담당관청에게 자국민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¹⁵⁷⁾

다. 실무상 지원기관

1) 담당관청

독일 이외의 영역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범죄가 발생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독일 정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지원과 범죄피해를 당한 국가로부터 지원이 겹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국가의 지원을 받은 만큼, 독일정부로부터 그만큼의 지원은 차감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피해자가 독일에 서 독일정부에게 보상금 신청할 때, 범죄피해가 발생한 국가에게 같이 보상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간과하고 독일정부에게만 보상금을 신청한 경우, 독일정부는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고, 사후적으로 당사자가 해당국가에게 보상요청을 하도록 돕고 있다. 이렇게 대내적으로는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해당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대외적으로는 범죄사건이 발생한 국가기관과 접촉하여, 자국민의 권리청구를 대리하는 행위는 모두 법무부가 아닌 독일 연방사회노동부(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가 하고 있다.¹⁵⁸⁾

157) 독일 연방 외교부 홈페이지(<https://www.auswaertiges-amt.de/de/service/konsularinfo/hilfe-notfalle>) 2021.12.5. 최종접속) 참조.

158) 외국에서 범죄피해를 독일시민에 대한 연방사회 노동부의 업무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독일 연방사회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bmas.de/DE/Soziales/Soziale-Entschaedigung/Opfer>)

이와는 별도로 외국에서 범죄 피해가 발생한 직후, 피해자는 해당 국가의 독일 대사관을 통해 일차적인 지원 및 안내를 받는다. 독일 대사관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한 즉시 독일시민을 돕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지역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우며,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담당국가의 경찰에게 지체 없이 이를 알려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으며, 급한 경우 직접 해당 사건을 피해자를 대신에 담당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한다. 그리고 해당 국가의 피해자 보상규정에 대해 피해자에게 알리고 독일 연방 사회노동부와 협업하여, 피해자가 해당 국가에서 피해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¹⁵⁹⁾

구체적인 실무 현황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살인 등의 범죄가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대사관은 신고를 받으면 사건을 파악하여, 가능한 빨리 독일 경찰에 연락을 하고 독일 경찰은 독일에 있는 피해자의 보호자(가족)에게 연락을 담당한다. 흥미로운 점은 사건의 발생 시 대사관 직원은 독일 경찰에 통보하고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할 의무가 존재하지는 않으므로, 큰 범죄의 경우, 언론을 통해 사건을 먼저 접하는 경우는 독일에서도 종종 발생한다는 점이다. 물론 피해자의 가족이 먼저 대사관으로 연락이 오면 이에 대한 현지의 정보전달은 당연히 이루어진다.¹⁶⁰⁾ 또한 대사관은 장례와 시신 및 유품 운송비용 등과 관련해서도 지역 장례식장이나 관련 회사를 연결해준다는 등의 상담 및 정보 전달을 제공하긴 하지만,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지도 않을 뿐더러, 공적 자금을 통해 이러한 비용을 빌려주지도 않는다.¹⁶¹⁾

2) 민간 피해자지원 단체

민간단체의 경우, 법적 권한이 없는 민간의 봉사단체이고,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특성 해당 국가를 벗어나서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에 직접 개입하기는 물리적으로

entschaedigungsrecht/anspruch-auf-entschaedigung-bei-gewalttaten.html;jsessionid=26F90DAE7F05A4908AB4F2CE00E46E97.delivery2-replication 2021.12.5. 최종접속) 참조.

159) 독일 연방 외교부 홈페이지(<https://www.auswaertiges-amt.de/de/service/konsularinfo/hilfe-notfaelle> 2021.12.5. 최종접속)에서 'Opfer von Gewaltverbrechen,' 'Opferentschädigung bei Gewalttaten im Ausland' 부분 참조.

160) 독일 연방 외교부 홈페이지(<https://www.auswaertiges-amt.de/de/service/konsularinfo/hilfe-notfaelle> 2021.12.5. 최종접속) 'Verständigung der Angehörigen' 부분 참조.

161) 독일 연방 외교부 홈페이지(<https://www.auswaertiges-amt.de/de/service/konsularinfo/hilfe-notfaelle> 2021.12.5. 최종접속) 가운데 'Bestattung und Überführung' 부분 참조.

어렵다. 이는 독일도 마찬가지여서 앞서 살펴본 바이서링이나 독일피해자지원협회도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유럽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단체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네트워킹 단체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즉, 유럽 각국의 민간단체들이 서로 힘을 합쳐 자기 나라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자국민이 아니더라도 도움을 주는 형태를 만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단체가 바로 유럽 피해자지원협회(Victim Support Europe, VSE)이다. 여기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31개국의 60여개의 민간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바이서링과 독일피해자지원협회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유럽 피해자지원협회에 속한 민간단체들은 각각 자국에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을 돕는데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본국의 피해자 지원시스템에 대한 소개, 본국의 피해자 지원 담당관청과의 연결 및 정보 전달,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 상담과 지원, 긴급 용품 등의 실질적 지원, 본국의 법률에 대한 상담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¹⁶²⁾

라. 국내범죄피해지원과의 비교

독일인이 외국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 대한 보상은, 독일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당한 경우와 비교하면 그 범위와 보장의 정도에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인도적 성격을 지니는 의료비용은 동등하게 지원이 되나, 평상시 소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한 비용은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범죄피해로 직장을 나가지 못함으로써 얻는 손실, 매달 납부하던 국민연금, 범죄피해로 입은 직, 간접적 물질적 손해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다만 위로보상금 성격의 지원금이 피해의 정도에 따라 일회성으로 지원될 뿐이다. 이러한 지원은 결과적으로 독일 국내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독일인에 비해서는 적고, 독일에서 여행객이나 단기 체류자가 범죄를 입은 경우에 지원하는 내용과 유사하다.

162) 유럽 피해자지원협회 홈페이지(<https://victim-support.eu/working-for-victims/victim-support-services-professional/> 2021.12.5. 최종접속) 참조.

마. 차등지원의 이유

독일에서 국가가 범죄피해에 대해 지원을 해야 할지,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지의 논의는 오래된 논란거리였다. 이미 1960년대부터 이러한 논의는 시작되었고,¹⁶³⁾ 1970년대 정치권의 활발한 논쟁을 거쳐, 책임 없는 범죄피해에 대한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도덕적 의무와 공동연대책임이라는 근거 하에 피해자 보상법이 1976년 5월 15일 입법이 되었다.¹⁶⁴⁾ 그러나 이 당시 법률은 독일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을 뿐, 외국에서의 발생한 자국민의 범죄피해에 대해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할지, 한다면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의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1976년 피해자보상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2009년 피해자보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보았던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¹⁶⁵⁾ 이렇게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보상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른바 영토주의 원칙(Territorialitätsprinzip), 즉, 독일의 영토 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만 국가가 공권력의 힘이 미치므로, 이러한 영역 내에서 국가의 안전조치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에만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¹⁶⁶⁾ 이러한 영토주의원칙은 실제로 법원에 의해서도 인정을 받았는데, 2002년 12월 10일 독일 연방사회법원은 스페인령의 휴양지 섬인 마요르카에서 휴가 중에 발생한 아동 살인사건에서, 사건의 발생지가 독일이 아닌 스페인이었다는 이유로 남겨진 어머니가 제기한 피해보상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¹⁶⁷⁾ 그러나 이러한 영토주의 원칙에 대해서는, 첫째, 중요한 것은 발생 장소가 아니라 독일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는

163) 이 당시에 존재하는 법률로도 이미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가가 추가적인 보상 조치의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은 Hein Kötz, Verbrechenopfer als Staatsrentner, ZRP 1972, 139, 140쪽.

164) 이러한 입법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Stefanie Kunz, Probleme der Opferentschädigung im deutschen Recht, 1995, 71쪽 이하; Siegfried Kauder, Entschädigung für deutsche Opfer von im Ausland begangenen Gewalttaten, Zeitschrift für Rechtspolitik 36. Jahrg., Heft. 11, November 2003, 402쪽.

165) 법적인 보상은 전혀 받을 수 없었고, 예외적으로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한 펀드(기금 모음)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했다. 이에 대한 소개는 Siegfried Kauder, Entschädigung für deutsche Opfer von im Ausland begangenen Gewalttaten, Zeitschrift für Rechtspolitik 36. Jahrg., Heft. 11, November 2003, 403쪽.

166) Siegfried Kauder, Entschädigung für deutsche Opfer von im Ausland begangenen Gewalttaten, Zeitschrift für Rechtspolitik 36. Jahrg., Heft. 11, November 2003, 402쪽.

167) Entscheidung des 9. Senats des BSG vom 10. 12. 2002, AZ B 9 VG 7/01 R.

점, 둘째, 피해의 장소는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점, 셋째, 독일시민에게 특별히 중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는 시민을 돌볼 의무가 있다는 점, 넷째, 이러한 도움에는 국경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이 제기 되었다.¹⁶⁸⁾ 이러한 비판의 핵심은 결국 범죄피해자를 보상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 자신의 형벌권 독점을 전제로 한 범죄예방의무의 실패에 근거한 자기 책임적 성격에도 있지만(책임원칙), 그 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정신 및 사회복지국가 정신에 입각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사회국가원칙). 결국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2009년 피해자 보상법의 법률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외국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범죄자에게도 보상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것처럼 보상의 규모면에서는 차이가 나는데, 이는 시작점 자체가 국내에서의 범죄피해는 국가의 공동책임원칙에 근거에 보상을 하지만, 외국에서의 범죄피해는 어디까지나 사회국가원칙에 의해 지원을 하기 때문이다.¹⁶⁹⁾ 사회국가원칙에 의할 경우, 어디까지 피해자에 대한 돌봄과 도움의 형식으로 접근을 하므로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외국에서의 범죄피해는 일차적으로 해당 국가의 범죄피해 규정에 따라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국내범죄피해에 비해 외국에서의 범죄피해가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이유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범죄피해자 보상에 관해 2004년 4월 29일 맺어진 유럽의회지침(EU-Richtlinie 2004/80/EG)¹⁷⁰⁾에 따라 유럽내부에서 범죄 발생시, 발생국가가 우선적인 피해자 지원을 하게 규정되어 있다. 각 국가 간에 보상의 규모에서 차이가 있으면 안 되므로,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이라는 기치 하에 동등한 보상규정을 통해 국경 없는 피해자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따라서 피해자가 유럽의회 지침(EU-Richtlinie 2004/80/EG)에 따라 제정된 해당 국가의 피해자 보상 법률에 의

168) Siegfried Kauder, Entschädigung für deutsche Opfer von im Ausland begangenen Gewalttaten, Zeitschrift für Rechtspolitik 36. Jahrg., Heft. 11, November 2003, 403쪽.

169)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Stefanie Bock, Der internationale Anwendungsbereich des Opferentschädigungsgesetzes, Zeitschrift für Rechtspolitik, 42. Jahrg, Heft 5. 16, Juli 2009, 149-150쪽.

170) 유럽 법률정보 홈페이지(<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4:261:0015:0018:DE:PDF> 2021.12.5. 최종접속) 참조.

한 피해에 대한 손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으며, 독일 국내의 피해자보상법은 사회주의 국가원칙에 의거해 어디까지나 이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지원역할을 하고 있다.

제4절 | 소결

지금까지 캐나다, 미국, 독일의 국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캐나다의 경우 2007년부터 범죄피해자기금을 통하여 국외에서 생명·신체에 대하여 중대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이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긴급 제정지원을 제공한다. 재판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여비, 귀국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병원비 등 의료비용, 장례비 등이 지원된다. 이 외에도 ‘영사서비스현장’에 근거하여 캐나다의 재외공관은 범죄피해를 당한 자국민에게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국내 지인에 대한 연락, 사망시 유해의 본국 송환, 변호사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재국의 당국과 협력하여 형사절차의 진행을 돕는다. 이 외에도 캐나다의 범죄피해지원단체인 CRCVC는 범죄피해자 지원단체간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가 귀국한 이후에도 자국의 범죄피해 지원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외교공관이 아니므로 그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도 캐나다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외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은 주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각 주의 사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재외공관도 국내 지인에 대한 연락,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귀국 지원, 법률 및 사법절차와 변호사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미국 법무부는 ‘국제 테러피해자비용보상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연방 정부 차원에서 테러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비용 지원, 재산손실에 대한 보상, 장례비, 교통비 등의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독일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독일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도 독일 이외의 영역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독일인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지원해 준다. 이 외에도 독일인은 유럽연합지침(EU-Richtlinie 2004/80/EG)에 의하여 유럽연합 내부에서 피해가 발생한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독일은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와 동등하게 신체와 심리에 대한 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그러나 독일 내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와는 달리 사회보장적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다만 피해의 등급에 따라 1회성 위로보상금만 지급된다. 국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국내 범죄피해자의 경우와 달리 차등 지원하는 이유는 국가의 범죄예방책무에 대한 이행실패 책임은 인정되지 않고, 다만 사회국가원칙에 의한 지원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제 4 장

국외 범죄피해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외 범죄피해 지원체계 개선방안

전 현 욱

제4장

국외 범죄피해 지원체계 개선방안

제1절 | 영사콜센터를 통한 지원 확대

1. 영사콜센터를 통한 긴급신고 및 통역지원

우리 외교부는 이미 2005년 4월 1일부터 재외국민에게 신속한 도움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영사콜센터¹⁷¹⁾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사콜센터는 2004년 우리 국민이 이라크에서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재외국민에게 연중무휴의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¹⁷²⁾

상술한 바와 같이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도 영사콜센터의 서비스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영사콜센터는 전화를 통한 통역서비스 지원을 그 원칙적인 업무범위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재외국민이 영사콜센터에 범죄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영사콜센터는 이 정보를 관할 대사관에 접수할 뿐 현지 수사기관이나 응급구조기관과 연계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력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영사조력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영사콜센터 차세대 사업’이 추진중이나, 상담 채널 확대, 챗봇 서비스 구축, 감염병 정보나 재난발생현황 등 타부처 기본 데이터 연계 등을 과제로 하고 있어, 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조력의 실효성 강화와 관련된 개선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¹⁷³⁾ 국외에서

171)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의2(재외동포영사실) 제3항 제17호 영사콜센터의 운영,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2(재외동포영사실) 제12항(해외안전지킴센터장) 제7호 영사콜센터의 운영.

172) 영사콜센터의 설립취지, 연혁, 조직 현황 등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김예경, 외교부 영사콜센터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입법·정책보고서 제52호, 2020, 5-8쪽 참조.

173) 외교부, 제1차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2021-2025), 2021, 제57-58쪽.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의 상황을 고려할 때 SNS 서비스나 챗봇 등을 이용한 조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인력증원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망된다.

물론 국가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국가의 수사기관이나 응급구조기관 등과 직접 소통하여,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에게 실효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사콜센터의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재외국민이 현지에서 긴급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범죄피해로 인한 부상의 치료과정 및 피해사건의 형사절차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언어 소통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처럼 지원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러한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영사콜센터의 높지 않은 인지도와 더 낮은 활용도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¹⁷⁴⁾

영사콜센터의 상위부서개념으로 해외안전지킴센터가 2018년 5월 신설되었다. 국외 사건·사고 상황 모니터링 및 초동대응을 그 업무¹⁷⁵⁾로 하며, “영사콜센터에서 직접 답변·조력 불가한 민원¹⁷⁶⁾을 해결한다. 그러나 2018년 11월 영국에서 발생한 유학생 집단폭행 피해 사건¹⁷⁷⁾과 관련하여 현지 공관의 대응조치가 공론화 되는 등, 여전히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역량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2. 영사콜센터의 전문성 강화

하지만 영사콜센터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사콜센터의 인적 자원이 크게 보강되어야 한다. 현재 영사콜센터의 상담인력은 정

174) 그러나 외교부는 낮은 활용도의 원인을 홍보부족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사콜센터차세대 서비스 영상’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외교부, 제1차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2021-2025), 2021, 100쪽.

175) 외교부 보도자료, 2018.5.30., “『해외안전지킴센터』, 24시간·365일 가동, 해외체류 국민 안전 책임지겠습니다. -사건·사고 초기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적시 영사조력 제공-” 참조.

176) 신범식 외,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2021년-2025년) 연구용역 보고서, 외교부 연구용역과제, 2021, 24쪽.

177) 상세한 내용은 BBC 코리아, 2018.11.23., “런던 한인 유학생 집단폭행: 초기 대응 논란의 이유와 피해자의 현재 심경을 들어봤다”(https://www.bbc.com/korean/46311146 2021.12.5. 최종접속) 참조.

부의 비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2019년 외교부 소속 공무원(무기계약직)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직제상 총 61명의 상담관이 근무하고 있다. 정규직으로의 전환 이전에는 약 30% 후반의 매우 높은 이직률을 보였으나, 정규직 전환 이후에는 고용안정성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이직률이 크게 낮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2020년 약 11%가 이직하는 등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2020년 4월 기준으로 통역상담관의 평균 근속연수는 약 2년 3개월에 불과하다. 이는 시차 등의 문제로 야간 및 교대근무가 많아 상당히 힘든 근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상담관의 경우 2019년 기준 월 인건비가 상용임금 기준으로 약 234만원, 통역상담관도 약 263만원에 불과하여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¹⁷⁸⁾ 영사콜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고도의 외국어 통역능력이 기본으로 필요하며, 재외국민의 다양한 사건사고 상황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직무능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과 높은 이직률은 영사콜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영사콜센터에 접수되는 사건사고 건수는 2015년 22,911건에서 2019년 51,585건으로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상담인력은 51명에서 56명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¹⁷⁹⁾ 출국자수의 증가에 따라 앞으로 상담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영사콜센터를 통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건비 등 예산의 대폭 확충 및 상담 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상담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상담인력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이직률을 낮추고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

178) 통역상담원의 경우 각 언어별 적일근무제로 운영되며 대체인력이 없으므로 연가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영사콜센터 상담인력의 운영 현황, 이직률 및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김예경, 외교부 영사콜센터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입법·정책보고서 제52호, 2020, 24, 27-28쪽.

179) 다만 2020년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인하여 재외국민의 관련 상담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상담인력이 74명으로 증원되었다. 상담건수와 인력 증원에 관해서는 김예경, 외교부 영사콜센터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입법·정책보고서 제52호, 2020, 24쪽, 16쪽, 27쪽.

제2절 | 영사 지원 역량 강화

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상의 지원

가. 영사조력의 국제 기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영사조력의 범위는 제3장에서 검토해 본 캐나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이 자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아마도 영사조력이 주재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외교업무에 해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의 영사조력범위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¹⁸⁰⁾ 및 각종 국제인권규범¹⁸¹⁾ 등의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제정 이전에도 외교부훈령으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거의 유사한 내용의 영사조력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제2장에서 검토하였던 것처럼,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조력이 필요한지의 관점에서 보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외 범죄피해자에 대한 영사조력의 내용과 범위는 결코 충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우리 국민에 대하여 적시에 충분한 실효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현지에서 재외공관에 의한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2021년부터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은 제12조에서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단지 신고방법 안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요청, 의료기관 정보제공, 변호사 및 통역인

180) 협약의 연혁 및 개관에 대하여는 이성덕, 영사보호와 관련한 ICJ 관련 판결에 대한 분석 및 검토,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제2호, 2007, 292쪽 이하 참조. 협약의 원문과 번역문은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sessionId=uaMDOt19ptz5dzhBaYlmsFlhELig1e1I7Yksj6PWmEnVea8t0pb8xs9YA6KV5nGE.eduweb_servlet_engine6?1=1&A=A&AST_SEQ=309&CTS_SEQ=46877&ETC=10) 2021.12.5. 최종접속) 참조.

181) 국제인권규범과 피해자의 권리에 대하여는 이주영 외, 국제인권법상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자 중심적 접근, 국제법학회논총 제63권 제1호, 2018, 178쪽 이하 참조.

명단 제공의 조력만을 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의 관점에서 지원의 실효성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나. 영사조력범위의 최저기준으로서 법

국외 범죄피해 국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인력, 주재국과의 관계, 국제규범의 내용 등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재외공관을 통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려를 통하여 현재의 영사조력의 정도와 범위에 대한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국민 보호에 있어서 최저기준이 되어야 한다. 주재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거나, 형사사법과 관련된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예산과 인적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외 국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더 확대될 수 있으며, 특히 조력의 내용이 최소한의 생존배려를 위한 것인 경우에는 사회국가적 청구권의 관점에서 국민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내용이 되므로 당연히 영사조력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행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력의 내용은 재외공관이 우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영사조력의 상한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한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사조력의 기본원칙 중 제1항(국제법규 준수), 제2항(주재국 상황 고려), 제3항(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해석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범죄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통역지원 등 국내의 범죄피해자에게는 애초에 지원될 필요가 없는 조력도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이 법 제10조 제4항(국내의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의 내용은 삭제되거나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다만 재외국민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보호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 범죄피해사실의 인지와 정보 제공

그러므로 이 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범죄피해사의 영사조력의 내용은 영사조력의 최소한이며, 범죄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에게 재외공관이 꼭 제공하여야 하는 조력이다. 우선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국민의 범죄피해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영사콜센터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인지도 및 이용률을 높여야 함은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렇게 재외공관의 장이 범죄피해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지 형사법 및 형사절차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현지의 법개정이나 판례변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최신화¹⁸²⁾해야 하며 현지 공관의 직원이 이 내용을 숙지하고 적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형사사법기관 및 의료기관의 최신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외공관은 평소 이러한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한국인의 범죄피해 또는 응급구조 신고가 현지의 기관에 접수된 경우 재외공관이 이러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외교공관으로 신고되지 않은 한국인의 범죄피해사실에 대한 인지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지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에 대한 위반 소지가 없도록 협력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 공유 절차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라.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요청

아울러 이 법 제12조 제1항은 주재국 관계 기관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요청은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외공관의 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요청이 필요한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법의 해석상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범죄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현지의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의 수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

182) 외교부는 2022년부터 주재국의 관련 법, 규정, 판례 등에 대한 DB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 외교부, 제1차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2021-2025), 2021, 75쪽 이하 참조.

를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하며, 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에게 이러한 요청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8년 영국에서 발생한 한인 유학생 인종차별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현지 공관의 대사가 영국 외교부 고위관계자를 면담해 외교부 및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고, 총영사는 경찰청 담당자를 면담하여 조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요청하였다. 담당 영사는 피해현장 및 인근 10개소의 CCTV 위치 사진자료를 담당경찰관에게 보냈다.¹⁸³⁾ 사건의 경중¹⁸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현지 공관의 조치내용을 매뉴얼화 하여 다른 공관에서도 이러한 수준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추가 지원

가. 후견적 개입을 포함한 신속한 현장지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영사조력의 하한으로 해석한다면, 개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추가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현장 통역 지원, 생필품 조달 지원, 귀국을 위한 항공권 확보 및 귀국 여비 지원¹⁸⁵⁾ 등등 범죄피해를 당한 재외국민 각각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으므로, 입법을 통하여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외공관에서 적시에 필요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피해자 지원의 기본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응급의료 및 초동수사 단계에서 현지의 법제도와 재외공관의 업무역량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에 대한 신속한 현장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더 나아가 국내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에게 지원되는 신변보호 조치 등이 필요

183) 상세한 조치내용은 주영국 대사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189210631102329/posts/2048253468531360/> 2021.12.5. 최종접속) 참조.

184) 사건의 경중은 당연히 재외국민이 받은 피해의 정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공론화 되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185) 캐나다는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이 귀국을 원할 경우 본인 및 동행인 1인의 귀국을 위한 여비를 최대 60일까지 지원한다. 제3장 제1절 참조.

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재외공관에서 이러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컨대 예산 등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모든 재외공관에 보호시설을 상비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필요시 현지의 안전한 호텔 등에 임시숙소를 마련하는 정도의 지원은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현지 사정에 따라 주재국의 경찰에 범죄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에 대한 신변경호나 순찰 강화 등을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치료과정에 후견적으로 개입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필요시 국내로 이송하여 치료하는 방안에도 현지 사정에 밝은 재외공관이 주도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¹⁸⁶⁾ 아울러 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국내의 정신의학 또는 심리상담 전문가와 원격 상담을 주선하는 것도 범죄 피해자를 위한 실효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비용 부담

물론 이러한 지원을 위해서는 재외국민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영사 등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예산의 증액도 이루어져야 한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시행을 대비하여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 관련 사업 예산을 2011년 약 37억원 대비 2020년 약 139억원으로, 약 416%로 증액하였고, 재외공관 영사인력도 2018년 80명에서 2021년 143명으로 증원한 바 있다.¹⁸⁷⁾

그러나 국민의 세금은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¹⁸⁸⁾에 따라 당연히 합리적

186) 2021.6.3. 제1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해외 우리 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외교부가 환자이송절차를 총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외교부는 2022년까지 환자 발생 인지부터 국내 이송까지의 영사조력을 구체화한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외교부, 제1차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2021-2025), 2021, 76쪽 이하 참조.

187) 외교부, 제1차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2021-2025), 2021, 25쪽.

188)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으로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세금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과 조력은 재외국민의 사회권적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비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재외동포에 대하여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려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지원 규모나 우선순위에 대하여도 단기 체류 목적으로 출국한 국민과는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사회국가적 청구권을 기본권으로 가지므로,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특히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한 긴급한 조력에 대하여는 일단 세금을 재원으로 지원하고 필요시 추후 비용을 구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긴급한 의료비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재외국민에게 필요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역시 우선 재외공관이 이를 지원하거나 지불보증을 하고 추후 이러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갖는 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하는 방법 등을 마련할 수 있다. 현지 법제도에 따라 가능한 경우라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에 재외공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를 보조하거나, 배상명령 등을 청구하거나, 필요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불가피할 경우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나 국내에 있는 피해자 가족 등으로부터 보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구조금의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면 추후 지급될 구조금에서 의료비용을 차감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공적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또는 이 법 시행령이나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부터 재원을 충당하거나, 출국자나 여권 발급자에게 소액의 기금을 걷는 등의 방법으로 재외국민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¹⁸⁹⁾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89) 예컨대 영국은 여권 발급 수수료 및 영사서비스 수수료를 통하여 영사조력 제공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신법식 외,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2021년-2025년) 연구용역 보고서, 외교부 연구용역과제, 2021, 182-183쪽 참조.

3. 지원 역량 강화

가. 재외공관 근무자의 범죄피해자 지원 역량 강화

이러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영사 등의 외교부 공무원의 증원¹⁹⁰⁾ 및 피해자 지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3조 제2항은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외공관의 사건·사고 전담 인력은 2017년 65명에서 2021년 143명까지 증가하였다. 외교부는 2025년까지 183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¹⁹¹⁾ 인력증원과 함께 특히 범죄피해자 및 피해자 지원업무의 특성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재외공관의 직원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¹⁹²⁾ 예컨대 캐나다의 경우 국외 범죄피해자 프로그램(Victims of Crime Abroad Program)에서 피해자 기금을 기반으로 영사관과 재외공관 직원들에게 피해자 지원교육을 제공하고 있다.¹⁹³⁾

나. 범죄피해자 지원 역량을 갖춘 영사협력원 위촉

이 외에도 영사협력원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영사협력원이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관련된 사건·사고 발생 시 영사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공관 미상주 국가 또는 원거지 거주 우리 교민 중 적절한 요건을 갖춘 인사”를 위촉하여 “영사를 대신하여 초등 대응 등 일정한 직무를 수행케 하는” 제도로, 2007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¹⁹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민간부문과의 협력) 제3항은

190) 외교부는 인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외교부, 제1차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2021-2025), 2021, 53쪽 이하 참조.

191) 외교부, 제1차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2021-2025), 2021, 54쪽.

192)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교육과정, 재외공관발령자교육과정의 내용을 강화하고, 수시교육체계 및 교육인프라 확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대학교와 협력을 확대하여 ‘영사법무학’ 강의를 진행중에 있다. 상세한 내용은 외교부, 제1차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2021-2025), 2021, 49쪽 이하 참조.

193) 제3장 제1절 참조.

194) 외교부 홈페이지(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291612&srchFr=&srchTo=&srchWord=%EC%98%81%EC%82%AC%ED%98%91%EB%A0%A5%EC%9B%9)

영사조력 협력원 위촉의 근거가 되며, 이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하여는 외교부에 규인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다. 2021년 8월 기준, 아태 지역 34개 공관에서 91명, 미주지역 18개 공관에서 32명, 유럽 및 CIS 지역 27개 공관에서 39명, 아중동지역 18개 공관에서 30명의 영사협력원이 위촉되어 제도가 운영 중에 있다.¹⁹⁵⁾ 예산이나 조직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 공무원을 바로 증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우선 영사협력원의 수를 대폭 증원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이해와 역량이 있는 교민을 영사협력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¹⁹⁶⁾ 더 나아가 현지에 우리 교민 커뮤니티 등이 존재한다면, 영사협력원 등을 통하여 범죄피해자가 교민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각 공관별 자문변호사제도 운영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영사조력 협력원 이외에 해외 법률전문가의 위촉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에 규인 ‘해외 법률전문가 자문경비 지원 운용지침’에 따르면 해외 법률전문가란 주재국의 법률가나 법학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제2조 제1호)을 의미하며, 이처럼 “현 지법에 정통한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우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하여 아직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지원은 한정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에 대한 실효적인 법률 지원을 위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 제도를 아예 자문변호사의 위촉 제도로 확대 개편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전체 재외공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가능하다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현지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하여 재외국민의 범죄피해에 대한 수사 및 형사절차에 대하여 일차적 법률지원 및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0&srchTp=0&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2021.12.5. 최종접속)에서 인용.

195) 외교부, 제1차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2021-2025), 2021, 74쪽.

196) 홍영오 외,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지원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8, 288쪽.

라. 책임 제한 규정 마련

다만 이렇게 법적 지원 근거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자가 각종 법률적 책임이나 민원 대응 등에 대하여 불필요한 우려를 갖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 또는 책임제한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¹⁹⁷⁾ 특히 재외공관이 주재하고 있는 각 국가의 상황과 법률 및 제도가 서로 다르며, 공관의 규모나 업무역량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각 공관이 제공할 수 있는 재외국민의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의 수준과 범위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영사나 영사협력원 등의 피해자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자의 책임제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4. 해외공관파견 경찰주재관 증원

우리 외교부는 “각 전문분야 별로 재외공관 외교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선발·파견한다.¹⁹⁸⁾ 이를 주재관이라고 한다. 주재관의 업무는 각 공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며, 총 21개 분야로 구별된다. 경찰공무원 또한 주재관으로 해외 공관에 파견되며 일반적으로 이른바 경찰영사라고 한다. 경찰 해외 주재관은 현재 51개 공관에 총 62명이 파견되어있다.¹⁹⁹⁾

경찰 해외 주재관은 수사 등의 분야에서 10여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사전문가로서 현지의 수사기관과 적극적인 교류협력체계를 갖추고,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국제형사사법 공조업무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현지에서 범죄를 저지른 국민이나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경찰 해외 주재관이 있는 지역에서 우리 국민의 범죄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 해외 주재관은 현지

19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시행으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져 더 높은 수준의 재외국민 보호 서비스와 제도 개선에 대한 추가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제1차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2021-2025), 2021, 14쪽 참조.

198) 외교부 홈페이지 주재관제도 소개(https://www.mofa.go.kr/www/wpge/m_4341/contents.do 2021.12.5. 최종접속)에서 인용

199)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 해외 주재관 파견 현황(<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he/publiche0207.jsp>) 참조.

경찰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으며, 필요시 한국 경찰과 공동수사를 하거나 한국 경찰을 통하여 국내의 피해자 가족 등과 소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해외 공관 중 경찰 해외 주재관이 파견되어 있는 곳은 약 30%에도 미치지 못하며 국외 범죄피해사례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일본은 모든 현지 공관에 경찰 해외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다고 한다.²⁰⁰⁾ 우리나라도 모든 국가 모든 지역에 경찰 해외 주재관의 역할이 미칠 수 있도록 파견 경찰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야 한다.

제3절 | 국내외 범죄피해 지원체계의 유기적 연계

1. 외교부와 법무부간 협업행정체계 구축

가.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과 자동연계

국외에서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경우, 현지에 장기 거주하는 교민의 경우 외에는, 치료나 요양 등을 이유로 시급히 국내로 귀국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국내에서 연속하여 범죄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했다는 정보가 피해자 귀국시 국내 범죄피해 지원기관에 자동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재외국민의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와 범죄피해자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 간의 협의체²⁰¹⁾를 구성하고, 양 부간 효율적인 행정협업²⁰²⁾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의 출입국정보와 외교부의 재외국민

200) 서울경제 2020.1.10. "[경찰팀 24/7]해외서 한국인에 무슨일 생기면...틀림없이 나타난다 '재외국민 파수꾼'"(<https://www.sedaily.com/NewsView/1YXLCK8S27> 2021.12.5. 최종접속) 참조.

20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5조(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행정기관은 행정협업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행정협업과제의 목적, 협력 범위 및 기능 분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1조(행정협업의 촉진) ①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의

범죄피해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담당부서에 전달되도록 하는 정보처리시스템(행정협업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외교부 ‘해외안전지킴센터’에는 초동 대응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²⁰³⁾ 초동 대응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지원역량 강화를 위하여 법무부와와의 협조체계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귀국 후 문제해결 지원

아울러 재외국민이 범죄피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귀국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외국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귀국 후에도 현지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예컨대 현지의 법제도에 따라 외국인도 범죄피해구조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각종 비용이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는 절차에서 현지에 소재한 재외공관의 조력이 있다면 범죄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재외공관은 현지 피해자 지원 기관과 국내의 피해자를 연결하는 단순한 중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서류 등을 공신력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소통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피해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에 피해자가 참여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예컨대 캐나다의 경우 범죄피해자와 그 보조인 1인이 공판준비 절차 및 공판절차 등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비를 지원한다.²⁰⁴⁾ 형사절차에 대한 범죄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의 경우에는 가용 자원의 우선순위를 당연히 고려해야 할 것이지만,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행정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기관 간 협업(이하 “행정협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고 이에 적합한 업무과제(이하 “행정협업과제”라 한다)를 발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발굴한 행정협업과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3) 외교부, 제1차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2021-2025), 2021, 26쪽 참조.

204) 실제 캐나다는 미국에서 발생한 캐나다 국민의 범죄피해사건 재판절차에 참석하기 위한 여비 등의 명목으로 5만CAD를 지원한 바 있다. 제3장 제1절 사례6: DW 참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면 캐나다처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거나 영국처럼 여권 발급 수수료 등을 통하여 마련된 재외국민보호기금에서 부담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가해자로부터 구상하거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 지원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각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원격재판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지 공관이 해당 국가의 법제도나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필요시 통역 등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2.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국제 네트워크 활용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에게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은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 예산 마련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단체간 국제 교류협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원단체간 초국가적 연대를 위한 국제 교류협력 체계로 VOCI (Victims of Crime International)²⁰⁵⁾, VSE(Victim Support Europe)²⁰⁶⁾, VSA(Victim Support Asia)²⁰⁷⁾ 등의 연합 기구가 있다.²⁰⁸⁾

정부기관간 연계를 하려면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워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 경제적, 금전적 보상은 더 어렵게 되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범죄피해자 지원단체간 국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현지에서 범죄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귀국 후에도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이나 심리치료 등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귀국 후에도 각종 신청이나 증빙서류 제출 중계 등의 공식, 비공식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연구자의 경우에도 한국과 캐나다의 범죄피해

205) VOCI는 세계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의 연합체로 2014년 설립되었다. VOCI 홈페이지 (<http://www.voci2012.org/web/home.php?go=main> 2021.12.5. 최종접속) 참조.

206) VSE는 유럽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의 연합체로 1989년 설립되었다. VSE 홈페이지 (<https://victim-support.eu/> 2021.12.5. 최종접속) 참조.

207) VSA는 아시아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의 연합체로 2017년 설립되었다. VSA 홈페이지 (<http://victimsupportasia.org/main/main.php> 2021.12.5. 최종접속) 참조.

208) VSE, VOCI, VSA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은 황태정 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지역적·국제적 협력, 피해자학연구 제26권 제2호, 2018, 40쪽 이하 참조.

자 지원단체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캐나다의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절차를 진행하여 3개월분의 임대료 상당액의 구조금을 캐나다 당국으로부터 수령한 바 있다.

제4절 |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확대

국외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테러범죄 이외의 범죄의 경우에 대하여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제2장 제2절에서 이미 상세하게 검토한 바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그 내용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 요약하였다.

우리 헌법 제2조 제2항은 재외국민의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선언하고 있으며, 헌법 제30조는 범죄피해구조청구권의 범죄를 국내범죄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범죄예방책무 미이행 책임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국외 범죄피해 국민에게도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렇게 재외국민에게도 범죄피해구조금이 지급된다면, 역시 상술한 바와 같이 통역, 의료, 법률 조력과 관련된 비용을 재외국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재외공관이 우선 부담하고 구조금으로 이를 충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경찰 해외 주재관을 확대하는 등 재외공관의 범죄피해자 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범죄피해사실이 적시에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사건에 관하여 외교부와 법무부가 긴밀히 협조하는 행정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적 절차와 법률적 근거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구조금의 지급범위 확대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 이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재외국민의 범죄피해로 인한 사망에 대한 유족구조금의 경우 대략 11억 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²⁰⁹⁾ 현재 한해 약 100억 원 정도의 범죄피해구조금이 국내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는 점,²¹⁰⁾ 그리고 2020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예산액이 약 1033억

209) 박미숙 외,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에 관한 검토, 법무부 수탁과제, 2017, 190쪽 참조.

210) e-나라지표 홈페이지 연도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현황(<https://www.index.go.kr/potal/stts/>)

에 달하는 점²¹¹⁾ 등을 감안하면 만약 국외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의 재원을 범죄피해보호기금으로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범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국외 범죄피해의 경우는 국가의 범죄예방책무 미이행의 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국내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과 지급액을 차등하고 있는 독일²¹²⁾의 경우처럼, 구조금의 지급 규모를 국내와 같게 할 것인지 아니면 차등지급할 것인지, 차등한다면 어느 정도로 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역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더 나아가 출국자나 여권 발급자에게 소액의 기금을 걷는 등의 방법으로 재외국민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809&boar 2021.12.5. 최종접속) 참조.

211) 매일경제, 2021.5.20., “범죄피해자 지원금 주객전도…생계 치료비가 고작 30%”(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5/487873/ 2021.12.5. 최종접속) 참조.

212) 제3장 제3절 참조.

제 5 장

국외 범죄피해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요약 및 정책제언

전 현 욱

해외출국자수 증가,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범죄 확산 등으로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하는 국민의 수가 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전히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의 수준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정하고 있는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 내용은 대부분 “안내”나 “요청”, “정보”나 “명단 제공” 등에 그치고 있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범죄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당연히 그 피해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범죄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가 지원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재외국민은 현지에서 외국인으로 긴급 신고가 어려울 수도 있고, 응급의료 및 초동수사 단계에서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피해로 인한 두려움 등으로 생필품 구입에 장애가 있는 등 기초적인 생존배려가 필요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아울러 현지에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가 있어도 이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으며, 피해자로서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치료 등을 목적으로 귀국한 이후에는 현지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의료나 법률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는 물론 귀국 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실효적인 조력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언한다.

1. 영사콜센터 등을 통한 긴급신고 및 통역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민이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영사콜센터에 신고하면 영사콜센터에서 현지 응급구조기관 및 수사기관과 직접 소통하여 실효적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응급의료 및 초동수사 과정에서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2조의 내용은 범죄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이 받을 수 있는 영사조력의 상한이 아니라 하한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법률에 해당 지원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있지 않다는 점이 그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결정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범죄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리고 현지의 법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외공관은 범죄피해로 인하여 중대한 상해를 입은 재외국민에 대하여 후견적 개입을 포함하여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우선 재외공관은 현지의 수사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재외국민 범죄피해사실의 신속한 인지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며, 재외국민의 범죄피해사건 발생시 피해의 경중에 따라 이에 관한 형사사법절차를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현장 통역 지원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생필품 조달 지원, 귀국을 위한 항공권 확보 및 귀국 여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지원을 위한 비용은 우선 재외공관이 부담하고 차후 가해자로부터 구상하거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보전받아야 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충당하거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4. 재외공관 근무자의 범죄피해자 지원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인력이 확충되어야 하며, 범죄피해자의 특성 및 구체적인 지원 방법에 대한 상세한 직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범죄피해자 지원 역량을 갖춘 영사협력원의 위촉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민형사상 사법절차와 관련하여 또는 현지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이용과 관련하여 실효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 공관별로 현지 자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적 책임이나

민원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원업무 담당자의 면책 또는 책임제한 규정을 입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5. 경찰 해외 주재관이 확대되어야 한다. 경찰 해외 주재관은 현지 경찰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다. 모든 국가 모든 지역에 경찰 해외 주재관의 역할이 미칠 수 있도록 파견 경찰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야 한다.

6. 귀국 후에도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외교부와 법무부간 협업행정 체계를 구축하여 귀국시 국내 범죄피해 지원 업무와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귀국 후에도 현지의 형사절차 및 범죄피해지원 절차 등과 관련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필요시 형사절차 참여를 위한 여비 지원 가능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범죄피해자 지원단체간의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7.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이 국외 범죄피해자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적 청구권적 측면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차등 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재원은 범죄피해보호기금으로 하거나 필요시 재외 국민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 국내문헌

- 김예경, 외교부 영사콜센터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입법·정책보고서 제52호, 2020.
- 김지선 외,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2017~2021년)의 방향과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
- 김현철, 국가를 상대로 한 형사보상, 국가배상,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비교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9호, 2018.
- 김현철,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김혜경, 범죄피해자 구조금지급의 법적 개선방안 - 헌법상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본질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2015.
- 박광민,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제도의 평가와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1호, 2016.
- 박동수, 국내 체류 외국인의 특성과 범죄피해의 관계 분석,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7.
- 박미숙 외,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에 관한 검토, 법무부 수탁과제, 2017.
- 박상민, 범죄피해자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독일 실태 분석과 시사점, 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2020.
- 박상민,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관한 검토 -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를 참고하여 -, 일감법학 제48호, 2021.
- 박용신, 테러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책적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2020.
- 방승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기본권주체, 유럽헌법연구 제19호, 2015.
- 배정환, 코로나 시대, 미국에서의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범죄: 인종주의 담론과 사회 통제에 관한 논의, 경찰학연구 제21권 제3호, 2021.
- 백수웅, 테러피해자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테러방지법을 중심으로 -, 원광법학

제36권 제3호, 2020.

법무연수원, 2020 범죄백서, 2021.

석광현, 한국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가입 20주년을 기념하며: 회고, 현상과 전망,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Vol.19, 2017.

송귀채, 범죄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제한 원인과 판단근거에 관한 연구 - 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1호, 2021.

신범식 외,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2021년-2025년) 연구용역 보고서, 외교부 연구용역
과제, 2021.

안성훈, 국외범죄피해자의 국가구조에 관한 이론적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1호,
2021.

외교부, 제1차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2021-2025), 2021.

윤지원, 해외 범죄피해에 대한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의 실무적 문제점, 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1호, 2020.

윤지원, 해외 범죄피해에 대한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의 실무적 문제점, 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1호, 2020.

이성덕, 영사보호와 관련한 ICJ 관련 판결에 대한 분석 및 검토,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제2호, 2007.

이유진, 한국 법정통격인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연구, 통역과 번역 18(특별호), 2016.

이주영 외, 국제인권법상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자 중심적 접근, 국제법학회논총 제63권
제1호, 2018.

임예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 검토: 범죄피
해자보호법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1호, 2021.

정혜영, 기본권 경합에 관한 새로운 판례동향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16권, 2010.

제357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19.3.25.

조홍중,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1호, 2016.

최영승,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피해자보호·지원에 대한 평가 및 발전 방향, 피해자학연
구 제24권 제2호, 2016.

최영신 외,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

총서, 2017.

홍영오 외,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지원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8.

황태정 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지역적·국제적 협력, 피해자학연구 제26권 제2호, 2018.

2. 독일문헌

Alexander Böhm, Entschädigung für Ausländer als Opfer von Gewalttaten
Zeitschrift für Rechtspolitik, 21. Jahrg., H. 11 November 1988.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Hrsg.),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Broschüre), Stand: Februar 2019.

Bundesamt für justiz(Hrsg.), Merkblatt zur Härteleistung für Opfer extremistischer
Übergriffe. 2019.

FRANET, Victim Support Services in the EU: An overview and ssessment of
victims's rights in practice. Germany, 2014.

Hein Kötz, Verbrechensopfer als Staatsrentner, ZRP, 1972.

Siegfried Kauder: Entschädigung für deutsche Opfer von im Ausland begangenen
Gewalttaten, Zeitschrift für Rechtspolitik, 36. Jahrg., Heft 11, November
2003.

Stefanie Bock: Der internationale Anwendungsbereich des Opferentschädigungs-
gesetzes, Zeitschrift für Rechtspolitik, 42. Jahrg., Heft. 5, 16. Juli 2009.

Stefanie Kunz, Probleme der Opferentschädigung im deutschen Recht, Nomos
1 Edition 1995.

3. 언론보도 및 보도자료

BBC 2016.12.24., "Berlin lorry attack: What we know"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38377428> 2021.12.5. 최종접속)

BBC 코리아, 2018.11.23., "런던 한인 유학생 집단폭행: 초기 대응 논란의 이유와 피해
자의 현재 심경을 들어봤다"(<https://www.bbc.com/korean/46311146> 2021.
12.5. 최종접속)

- 뉴스1, 2021.10.5., “[국감브리핑] 코로나19 이후 한국인 대상 증오범죄 49건 발생”
(<https://www.news1.kr/articles/?4451989> 2021.12.5. 최종접속)
- 매일경제, 2021.5.20., “범죄피해자 지원금 주객전도…생계 치료비가 고작 3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5/487873/> 2021.12.5. 최종접속)
- 법무부 보도자료, 2021.6.24., “범죄피해자의 인권, 법무부가 보호하겠습니다 - 범죄피해구조금, 과실범죄 피해까지 지급 확대 추진 -”
- 서울경제 2020.1.10., “[경찰팀 24/7]해외서 한국인에 무슨일 생기면...틀림없이 나타난다 '재외국민 파수꾼'”(https://www.sedaily.com/NewsView/1YXLCK8S27 2021.12.5. 최종접속)
- 연합뉴스, 2021.2.26., “LA한인타운서 "중국 바이러스"라며 한인 무차별 폭행·살해 위협(종합)”(<https://www.yna.co.kr/view/AKR20210226005600075> 2021.12.5. 최종접속)
- 외교부 보도자료, 2018.5.30., “「해외안전지킴센터」, 24시간·365일 가동, 해외체류 국민 안전 책임지겠습니다. -사건·사고 초기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적시 영사조력 제공-”
- 중앙일보, 2020.3.17.,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한국 교민 피습…'코로나 혐오범죄' 촉각”(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32363#home 2021.11.26. 최종접속)
- 중앙일보, 2021.3.7., “美 주요 도시서 아시아계 증오범죄 전년 보다 2.5배 급증”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06316#home> 2021.12.5. 최종접속)

4. 인터넷

- e-나라지표 홈페이지 연도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현황(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809&boar 2021.12.5. 최종접속)
- The Canadian Resource Center For Victims of Crime, Restitution, 2009.7.(https://crcvc.ca/docs/Restitution.pdf 2021.12.5. 최종접속)
- UN 홈페이지(<https://www.un.org/en/genocideprevention/documents/atrocitiy->

- crimes/Doc.26_Declaration%20on%20the%20Human%20Rights%20of%20
Individuals%20who%20are%20not%20nationals.pdf 2021.12.5. 최종접속)
- VOCI 홈페이지(<http://www.voci2012.org/web/home.php?go=main> 2021.12.5. 최
종접속)
- VSA 홈페이지(<http://victimsupportasia.org/main/main.php> 2021.12.5. 최종접속)
- VSE 홈페이지(<https://victim-support.eu/> 2021.12.5. 최종접속)
-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 해외 주재관 파견 현황([https://www.police.go.kr/www/open/
public/public0207.jsp](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207.jsp))
- 독일 JUUUPORT 홈페이지([https://www.juuuport.de/ueber-juuuport/wir-ueber-
uns/koooperationspartner/](https://www.juuuport.de/ueber-juuuport/wir-ueber-uns/koooperationspartner/) 2021.12.5. 최종접속)
- 독일 경찰 범죄예방 홈페이지([https://www.polizei-beratung.de/opferinformationen
/opferrechte/recht-auf-entschaedigung/](https://www.polizei-beratung.de/opferinformationen/opferrechte/recht-auf-entschaedigung/) 2021.12.5. 최종접속)
- 독일 경찰 범죄예방 홈페이지([https://www.polizei-beratung.de/opferinformationen
/opferrechte/recht-auf-unterstuetzung/](https://www.polizei-beratung.de/opferinformationen/opferrechte/recht-auf-unterstuetzung/) 2021.12.5. 최종접속)
- 독일 바이서 링 홈페이지 ([https://weisser-ring.de/system/files/domains/weisser_
ring_dev/downloads/weisserringjahresbericht20182019.pdf](https://weisser-ring.de/system/files/domains/weisser_ring_dev/downloads/weisserringjahresbericht20182019.pdf) 2021.12.5.
최종접속)
- 독일 바이서 링 홈페이지([https://weisser-ring.de/media-news/publikationen/statis
tiken-zur-staatlichen-opferentschaedigung](https://weisser-ring.de/media-news/publikationen/statistiken-zur-staatlichen-opferentschaedigung) 2021.12.5. 최종접속)
- 독일 바이서 링 홈페이지(<https://weisser-ring.de/opferanwalt> 2021.12.5. 최종접속)
- 독일 법률정보 홈페이지(<https://www.buzer.de/gesetz/8816/a161689.htm> 2021.12.
5. 최종접속)
- 독일 여성의 집 홈페이지(<https://www.frauenhauskoordinierung.de/aktuelles/> 2021.
12.5. 최종접속)
- 독일 연방 외교부 홈페이지([https://www.auswaertiges-amt.de/de/service/konsularinfo
/hilfe-notfaelle](https://www.auswaertiges-amt.de/de/service/konsularinfo/hilfe-notfaelle) 2021.12.5. 최종접속)
- 독일 연방사회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bmas.de/DE/Service/Presse/Meldungen
/2020/neue-gesetze-soziales-entschaedigungsrecht.html;jsessionid=DBC
DA9307242AECF8CF9120D29625E9C.delivery1-replication](https://www.bmas.de/DE/Service/Presse/Meldungen/2020/neue-gesetze-soziales-entschaedigungsrecht.html;jsessionid=DBCDA9307242AECF8CF9120D29625E9C.delivery1-replication) 2021.12.5. 최
종접속)

독일 연방사회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bmas.de/DE/Soziales/Soziale-Entschadigung/Opferentschaedigungsrecht/anspruch-auf-entschaedigung-bei-gewalttaten.html;jsessionid=26F90DAE7F05A4908AB4F2CE00E46E97.delivery2-replication> 2021.12.5. 최종접속)

독일 연방사회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bmas.de/DE/Soziales/Soziale-Entschadigung/Opferentschaedigungsrecht/opferentschaedigungsrecht-art.html> 2021.12.5. 최종접속)

독일 연방재무부 홈페이지(<https://www.bundeshaushalt.de/#/2019/soll/ausgaben/einzelplan/110363221.html> 2021.12.5. 최종접속)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soziales-entschaedigungsrecht-1640562> 2021.12.5. 최종접속)

독일 위키피디아 홈페이지 (https://de.wikipedia.org/wiki/WeiBer_Ring 2021.12.5. 최종접속)

독일 위키피디아 홈페이지(<https://de.wikipedia.org/wiki/Opferentschadigungsgesetz> 2021.12.5. 최종접속)

독일 콘스탄츠 시립 인형극장 홈페이지(<http://www.konstanzer-puppenbuehne.de/pfoten-weg/> 2021.12.5. 최종접속)

독일 피해자지원협회 홈페이지(<https://www.opferhilfen.de/aufgaben/> 2021.12.5. 최종접속)

미국 FBI 홈페이지(<https://www.fbi.gov/file-repository/fbi-victim-assistance-program.pdf/view> 2021.12.5. 최종접속)

미국 국무부 영사국 홈페이지(<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international-travel/emergencies/emergency-financial-assistance.html#:~:text=The%20U.S.%20Department%20of%20State's,who%20are%20temporarily%20destitute%20abroad.> 2021.12.5. 최종접속)

미국 범죄피해자국 홈페이지 OVC Fact Sheet(https://www.ncjrs.gov/ovc_archives/factsheets/cvfvca.htm 2021.12.5. 최종접속)

미국 범죄피해자국 홈페이지(<https://ovc.ojp.gov/funding/awards/2020-v4-gx-k001> 2021.12.5. 최종접속)

미국 범죄피해자국 홈페이지(<https://ovc.ojp.gov/program/antiterrorism-and->

- emergency-assistance-program-aeap/overview 2021.12.5. 최종접속)
- 미국 범죄피해자보상위원회 홈페이지(<https://nacvcb.org/> 2021.12.5. 최종접속)
- 미국 법률정보사이트(<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3771> 2021.12.5. 최종접속)
5. 최종접속)
- 미국 법률정보사이트(<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34/20141> 2021.12.5. 최종접속)
5. 최종접속)
- 미국 법무부 Office of Justice Programs 홈페이지(<https://ovc.ojp.gov/sites/g/files/xyckuh226/files/pubs/crimevictimsfundfs/index.html> 2021.12.5. 최종접속)
-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justice.gov/nsd-ovt/page/file/1091736/download> 2021.12.5. 최종접속)
- 미국 법무부, “Privacy Impact Assessment for the International Terrorism Victim Expenses Reimbursement Program -Web Application), 2019.4.18.(https://www.justice.gov/OJP_ITVERP_PIA/download 2021.12.5. 최종접속)
-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안내 홈페이지(<http://www.moj.go.kr/cvs/index.do> 2021.12.5. 최종접속)
-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jsessionid=uaMDOt19ptz5dzhBaYlmsFlhELig1e117Yksj6PWmEnVea8t0pb8xs9YA6KV5nGE.eduweb_servlet_engine6?1=1&A=A&AST_SEQ=309&CTS_SEQ=46877&ETC=10 2021.12.5. 최종접속)
- 영사콜센터 홈페이지(https://www.0404.go.kr/callcenter/callcenter_intro.jsp 2021.12.5. 최종접속)
- 외교부 홈페이지 주재관제도 소개(https://www.mofa.go.kr/www/wpge/m_4341/contents.do 2021.12.5. 최종접속)
- 외교부 홈페이지(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291612&srchFr=&srchTo=&srchWord=%EC%98%81%EC%82%AC%ED%98%91%EB%A0%A5%EC%9B%90&srchTp=0&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2021.12.5. 최종접속)
- 유럽 법률정보 홈페이지(<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4:261:0015:0018:DE:PDF> 2021.12.5. 최종접속)

- 유럽 피해자지원협회 홈페이지(<https://victim-support.eu/working-for-victims/victim-support-services-professional/> 2021.12.5. 최종접속)
- 주영국 대사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189210631102329/posts/2048253468531360/> 2021.12.5. 최종접속)
- 캐나다 CRCVC 홈페이지(<https://crcvc.ca/> 2021.12.5. 최종접속)
- 캐나다 검찰청 홈페이지(<https://www.ppsc-sppc.gc.ca/eng/wop-oce/02.html> 2021.12.5. 최종접속)
- 캐나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연방 옴부즈맨사무소 홈페이지(<https://www.victimfirst.gc.ca/serv/fa-af.html> 2021.12.5. 최종접속)
- 캐나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연방옴부즈맨사무소 홈페이지(<https://www.victimfirst.gc.ca/serv/wvr-qdv.html> 2021.12.5. 최종접속)
- 캐나다 법무부 홈페이지(<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23.7/page-1.html> 2021.12.5. 최종접속)
- 캐나다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justice.gc.ca/eng/fund-fina/cj-jp/fund-fond/cac-cae.html> 2021.12.5. 최종접속)
- 캐나다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justice.gc.ca/eng/fund-fina/index.html> 2021.12.5. 최종접속)
- 캐나다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justice.gc.ca/eng/rp-pr/cp-pm/eval/rep-rap/2016/jfvs-sfav/p3.html> 2021.12.5. 최종접속)
- 캐나다 법무부 홈페이지“Program Guidelines on Financial Assistance to Canadians Victimized Abroad”(https://www.justice.gc.ca/eng/fund-fina/cj-jp/fund-fond/guide_abr-ligne_etr.html 2021.12.5. 최종접속)
-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https://travel.gc.ca/assistance/emergency-assistance> 2021.12.5. 최종접속)
-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https://travel.gc.ca/docs/publications/canadian-consular-services-charter.pdf> 2021.12.5. 최종접속)
-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https://www.international.gc.ca/global-affairs-affaires-mondiales/home-accueil.aspx?lang=eng> 2021.12.5. 최종접속)
- 캐나다 피해자의 주간 홈페이지([https://www.victimsworld.gc.ca/home-accueil.html#:~:text=Victims%20and%20Survivors%20of%20Crime%20Week%202021%](https://www.victimsworld.gc.ca/home-accueil.html#:~:text=Victims%20and%20Survivors%20of%20Crime%20Week%202021%20)

20is,November%2014%20to%2020%2C%202021. 2021.12.5. 최종접속)

5. 판례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마614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마354 전원재판부

Abstract



Improving Crime Victim Assistance Programs to Support Citizens Victimized Abroad – Focusing on Victims of Violent Crimes Causing Serious Physical Injuries

Hyun Wook CHUN · Aline Vlasceanu · Jin Hwan CHANG

With the growing number of citizens who travel or reside in foreign countries, risks of becoming a victim of crime while abroad increase. So, the number of citizens who become victims of crime while abroad is expected to go upward. However, the truth is that crime victim assistance for Korean nationals who become victims of crime while abroad hardly meet their needs.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necessary assistance to Korean citizens victimized overseas, 'Act On Consular Assistance Of Protecting Overseas Korean Nationals' was enacted. The act does not set forth any practical support or assistance but only it provides "procedures to apply for assistance", "provision of guidance, information, or a list of attorneys-at-law and interpreters to the extent possible." It is required to improve efficiency of providing victim assistances to victims of crimes overseas.

The study overviews victim assistance programs of other countries for example in Canada, German, and the United States.

In Canada, Canadians who have been victims of a serious violent crime in foreign countries are eligible for financial assistance through the Victims Fund at the federal level. Since 2007, financial supports have been provided to victims at the government level to cover expenses where the victim has no other source

of financial assistance. Expenses covered by financial support are travel expenses, medical and hospital expenses, expenses for funeral and burial if the crime resulted in the death of the victim, and other types of out-of-pocket expenses. Besides victim assistance programs administered by the federal government or provinces, Canada's emergency response for crime victims is presently laid out in the Canadian Consular Services Charter (CCSC). It empowers Canadian officials to help overseas victims in a number of ways and provides the information which would be given to Canadian victims including a list of local doctors and hospitals, advic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local police and medical services, a list of local lawyers, and governing local laws and regulations. Under the charter, consular staff shall also contact relatives or friends of victims, provide assistance to repatriate remains, and so on. The staff may engage with local authorities regarding a criminal investigation and the laying of charges. The Canadian Resource Centre for Victims of Crime (CRCVC) provides Canadian nationals victimized abroad with a vast array of crime victims assistances through international networks with other countries. Even after victims returned to Canada, CRCVC assists them to apply for crime victim assistance programs. However, assistances offered by CRCVC to crime victims overseas is limited as it is not a consular office in the country where the crime occurred.

Victim assistance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are not much different from those in Canada. Compensations and assistances for citizens victimized overseas is offered by states governments. It means that depending on victim assistance programs run by each state, victims of crime abroad may not be able to receive financial assistances. Diplomatic missions or consulates offer victim assistance services such as contacting family, friends or employers in the U.S, providing information about medical services as well as laws, regulations, and judicial procedures of the country where the crime occurred, arranging return to home,

and offering the list of lawyers.

In addition,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provides financial reimbursement for qualifying expenses to qualified U.S. citizens and U.S. government employees who suffered direct physical or emotional injuries from an act of international terrorism while outside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International Terrorism Victim Expense Reimbursement Program (ITVERP). ITVERP covers expenses for medical treatment, mental health, and funeral and burial, compensation for property loss, and travel expenses to victims of terrorism at the federal level.

In the case of Germany, it provides crime victim assistance services to not only German citizens but to foreign nationals who have legally stayed in the country for more than three years, if they become victims of crimes outside Germany. Furthermore, Germans have the right to make a victim compensation claim against a member country of the European Union where the crime occurred according to the European Union Directive (EU-Richtlinie 2004/80/EG). The German government provides those victimized abroad with the same amount of compensation for physical, emotional, and mental treatment which victims of crime in Germany. The only difference is that victims of crime overseas are not able to receive subsidies from the social insurance program unlike victims of crime in Germany. Compensation is paid for victims of crime abroad only once depending on seriousness of damage caused by the crime. The reason that the German government differentiates assistance services for crime victims at home and abroad is that the state has no responsibility to compensate for failure of crime prevention under principles of sozialstaat ("social state") for crime occurring in foreign countries.

The top priority of crime victim assistance services is to identify what they need and provide required assistances and help them recover damages. Therefore,

certain circumstances and needs of those who become victims of crime outside the country must be considered before formulating victim assistance programs. It can be more difficult for those victims to report the crime to police because they may be in unfamiliar surroundings, and may not know the local language or customs. They may not be able to communicate with local support services, including first responders and law enforcement, or get emergency treatment without translators. Even in some cases, crime victims find themselves in a situation where they are not able to go out to get grocery or daily necessities due to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require assistance for their survival.

In addition, even if crime victim assistance services for foreigners are provided in the country where the crime occurred, they might face difficulties in applying for those services, obtaining legal information, or participating in criminal proceedings as a victim in a foreign country.

It is needless to say that upon returning to their home country for medical treatment or other reasons, participating in local criminal proceedings is much challenging for those victims. An array of effective and practical assistance services should be continuously provided to them even after they come back to the home country with a view to help them recover damages. Those services should include but not limited to securing safety and security of victims, providing medical treatment, offering legal assistances and so on.

Lastly, taking into account the current status of victim assistance programs in Korea, the study present suggestions to improve them for citizens victimized abroad.

First, emergency services provided by the Consular Call Center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hould be extended to contact local police and arrange interpretation service for crime victims. Specifically, if citizens victimized abroad call the consular call center to report criminal damage and get assistance, the

call center gets in touch with the local police and emergency assistance services on behalf of the victim so that he or she could get timely necessary help. It may arrange interpretation service and help victims communicate with investigative authorities and medical institutions.

Second, Article 12 of Act On Consular Assistance Of Protecting Overseas Korean Nationals (Consular Assistance for Korean National Victimized Abroad) shall be interpreted as the lower limit not the upper limit of consular assistances that can be received by Korean nationals who become victims of crime while abroad. The fact that the act does not provide for consular assistances for victim of crime overseas should not be used as an excuse for not providing victim assistance services to them.

Third, under the unique circumstances of the crime victim and within the permitted range by the local legal system, diplomatic missions abroad timely provide necessary suppor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guardianship intervention, to Korean nationals staying abroad who have suffered serious injuries as a result of crime. First of all, diplomatic missions abroad should closely cooperate with local investigative agencies and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and immediately notice them of criminal damage of Korean nationals. In addition, diplomatic missions may follow up the status of investigation of the crime depending on seriousness of crime, and request prompt and effective investigation to the local investigative authorities. For those cross-border victims, it is needed to provide practical assistance in a variety of areas, from providing the on-site interpretation service, offering basic necessities, arranging air tickets to return home, to securing financial assistance in a timely manner. Expenses for victim assistance shall be borne by the diplomatic mission abroad, and then reimbursed later according to the benefit principle. It is also possible to finance expenses by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fund or to raise a separate fund for the protection of overseas citizens.

Fourth, the capability and expertise of staff of diplomatic missions to support crime victims should be enhanced. At the same time, the number of staff in charge of supporting crime victims overseas should be increased. Training and education on crime victim support shall center on characteristics of crime victims and specific assistant methods. It is also required to have staff of consulates with the capability and expertise in supporting crime victims. Furthermore, in order to help victims get effective legal assistance regarding civil and criminal proceedings as well as to apply for local crime victim assistance, diplomatic missions have the list of local lawyers who could provide accurate legal information and advice on legal issues. In addition, it may be considered to legislate a provision for immunity 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the person in charge of victim assistance services to the extent that staff responsible for the victim support service could fulfill their duties without any concerns about being taken any legal responsibility.

Fifth, the number of police officers allotted to overseas diplomatic missions should be expanded. Police officers overseas could serve as a powerful communication channel that leads to active and close cooperation with local police. Taking into account the importance of police officers in diplomatic missions and the fact that they, it is needed to dispatch police officers to all countries and regions.

Sixth, victim assistance services should be continuously provided even after victims return to Korea. To this e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establish a joint administration system so that victims of crime abroad could automatically get continuous victim assistance services

upon returning. Diplomatic missions may inform victims of local criminal procedures and criminal victim support programs even after they return home. Furthermore, subsidizing travel expenses for participation in local criminal proceedings may be considered to guarantee their right to be reasonably heard at any public proceeding in the district court involving release, plea, sentencing, or any parole hearing. Expanding international networks among crime victim support organizations would be a good way to enhanc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victim assistance programs for Korean nationals victimized abroad.

Lastly, victim compensation assistance by crime victims fund program should extend to victims of crime overseas. In other words, the crime victims' right to claim for aid must be guaranteed. The amount of compensation to crime in foreign countries may be prescribed by policies. It is also possible to use the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as the financial resource, or to establish a separate fund to support overseas Koreans if necessary.

연구총서 21-BB-01

국외 범죄피해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발행 | 2021년 12월

발행처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행인 | 하태훈

등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화 | (02)575-5282/5283

홈페이지 | www.kicj.re.kr

정가 | 7,000원

인쇄 | (사)한국장애인문화콘텐츠협회 02-2279-6760

I S B N | 979-11-91565-25-6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